연구보고서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 언

최근 중국이 수출 및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내수 및 소비 위주의 경제발전으로 전환함에 따라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5~14년 중 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중국 경제성장 속도보다 높은 연평균 16.5% 성장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어 2014년 48.1%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중속성장 시대를 맞아 중국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서비스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국내 민간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대외개방도 확대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는 중국의 대외개방전략의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은 2013년 9월 상하이에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하여 서비스업의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시범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2014년 톈진, 광둥, 푸젠에도 조성되었고 향후 중서부 내륙지역에도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베이징 등 여타 지역에서도 시험구 정책을 모방한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조치가 추진되는 등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최고 수준의 대외개방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출범 당시 국내 각계의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에 대한 실태분석이나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입안이나 기업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사례로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중국 서비스 분야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행

된 개방조치의 주요 내용, 한 · 중 FTA와의 연계성,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의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6개 업종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각 분야의 발전 및 개방 현황,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개방조치 및 실효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문헌연구나 통계분석과 함께 중국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기업이 궁금해 하는 상하이 시험구의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중앙 및 상하이시 정부 관계자, 중국학자 등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유무역시험구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향후 자유무역시험구 및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정책을 전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노수연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고, 오종혁 전문연구원, 박진희, 이한나 연구원이 원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 귀중한 의견을 준 본원의 김준동 부원장, 이승신 팀장, 이상훈 박사와 산업연구원 박정수 박사, 동덕여대 서봉교 교수, 국무조정실 김윤경 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조은교 사무관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가 한 · 중 FTA 시대 우리 기업과 정부가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원장 이일형

국문요약

중국이 중속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2015년 12월)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협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12차 5개년 규획시기(2011~15년)에 크게 높아졌다.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추월한 이후 2014년에는 48.1%로 꾸준히 높아졌다. 3차 산업이 중국의 전체 고용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11년과 2010년부터 3개 산업부문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정부도 이 기간에 서비스업에 특화된 발전계획을 최초로 발표하였고, 2014년 '중국제조 2025' 구상과 연계하여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변모하는 데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생산형 서비스업 육성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국 서비스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인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6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 현황을 평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서비스 분야는 대체로 2001년 WTO 가입을 전후로 개방수준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2005년 개정된 DDA 양허안에서는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 한국과 중국의 개방도를 비교하면 금융, 콘텐츠 분야의

경우 한국의 개방도가 높으나, 의료, 법률, 교육, 관광은 중국이 한국보다 개방도가 높다.

중국정부의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은 2011년부터 변화해 왔다. 첫째, 서비스시장 개방의 목적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 기술 유입에서 이제는 국내 경제구조 개선과 글로벌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둘째, 개방대상이 외국기업에서 중국 민영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서비스업에도 '점-선-면'의 지역발전전략을 적용해 지역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시장 개방을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던 수동적 입장에서 이제는 TPP, RCEP 등 다자간 협력시대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하며,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등 개방방식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대외개방전략을 대표하는 사례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선정하여 6개 분야의 개방조치를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상하이 시험구에서 진행된 분야별 개방조치를 분석한 결과, 파격적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률서비스의 개방조치는 외국 법률사무소가 기대하는 수준, 즉 중국 측과의 동업 또는 합작, 중국 변호사의 직접고용 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의료서비스는 외국인 독자의 의 · 병원 설립을 일시 허용했다가 다시 제한함으로써 과거로 회귀한 상태이다. 콘텐츠의 경우, 민감분야인 영화, 방송, 온라인게임 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국 게임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가 낮은 콘솔게임이나 고정된 장소에서만 진행되는 공연분야만을 개방하는 등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교육은 영리성 교육훈련기관이나 독자적인 직업기능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한 점은 고무적이나, 실제 진출한 외국기업은 전무하다. 금융 관련 개방조치 역시 외국 금융회사의 진입 관점에서 볼 때는 대부분 기존에 이미 개방된 분야에 한해 그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서비스시장 개방조치에 대한 총평과 함께 향후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우리 정부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상하이 시험구에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이 예상보다 지체되는 이유는 상하이 시험구의 본질이 개방보다는 개혁의 성격이 더 강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개혁개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하이 시험구의 서비스 분야 개방속도나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는 중국 서비스업의 보수성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국유대형기관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개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이다. 둘째, 중국의 이데올로기나 건국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상적 경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교육, 문화콘텐츠가 그 사례이다. 셋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 또한 대외개방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이다. 상하이에서 시작된 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서비스 분야 개방조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정부는 그 추진속도와 개방범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향후 한 · 중 FTA 후속협상에서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를 참고하되 분야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시험구 조치가 중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관련 정책변동이 잦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국내기업에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부문별로 개방 속도와 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 법률, 가사, 양로 등 우선적으로 개방이 확대될 분야에서 집중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시장에 이미 진출한 기업과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관련 DB를 구축하는 이른바 ‘멘토링 시스템(mentoring system)’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국기업과의 교류 플랫폼이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원으로 상하이 시험구를 활용하고, 선진적인 경영제도를 상하이 시험구에 이식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배타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업 설립절차가 간단하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별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차 례

▌서언 ····· 3

▌국문요약 ····· 5

▌제1장 서론 ····· 17

1. 연구배경 ····· 18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21
4. 연구 범위와 방법 ····· 23
   가. 연구 대상업종 ····· 23
   나.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 ····· 24
   다. 연구방법 ····· 25
   라. 연구구성 ····· 25

▌제2장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정책 ····· 27

1.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 ····· 28
   가. 전체 서비스업 ····· 28
   나. 부문별 현황 ····· 34
2. 중국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 67
   가. 전체 서비스업 ····· 67
   나. 부문별 육성정책 ····· 69

▌제3장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과 개방전략 ····· 79

1. 전체 개방수준 평가 ····· 80
2.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개방 현황 ····· 82

가. 금융 ····· 82
나. 의료 ····· 84
다. 법률 ····· 90
라. 교육 ····· 94
마. 관광 ····· 99
바. 콘텐츠 ····· 102
3. 서비스시장 개방전략 ····· 105
가. 서비스시장 개방내용 비교 ····· 105
나. 12·5 기간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 ····· 108
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조성 ····· 112

제4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조치 ····· 115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황 ····· 116
2.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개방조치 ····· 122
가. 금융 ····· 122
나. 의료 ····· 132
다. 법률 ····· 141
라. 교육 ····· 148
마. 관광 ····· 154
바. 콘텐츠 ····· 161

제5장 결론 ····· 169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총평 ····· 170
가.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에 대한 평가 ····· 170
나. 서비스 분야 개방의 지체 원인 ····· 172
다. 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한 전망 ····· 174
2. 시사점 ····· 176

가. 정부에 대한 시사점 ····· 176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 193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99

참고문헌 ····· 200

Executive Summary ····· 223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 검토 ····· 22
표 2-1. 중국 3차 산업 세부업종별 비중 ····· 34
표 2-2. 중국 3차 산업 세부업종별 성장률 ····· 35
표 2-3. 중국의 의료기관 분류 및 각 의료기관 수(2013년) ····· 43
표 2-4. 중국 및 주요국의 의료기관·의료인력 수 비교(2012년) ····· 44
표 2-5. 중국 5대 법률사무소 현황(2014년) ····· 47
표 2-6. 2009~13년 중국 교육시장 규모(교육기관 수 및 재학생 수 기준) ····· 50
표 2-7. 2013년 중국 사립교육의 규모 ····· 53
표 2-8. 중국 인바운드 관광 현황 및 관광수입 추이(2002~14년) ····· 55
표 2-9.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현황 및 관광지출 추이(2002~14년) ····· 57
표 2-10. 중국 10대 여행사 현황 ····· 59
표 2-11. 2014년 중국 공연시장 현황 ····· 63
표 2-12. 2014년 중국 공연산업 장르별 통계 ····· 64
표 2-13. 12·5 기간 서비스업 주요 육성정책 ····· 68
표 2-14. 12·5 기간 금융서비스 주요 육성정책 ····· 70
표 2-15. 12·5 기간 의료서비스 주요 육성정책 ····· 73
표 2-16. 12·5 기간 교육서비스 주요 육성정책 ····· 75
표 2-17. 12·5 기간 법률, 관광, 콘텐츠 서비스 주요 육성정책 ····· 77
표 3-1.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국가별 비교(2015년) ····· 81
표 3-2. 중국 서비스업 부문별 개방비율 ····· 82
표 3-3. 중국의 의료서비스 분야 주요 개방조치 ····· 87
표 3-4.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전문가서비스-의사 및 치과의사 서비스) 90
표 3-5. 주중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의 주요 구비 요건 및 업무 범위 ····· 91

표 3-6. 외국 변호사 및 외국 법률사무소의 업무 범위에 따른 개방도 구분 ·· 94
표 3-7. 외국기업의 중국 내 교육기관 진출관련 규정 ····· 96
표 3-8. 중국의 교육서비스 분야 양허안 비교/한·중 FTA 협정문 ····· 98
표 3-9. 외자여행사 관리 법규 변화 ····· 101
표 3-10. 2006~15년간 연도별 정부업무보고상의 '개방' 관련 내용 ····· 106
표 4-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구성 ····· 116
표 4-2. 상하이 시험구 관련 주요 문건 ····· 121
표 4-3.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업 개방확대조치 ····· 123
표 4-4. 중국 5대 금융종합개혁시험구 ····· 126
표 4-5. 상하이 시험구 내 자유무역계좌 개설 허용 금융기관 리스트 ····· 131
표 4-6. 상하이 시험구의 의료서비스 분야 주요 개방조치 ····· 134
표 4-7. 상하이 시험구의 법률서비스 분야 주요 개방조치 ····· 142
표 4-8. 중·외 법률사무소간 업무협력 분야 개방도 비교 ····· 145
표 4-9. 상하이 시험구의 교육서비스 분야 주요 개방조치 ····· 150
표 4-10.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의 관광 관련 주요 내용 ····· 154
표 4-11. 아웃바운드 업무자격 취득 중·외 합자여행사 현황(2015년 9월 기준) ····· 160
표 4-12. 중국 게임기 시장 규제 추이 ····· 161
표 4-13.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개방 프로젝트 실시 세칙: 문화산업 ····· 163
표 5-1.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의료, 법률, 교육 분야 애로사항 ····· 177
표 5-2. 중국 서비스업 개방확대의 우선순위 ····· 181
표 5-3. 중국 금융서비스 분야 DDA 양허안 및 주요 FTA와의 비교 ····· 183
표 5-4. 중국 의료서비스 분야 DDA 양허안 및 주요 FTA와의 비교 ····· 186
표 5-5. 중국 법률서비스 분야 DDA 양허안 및 주요 FTA와의 비교 ····· 187

표 5-6. 중국 교육서비스 분야 DDA 양허안 및 주요 FTA와의 비교 ····· 189
표 5-7. 중국 관광(여행사) 서비스 분야 DDA 양허안 및 주요 FTA와의 비교 ····· 190
표 5-8. 중국 콘텐츠 서비스(공연) 분야 DDA 양허안 및 주요 FTA와의 비교 ····· 193
표 5-9. 중국의 외자 현지법인 설립절차 ····· 196

그림 차례

그림 2-1. 중국의 1~3차 산업의 규모(좌) 및 성장 추이(우) ····· 28
그림 2-2. 중국 연도별 GDP에서 2, 3차 산업의 비중 변화 ····· 29
그림 2-3. 중국 FDI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좌) 및 3차 산업 내 구조(우)(2014년 기준) ····· 30
그림 2-4. 산업별 고용 비중(좌) 및 증가율(우) ····· 31
그림 2-5.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 및 비중 ····· 32
그림 2-6. 중국의 서비스수출 구조(좌) 및 서비스수입 구조(우) ····· 33
그림 2-7. 중국 서비스업에서 세부업종별 위상 ····· 36
그림 2-8. 중국 은행업 자산, 부채규모 ····· 38
그림 2-9. 중국 보험수입 변화 ····· 39
그림 2-10. 중국 증권시장 기본 현황 ····· 40
그림 2-11. 중국의 국민의료비(2003~13년) ····· 42
그림 2-12. 중국 및 주요국의 국민의료비(2013년) ····· 42
그림 2-13. 중국 및 주요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2013년) ····· 42
그림 2-14. 중국 및 주요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 증가율(2009~13년) ····· 42
그림 2-15. 중국 공립·민영병원 수(2009~13년) ····· 46
그림 2-16. 중국 공립·민영병원 진료횟수(2009~13년) ····· 46
그림 2-17. 중국 교육시장의 구성 ····· 49
그림 2-18. 중국 교육산업 현황 ····· 49
그림 2-19. 중국 교육훈련기관의 발전 현황 ····· 51
그림 2-20. 중국 해외 출국 관광객의 지역분포 ····· 58
그림 2-21.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거래액 및 성장률 추이(2012~18년) ····· 60
그림 2-22. 중국 공연시장 발전 추이(2010~14년) ····· 62

그림 2-23. 중국 게임산업 규모 변화(좌) 및 게임 분야별 시장 점유율(우) ···· 66
그림 4-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위치 ····· 117
그림 4-2.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체계도 ····· 118
그림 4-3.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교육시장 개방도 ····· 153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배경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최근 서비스업 발전을 제약하는 조건을 철폐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상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을 추구해 왔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과 정부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중국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최근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 중국 국내 민간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개방전략을 동시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호혜적인 조세 인센티브를 2012년부터 폐지함에 따라 중국 서비스시장에서 국내외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 및 정부의 중국 진출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중국은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조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부터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를 설치하고, 실험적으로 서비스시장의 규제완화와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3년 9월 최초로 상하이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하고, 출범 후 3년 내 조성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의 개방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 시험구는 2013년부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금융, 운송, 법률, 문화, 교육, 의료 등 세부 업종에서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어 2014년 12월 톈진, 광둥, 푸젠이 자유무역시험구로 추가 지정되었고, 향후 중서부지역에서도 시험구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현재 상하이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개방조치를 응용한 자유무역시험구 모델이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하는 개방조치는 이미 타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무원은 2014년 12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복제가능한 개혁시범사업경험의 확대실시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推廣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複製改革试点经验的通知)」를 공포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조치를 지정하였다. 또한 2015년 5월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의 총체방안(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을 승인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국무원의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의 총체방안에 대한 답변(国务院关于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的批復)」을 발표하여 4대 자유무역시험구 이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서비스업의 개방확대가 이루어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향후 3년간 과학기술, 인터넷 · 정보, 문화 · 교육, 금융, 비즈니스 · 관광, 헬스 · 의료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1] 중관춘(中关村)에서 특별 개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유무역시험구에 상당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개방확대 조치를 취하는 지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업종별로 시험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하는 지역도 있다.

1) 国务院(2015a), 国务院关于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的批复, http://www.gov. cn/zhengce/content/2015-05/21/content_9794.htm(검색일: 2015. 7. 27).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5년 12월 한 · 중 FTA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향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한 · 중 FTA 체결을 통해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일부 확대되고, 협정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에 기반한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개시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의 기회도 확보하였다.[2] 이처럼 한 · 중 FTA 발효 및 자유무역시험구 대상 확대 등을 계기로 우리의 입장에서 출발한 시험구 업종별 개방조치의 구체적인 분석과 전략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첫째, 한 · 중 FTA의 서비스, 투자 부문 후속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동의할 수 있는 대외개방도의 최대치라 할 수 있는 상하이 시험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협상에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단기적으로 상하이 시험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파악하고,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주요 서비스 분야별 발전 현황 및 개방수준,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행되는 개방조치를 심층 분석하여 중국 서비스시장

2) 산업통상자원부(2015), 「한 · 중 FTA 정식서명, 중장기 미래 협력의 제도적 틀 마련」, 보도자료(6월 1일), p. 6.

의 향후 개방도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진출 및 협력 전략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으며, 중국 서비스업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업 개방 정도의 비교를 통해 한 · 중 FTA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한편 중국에서 진행된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선행연구는 시험구 조성방안에 대한 제언이나 전망, 분야별 개혁 · 개방조치(제도)와 시험구 제도의 타 지역으로의 확대 및 영향 등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중국 서비스업의 개방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외개방 차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중국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내개방을 포함한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하고, 대내외 개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조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험구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관점에서 시험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중국정부의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에 대한 거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띤다.

표 1-1. 선행연구 검토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Investing in China through Free Trade Zones - 연구자(연도): Riccardi, Lorenzo(2015) - 연구목적: 중국 진출을 위한 자유무역구(FTZ)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아시아 헤드쿼터로서의 상하이 활용 가능성 검토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헤드쿼터 입지 결정요인 - 싱가포르와 상하이의 환경비교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내용 - 자유무역시험구 제도의 향후 전망
	2	- 과제명: 国家试验 :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制度设计 - 연구자(연도): 肖林(2015) - 연구목적: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적 틀 수립	- 문헌연구 - 사례연구	- 미국, 두바이, 브라질 자유무역단지제도 비교 - 상하이 시험구의 금융제도, 투자감독관리제도, 세수제도, 역외기능 분석 - 상하이 시험구와 정부개혁, 헤드쿼터 경제, 4대 중심과의 연계
	3	- 과제명: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 연구자(연도): 이강국(2015) - 연구목적: 중국의 신경제 정책의 핵심인 자유무역구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제시	- 문헌연구 - 전문가 인터뷰	- 상하이 시험구 설립경과 - 상하이 시험구 기본정책 - 상하이 시험구 분야별 조치(금융, 투자, 무역, 세무, 서비스, 행정) - 상하이 시험구 제도확산 및 활용, 사례 - 자유무역구 정책의 시사점, 대응방안
	4	- 과제명: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新战略研究 - 연구자(연도): 袁志刚(2013) - 연구목적: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전략 제시	- 문헌연구	- 중국 대외무역환경 개선과 자유무역시험구의 관계 - 중국 금융개혁, 자본시장 개방,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과 자유무역시험구의 관계 - 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개혁
	5	- 과제명: 중국 서비스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연구자(연도): 한국은행(2012) - 연구목적: 2000년대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 현황 분석과 향후 전망	- 통계분석	- 중국 서비스업 및 서비스수지 - 중국 서비스업 발전의 당면과제 - 중국 서비스업의 향후 발전방향
본 연구		- 과제명: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목적: 자유무역시험구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현지조사 - 전문가 간담회	- 중국 서비스시장 발전 현황 및 과제 - 중국 주요 서비스업의 대내외 개방도 •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되는 주요 서비스업별 개방조치, 진출사례 - 중국 서비스업 개방전략의 변화 -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

자료: 저자 정리.

4. 연구 범위와 방법

가. 연구 대상업종

본 연구는 중국 서비스시장 중에서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의 6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3] 다양한 서비스 분야 중 이들 분야를 선정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상하이 시험구에서 단행된 개방조치의 주요 내용, 한 · 중 FTA와의 연계성, 우리 기업의 진출가능성 등이다.

첫째, 2013년 상하이 시험구 조성과 관련해 최초로 발표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에서는 별첨으로 확대개방조치를 시행하는 서비스 분야로 6개 대분류의 18개 분야를 명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금융, 해운, 비즈니스, 전문, 문화, 사회서비스가 포함되는데, 그중에서도 금융 분야와 문화콘텐츠 분야[4]에 해당하는 개방조치가 각각 3건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한 · 중 FTA의 후속협상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개방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2015년 6월 체결된 한 · 중 FTA에서 금융을 위시한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는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합의되었으며,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될 계획이다. 따라서 협정문에서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법률, 관광, 콘텐츠 분야나, 중국이 체결한 FTA로서는 최초로 별도의 챕터로 구성된 금융 분야,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국내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 근거로 제시하는 중국의 교육, 의료

---

3) 2015년 3월 24일에 개최된 연구계획심의회의에서 자문위원, 심의위원과 연구진 간의 논의를 통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6개 분야를 연구 대상업종으로 선정했음.

4) 문화콘텐츠에 해당하는 서비스 영역은 게임기, 공연중개, 오락장소 등임. 총체방안에서는 게임기를 비즈니스 영역에 포함시켰으나, 성격상 문화콘텐츠 산업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간주함.

분야에 대한 분석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후속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이들 분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또는 협력이 유망하다고 평가되는 분야이다. 중국경제가 서비스업 중심의 구조로 변모하고 주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2000~15년 9월간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투자에서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1% 미만에 그친다.[5] 그러나 우리 기업은 교육, 의료, 콘텐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관광 또한 한 · 중 FTA를 통해 개방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 시장 경쟁에 참여해 볼 만하다.

이상의 현황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나. 연구의 시 · 공간적 범위

첫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변화가 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가시화되었음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현재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핵심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심층 분석이므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된 2013년부터 현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둘째, 연구의 직접적인 공간 범위는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로 국한한다. 1992년 푸둥신구 개발개방을 기점으로 상하이는 중국경제의 개혁개방정책에서 최전선에 위치해 왔으며, '경제수도'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2. 6)의 자료를 활용해 저자가 계산.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시진핑 정부식 개혁개방의 첨병 역할을 하는 자유무역시험구 모델 또한 상하이가 가장 먼저 유일한 시험구로 지정될 정도로 현 정부에서도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작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이후 지정된 시험구에서도 활용하며, 2015년 발표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4개 시험구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서비스 분야 개방에서 일부 세부업종에서는 시험구별로 개방 대상이나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개방 추세나 전략, 방법은 향후에도 상하이 시험구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한된 연구역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하이 시험구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심층분석한다.

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활용하였다. 중국 중앙 및 상하이 시정부의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정책 문건 분석과 주요 서비스업의 개방도 및 발전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2015년 8~9월간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상하이, 베이징의 현지조사를 통해 중국 국내외 기업의 상하이 시험구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상하이재경대학 자유무역구연구원 등 중국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시험구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최대한 파악하였다.

라. 연구구성

본 연구는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의 검토, 연구 범위와 방법 등을 제시

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서비스시장의 개방전략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인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6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 현황을 분석하고, 개방전략의 변화를 방향, 대상, 지역, 목적, 방식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변화한 개방전략이 실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실효성 여부를 검증한다. 제5장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서비스시장 개방조치에 대한 총평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우리 정부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장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정책

1.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
2. 중국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1.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

가. 전체 서비스업

1) 서비스업의 성장 추이 및 서비스업의 구조

2005~14년간 중국 서비스업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과거 수출 및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에서 내수 및 소비 위주의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3차 산업은 상승세를 타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2005년 7조 6,900억 위안에서 2014년 30조 6천억 위안으로 약 4배에 가깝게 증가하며 연평균 16.5% 성장하였다. 전년대비 성장률에서는 모든 산업의 성장추세가 과거보다는 완만하나 여전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4년 3차 산업의 증가율은 7.8%로, 중국 전체 GDP 증가율을 웃돌았다. 1차 산업은 4.1%, 2차 산업은 7.3%를 차지했다.

3차 산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그림 2-1. 중국의 1~3차 산업의 규모(좌) 및 성장 추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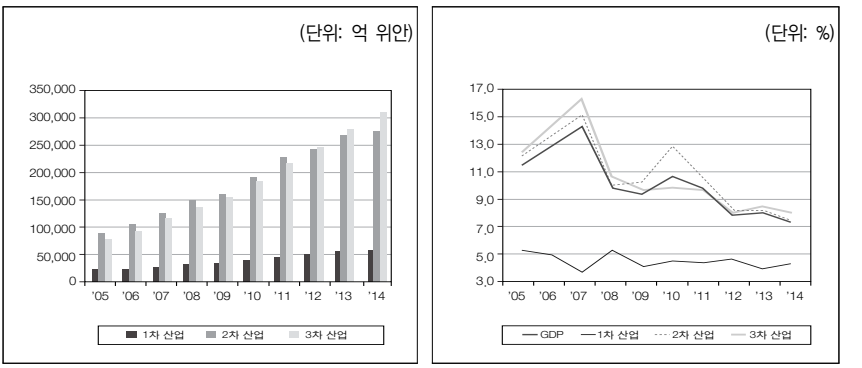

주: 산업의 규모(좌), 성장 추이(우)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10. 1).

2-2]에서 보듯이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5.5%에 달해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추월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4년에는 48.1%에 달해 2차 산업과의 격차가 5.4%p로 확대되었다. 현재 3차 산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경제는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로 변모할 전망이다.

그림 2-2. 중국 연도별 GDP에서 2, 3차 산업의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7. 29).

2) 외국인투자에서 서비스업의 우위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구조에서도 서비스업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에서 보듯이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1.4%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추월하였고 이후에도 거듭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전체 FDI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이며, 전년대비 1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있어 3차 산업의 빠른 성장과 우위선점은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완화정

책과 서비스업 개방확대에 따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은 그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업종 중 2014년 증가율이 가장 빠른 업종은 금융으로 79.5% 증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부동산, 임대비즈니스 서비스, 보건 · 사회복지가 모두 20%를 기록하였다.[6)]

서비스업 내 업종별 구조변화(FDI)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3차 산업 내 46.7%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투자금액은 346억 달러이다. 그 뒤를 이어 임대비즈니스 서비스(16.9%), 도소매(12.8%), 교통 운수 · 저장 · 우정(6.0%), 금융(5.6%), 과학연구 · 기술서비스 · 지질탐사(4.4%)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3 참고).

그림 2-3. 중국 FDI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좌) 및 3차 산업 내 구조(우)(2014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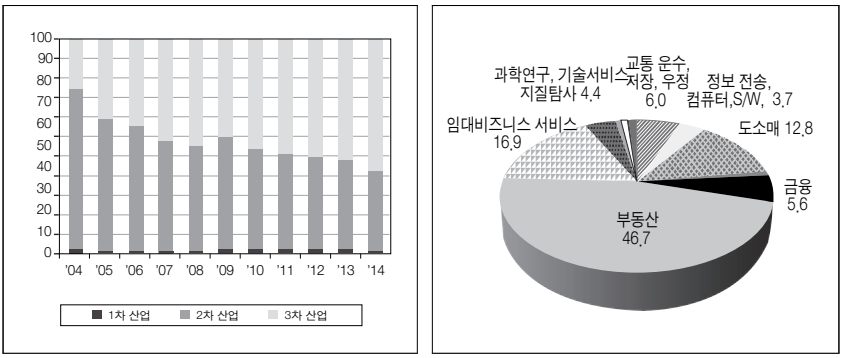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10. 1).

6) CEIC Database(검색일: 2015. 10. 1)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3)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증대

중국의 서비스업 확대는 고용창출의 가속화로 이어졌다. 과거 중국에서 가장 많이 고용을 차지했던 1차 산업에 이어 줄곧 2위를 차지해오던 서비스업은 2011년 고용인 수가 2억 7천만 명으로 처음으로 1차 산업의 고용자 수를 넘어서며 1위를 차지하였다.[7] 반면 1차 산업의 고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써 과거 1차 산업 위주의 고용구조가 3차 산업 위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1차 산업, 2차 산업의 고용증가율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나, 3차 산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 3차 산업의 고용자 수는 약 3억 1,400만 명으로, 1차 산업의 2억 2,800만 명과 2차 산업의 2억 3,100만 명을 제치고 전체 고용에서 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5.8%의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여 현재 중국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그림 2-4 참고).

그림 2-4. 산업별 고용 비중(좌) 및 증가율(우)

(단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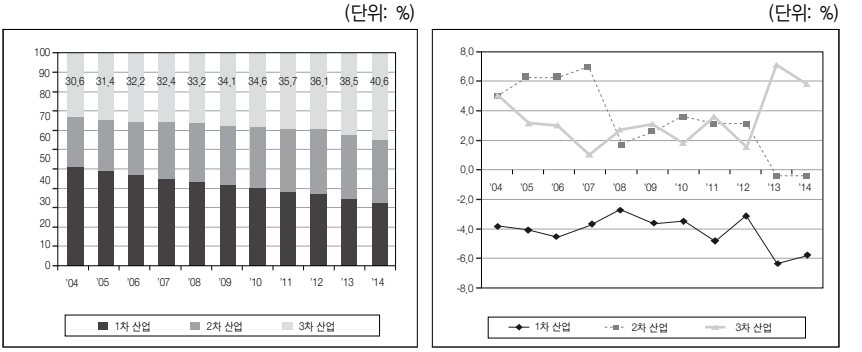

주: 고용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좌), 산업별 고용 성장률(우).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10. 29).

7) CEIC Database(검색일: 2015. 10. 29).

특히 도시의 경우 3차 산업의 고용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3년 중국 도시(城镇单位) 고용자 수는 1억 8천만 명, 이 중 서비스업 고용자 수는 약 8,600만 명으로 47.5%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세부업종 중 고용자 수가 많은 업종은 교육업, 공공관리 · 사회조직, 교통 · 운송 · 창고 · 우정산업 순으로 각각 1,700만 명, 1,600만 명, 890만 명을 차지하였다.[8)]

4) 서비스무역의 확대

중국은 서비스업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서비스무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2004~13년 연평균 16.8% 증가하며, 같은 시기 전 세계 서비스무역 연평균 증가율인 8.2%보다 2배 이상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2013년 중국의 서비스무역 총액은 5,396억 달러로 세계 3대 서비스무역 대상국이다. 전 세계 전체 서비스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

그림 2-5.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 및 비중

(단위: 억 달러(좌),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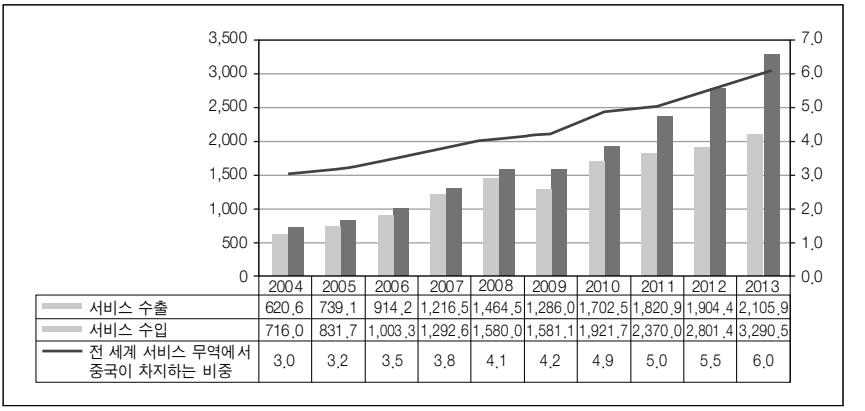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비스 수출	620.6	739.1	914.2	1,216.5	1,464.5	1,286.0	1,702.5	1,820.9	1,904.4	2,105.9
서비스 수입	716.0	831.7	1,003.3	1,292.6	1,580.0	1,581.1	1,921.7	2,370.0	2,801.4	3,290.5
전 세계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3.0	3.2	3.5	3.8	4.1	4.2	4.9	5.0	5.5	6.0

자료: 商务部(2014b),「中国服务贸易统计2014」, http://pan.baidu.com/s/1hqlLJKw(검색일: 2015. 11. 6).

8) 国家统计局(2014),『中国统计年鉴(2014)』, p. 92.

는 비중은 2004년 3%에서 2013년 6%까지 확대됐으며, 현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서비스 수입은 미국에 이어 2위, 서비스 수출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9)]

2013년 중국의 서비스 수출구조는 여행서비스가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문서비스(19%), 기타 상업서비스(19%), 운송서비스(18%)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수입구조에서도 여행서비스의 비중이 39%로 가장 크며, 운송서비스(29%), 자문서비스(7%), 보험서비스(7%), 전유권 사용비 및 특허비(6%), 기타 서비스(6%)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2-6 참고).

한편 서비스 수입의 증가율이 서비스 수출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수출-수입 간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는 95억 5천만 달러였던 서비스 무역적자는 2013년 1,184억 6천만 달러로 확대되었다(그림 2-5 참고).

그림 2-6. 중국의 서비스 수출구조(좌) 및 서비스 수입구조(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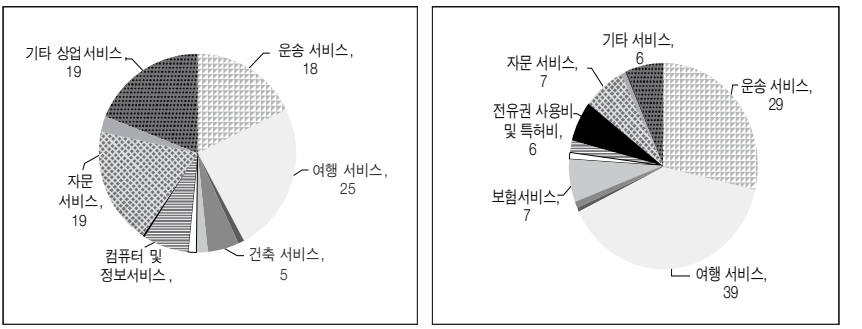

자료: 商务部(2014b), 「中国服务贸易统计2014」, http://pan.baidu.com/s/1hqILJKw(검색일: 2015. 11. 6).

9) 商务部(2014b), 「中国服务贸易统计2014」, http://pan.baidu.com/s/1hqILJKw(검색일: 2015. 11. 6).

나. 부문별 현황

1)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발전 현황 비교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발전 현황(산업부가가치)을 살펴보면, 3차 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며, 그 비중이 2004년 18.8%에서 2014년 20.3%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금융업이 2014년 15.3%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서비스업의 위상을 유지한다. 특히 금융업의 비중은 2011년 14.3%에서 2014년에는 15.3%로 확대되었다. 이는 교통 운수 · 저장 · 우정산업이나 도소매[10], 숙박 · 식음료업 등의 비중이 감소추세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표 2-1 참고).

표 2-1. 중국 3차 산업 세부업종별 비중

(단위: %)

	교통 운수, 저장, 우정	정보 전송, 컴퓨터, S/W	도소매	숙박, 식음료	금융	부동산	임대, 비즈니스 서비스	과학 연구, 기술 서비스, 지질 탐사	수리, 환경, 공공 시설 관리	주민 서비스, 기타 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 복지	문화, 스포츠, 오락	공공 관리, 사회 조직
2004년	14.0	6.4	18.8	5.5	9.9	10.8	4.0	2.7	1.2	3.7	7.4	4.0	1.6	9.3
2005년	13.9	6.4	18.1	5.5	9.7	11.1	4.1	2.8	1.1	4.1	7.5	3.9	1.6	9.6
2006년	13.4	6.2	18.1	5.3	10.9	11.4	4.2	2.9	1.0	3.9	7.0	3.6	1.5	9.7
2007년	12.7	5.8	18.2	4.8	13.2	12.0	4.1	3.0	1.0	3.5	6.7	3.5	1.4	9.4
2008년	12.0	5.8	19.3	4.9	13.5	10.8	4.1	2.9	0.9	3.4	6.5	3.4	1.4	10.1
2009년	10.8	5.3	18.9	4.5	14.2	12.3	4.0	3.1	1.0	3.4	6.8	3.3	1.5	9.9
2010년	10.4	4.9	19.9	4.3	14.2	13.0	4.3	3.1	1.0	3.4	6.7	3.3	1.4	9.0
2011년	10.2	4.6	20.4	4.0	14.3	13.1	4.4	3.2	1.0	3.4	6.7	3.5	1.4	8.4
2012년	9.8	n.a.	20.5	3.9	14.5	12.9	n.a.	n.a.	n.a.	n.a.	n.a.	n.a.	n.a.	n.a.
2013년	9.4	n.a.	20.4	3.7	14.9	13.0	n.a.	n.a.	n.a.	n.a.	n.a.	n.a.	n.a.	n.a.
2014년	9.4	n.a.	20.3	3.7	15.3	12.4	n.a.	n.a.	n.a.	n.a.	n.a.	n.a.	n.a.	n.a.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7. 29).

10) 도소매업의 경우, 2004년 18.8% 이던 비중이 2014년 20.3%로 늘어났으나, 본 연구의 대상기간인 2011년 이후의 추이만을 놓고 본다면 2011년 20.4%에서 2014년에는 소폭 하락하였으므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인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세부 서비스업별 부가가치 비교가 가능한 2011년까지의 경우, 3차 산업 전체 성장률보다 대체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업종은 금융, 부동산, 임대 및 비즈니스, 과학연구 등이다. 교육과 보건 · 사회복지, 문화 · 스포츠 등은 2011년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12년 이후의 추이 파악이 필요하다. 2012~14년의 성장률 분석이 가능한 업종 중에서는 금융이 유일하게 3차 산업 전체 성장률보다 꾸준히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표 2-2 참고).

본 연구의 대상인 금융, 의료, 법률, 교육, 콘텐츠 산업의 경우,[11] 금융업은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 부동산업과 함께 중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업종으로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 고속성장형 대형서비스업으로

표 2-2. 중국 3차 산업 세부업종별 성장률

(단위: %)

	교통운수, 저장, 우정	정보전송, 컴퓨터, S/W	도소매	숙박, 식음료	금융	부동산	임대, 비즈니스 서비스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지질탐사	수리, 환경, 공공시설관리	주민서비스, 기타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스포츠, 오락	공공관리, 사회조직	3차 산업 전체
2005년	14.6	15.8	12.1	14.5	13.4	18.7	19.1	23.0	10.6	26.1	17.7	14.0	15.5	19.9	16.1
2006년	14.2	15.9	18.4	14.2	33.2	21.8	21.1	24.1	11.3	13.2	11.2	11.3	13.1	20.0	18.5
2007년	19.8	18.0	26.7	15.8	52.5	33.2	23.8	28.2	17.4	12.8	20.1	20.7	19.7	22.6	26.2
2008년	12.1	17.2	25.0	19.2	20.7	6.7	19.5	16.0	13.9	15.8	15.5	15.3	17.8	27.3	18.1
2009년	0.9	3.9	10.8	5.2	19.0	28.7	10.4	18.2	17.0	13.9	17.9	9.8	16.1	10.0	13.0
2010년	13.7	8.8	23.8	10.9	17.8	24.3	25.7	19.4	18.3	15.7	14.9	17.7	11.9	6.9	17.7
2011년	16.3	10.1	21.8	11.1	19.5	19.5	20.8	23.6	16.4	19.3	19.8	25.3	20.5	11.1	18.7
2012년	8.8	n.a.	14.0	11.3	14.7	10.9	n.a.	n.a.	n.a.	n.a.	n.a.	n.a.	n.a.	n.a.	13.3
2013년	9.6	n.a.	13.0	7.2	17.1	15.2	n.a.	n.a.	n.a.	n.a.	n.a.	n.a.	n.a.	n.a.	13.5
2014년	10.4	n.a.	10.5	9.5	14.0	6.1	n.a.	n.a.	n.a.	n.a.	n.a.	n.a.	n.a.	n.a.	11.2

주: 통계상의 한계로 명목성장률을 사용함.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7. 29).

11) 관광업은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표준산업분류에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분석이 어려우므로 제외함.

분류된다. 법률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임대 및 비즈니스업의 경우, 3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4%에 불과해 규모 면에서는 중위권 수준이나 연평균 20%의 성장을 기록해 고속성장형 소형서비스업으로 파악된다.[12] 반면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보건 · 사회복지산업이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문화 · 스포츠 · 오락산업, 교육산업은 연평균 성장률 및 비중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중저속 소형서비스업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1년 모든 서비스업종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높은 성장을 기록해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그림 2-7. 중국 서비스업에서 세부업종별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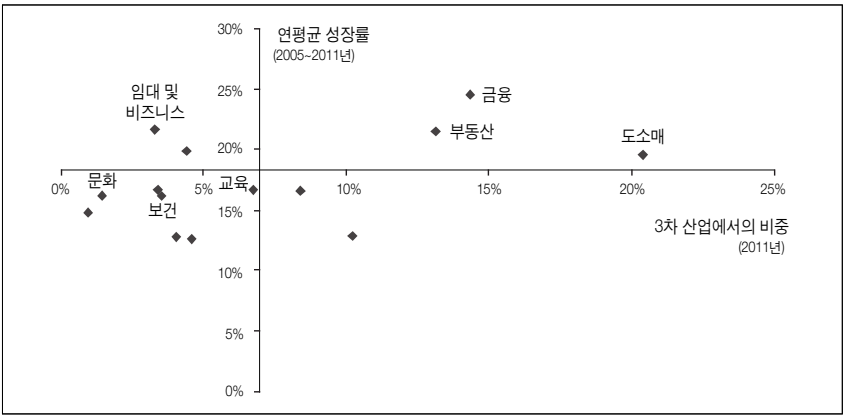

자료: [표 2-1], [표 2-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금융

중국의 금융시장은 주식, 외환, 보험 거래규모 면에서 이미 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 2014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5조 달러로 미국의 23조

12) [표 2-1], [표 2-2]를 활용.

4,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했으며, 전 세계에서의 비중도 5.4%에서 7.6%로 상승했다. 외환시장도 위안화의 일평균 외환 거래량이 전년 대비 50% 증가한 300억 달러로 여타 아시아 국가가 감소 또는 정체된 것과 대조적인 추세를 보였다.[13] 또한 보험업 수입보험료는 2014년 2조 위안을 돌파하여 세계 4위를 기록하였다.[14] 자산운용업도 개인소득의 증가 및 금융업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여 공모펀드 순자산 규모가 2014년 3/4분기 기준 6,110억 달러에 달해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15]

세부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은행업의 경우 금융기관 수가 2004년 3만 3,862개였으나, 전체의 97.1%를 차지하던 농촌 금융기관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면서 2012년 3,747개로 감소했다. 최근에는 기업집단의 재무공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소비금융회사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2014년 금융기관수가 4,089개로 증가했다. 반면, 은행업 종사자 수는 2004년 229만 3,700명에서 2014년에는 376만 3,4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16] 자산 및 부채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림 2-8]에서 보는 것처럼 자산총액은 2011년 최초로 100조 위안을 넘어서 2014년에는 172조 3,300억 위안으로 성장했고, 총부채 역시 2011년 100조 위안을 넘어서 2014년에는 약 160조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자산총액 증가율이 총부채 증가율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다. 또한 총자산과 총부채에서 대형 상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8%에서 2014년에는 약 41%로 17%p 감소했으나, 여전히 모든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17]

---

13) 이치훈(2015. 1. 2), 「2014년 중국 금융시장 평가와 2015년 전망」, p. 1.

14) 자본시장연구원(2015a), 「중국 보험산업 동향 및 전망」, p. 1.

15) 자본시장연구원(2014), 「중국 자산운용업 현황 및 전망」, p. 2.

16) CEIC Database(검색일: 2015. 11. 22)를 참고하여 작성.

17) CEIC Database(검색일: 2015. 11. 22)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2-8. 중국 은행업 자산, 부채규모

(단위: 조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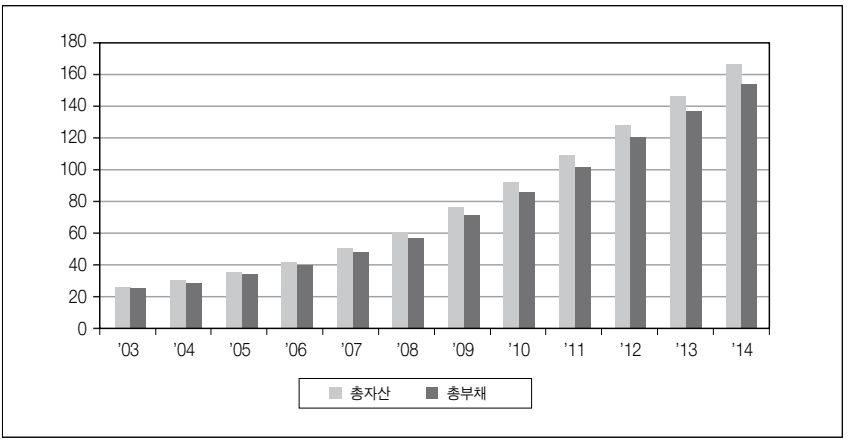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11. 22).

둘째, 보험업의 경우 중국주민의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힘입어 보험수입이 2003~14년간 연평균 16.2%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003년 전체 보험수입의 77.6%를 차지하던 생명보험의 비중이 2014년에는 64.4%로 감소하였다. 손해보험(财产保险) 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종류는 자동차보험으로 2014년 약 5,516억 위안에 달했고, 전체 손해보험 수입의 73.1%를 차지했다.[18] 2014년 생명보험(人身保险) 수입 중에는 종신보험(人寿保险)의 비중이 85.9%로 가장 높으며, 건강보험수입이 비중은 11.2%로 높지 않으나 동기대비 41.6%의 빠른 성장을 보였다.[19]

2014년 전체 140개의 보험회사 중 중국계가 90개(손해보험사 45개, 생명보험사 45개), 외국계가 50개(손해보험사 22개, 생명보험사 28개)를 차

18)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5), 『2015中国保险市场年报』, p. 40.

19)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5), 『2015中国保险市场年报』, p. 43.

지한다. 보험수입 상위 10대 기업은 모두 중국계 보험사가 차지하며, 상위 5위 기업의 보험수입 합계가 60% 이상에 달해 여전히 시장집중도가 높다. 이 중 손해보험의 상위 5대 기업의 비중은 75.7%로 2013년보다 0.4%p 상승한 반면, 생명보험의 상위 5대 기업의 비중은 62.4%로 2013년보다 7.1%p 하락하여 시장집중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20] 최근에는 민간자본이 보험회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2015년 1~10월간 민간자본이 종신보험 51개, 손해보험회사 35개 등 총 113개의 보험회사 설립을 희망하였으나 실제로 허가증을 취득한 사례는 이 중 10%에 불과하다.[21]

그림 2-9. 중국 보험수입 변화

(단위: 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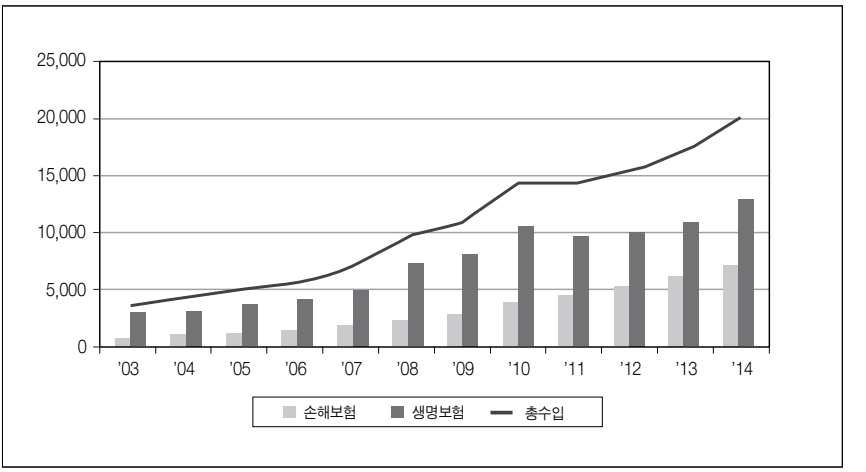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11. 22).

20)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5),『2015中国保险市场年报』, p. 41, 44.

21)「民营资本竞相设立保险公司 销售牌照成香饽饽」(2015. 11. 2),『中国网』, http://finance.sina.com.cn/money/insurance/bxdt/20151102/090023649821.shtml(검색일: 2015. 11. 22).

셋째, 증권업의 경우, [그림 2-10]에서 보듯이 상하이와 선전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수는 2004년 1,373개에서 2015년 10월에는 2,800개로 10여 년간 2배가 증가했으며, 종목 수는 2004년의 1,669개에서 2015년 10월 8,489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1/4분기에 지속된 증시활황의 영향으로 이 기간에만 주식종목이 3,375개 증가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2014년 영업이익이 2,60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3.4% 증가했고, 순이익은 966억 위안으로 119.5% 급증했으며, 전체 120개 증권사 중 119개 증권사가 흑자를 달성하였다.[22)]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일례로 World Economic Forum이 2015년 발표한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은 종합경쟁력 순위에서는 전체 140개국 중에서 28위, 시장규모 면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반면, 금융시장 발전(financial

그림 2-10. 중국 증권시장 기본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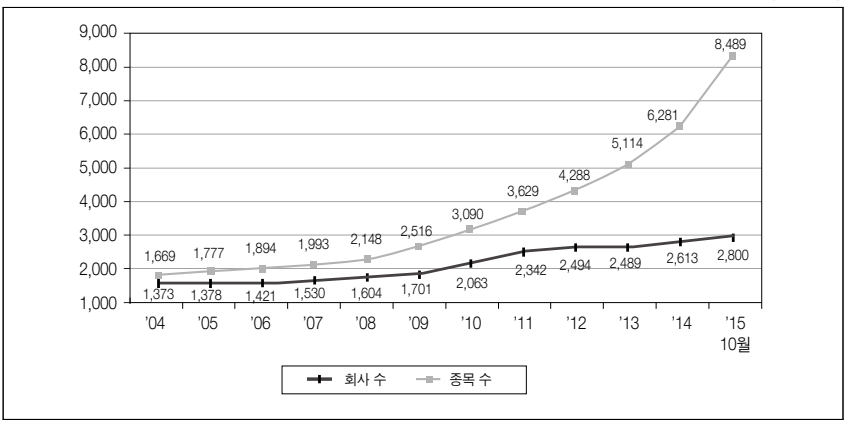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11. 22).

22) 자본시장연구원(2015b), 「중국 증권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 p. 1.

market development) 부문에서는 4.1점(7점 만점)으로 54위를 차지했다. 금융시장 발전척도 중에서는 법적 권리와 은행의 안정성(soundness of banks)이 각각 80위와 78위로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다.[23] 특히 사업을 할 때 최대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혁신능력 부족 다음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access to financing)이 지적되었다. 이는 은행대출이 대부분 국유기업이나 대기업에 집중되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24]

또한 IMD에서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중국은 종합경쟁력 순위에서는 전체 61개국 중 22위, 국내경제 분야에서는 2위를 차지한 반면, 금융(finance) 부문에서는 28위를 차지해 중위권에 해당한다.[25]

3) 의료

중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주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WHO 통계에 따르면 [그림 2-11]에서 보듯이 2013년 국민의료비(Total Expenditure on Health)는 5,112억 달러로, 비록 미국의 18%에 불과한 수준이나 2003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민의료비의 GDP 대비 비중은 5.6% 정도로 미국, 일본, 한국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나 점차 늘어나고 있다(그림 2-12 참고). 1인당 의료비 지출액 역시 367달러(2013년 기준)로 매우 낮은 편이나 매년 14%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2-13, 그림 2-14 참고).

---

23)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p. 141.

24)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p. 29.

25)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2015), Country Profile: China Mainland, https://worldcompetitiveness.imd.org/countryprofile/CN(검색일: 2015. 11. 11).

그림 2-11. 중국의 국민의료비(2003~13년)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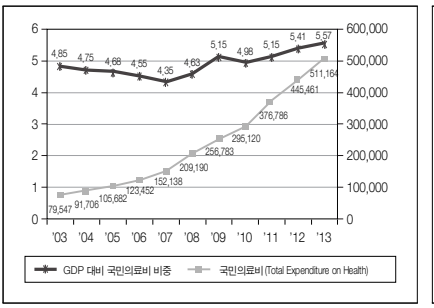

자료: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http://apps.who.int/nha/database(검색일: 2015. 7 .9).

그림 2-12. 중국 및 주요국의 국민의료비(2013년)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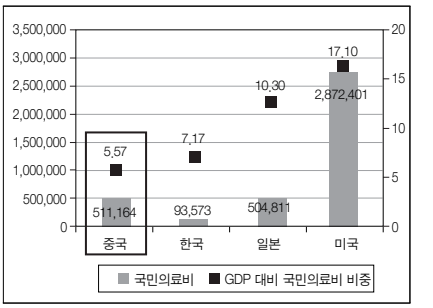

자료: 좌동.

그림 2-13. 중국 및 주요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2013년)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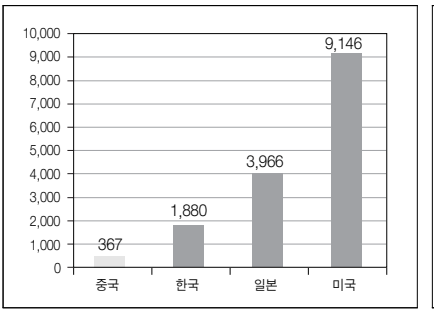

자료: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http://apps.who.int/nha/database(검색일: 2015. 7 .9).

그림 2-14. 중국 및 주요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 증가율(2009~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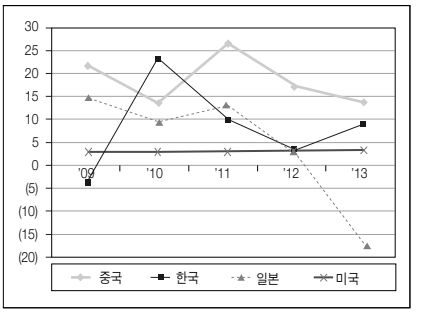

자료: 좌동.

중국의 의료기관은 크게 병원, 기층(基層)의료기관, 전문공공 위생기구, 기타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병원은 병상 수에 따라 1 · 2 · 3급으로 구분되며, 이 중 3급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으로 성(省) 인민병원, 대학 종합병원, 대도시 유명병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우수한 의료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기층의료기관은 한국의 의원 · 보건소와 같이 지역민을 대상

으로 보건 · 건강관리 및 기초 진료를 수행하는 곳이다. 기층의료기관 중 문진부와 진료소가 한국의 의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다(표 2-3 참고).

중국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은 미국, 한국 등과 비교해 보면 아직 부족한 편이다. 2012년 중국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3.02개로 한국(10.29개), 일본(13.36개)에 크게 못 미치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도 한국, 미국 등에 비해 적다(표 2-4 참고).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부응하고자 중국은 2020년까지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를 4.8개로, 의사 · 간호사 수를 각각 2.5명, 3.14명으로 늘리고자 한다.[26]

표 2-3. 중국의 의료기관 분류 및 각 의료기관 수(2013년)

분류		개수	비고
병원	3급병원	1,692	5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2급병원	5,944	100~499병상
	1급병원	2,784	20~99병상
	미분류	2,976	-
기층 의료기관	문진부 · 진료소	159,176	2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한국의 의원급)
	사구(社區)위생서비스센터	8,488	건강관리 및 기초진료 실시
	향진 · 가도 위생원	37,608	보건소
	촌 위생실	648,619	농촌의 소규모 보건소(대부분 의사 1인 상주)
전문공공 위생기구	질병예방통제센터	3,516	전문적으로 질병을 예방 · 관리하기 위한 정부 위생기구
	부녀아동 보건기구	3,144	부녀 · 아동 대상의 건강관리를 정책적으로 수행
	위생감독기구	2,967	병원 · 기층의료기관의 위생 및 의료행위 관리 감독
	기타	21,528	건강교육소, 응급센터, 혈액관리기구 등
기타 의료기관	요양원	183	-
	의학연구기구	201	-
	기타	2,782	의료 관련 통계센터 및 직업훈련기관 등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의료서비스 중국진출 현황분석 및 맞춤형 진출 전략 연구」, p. 13;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2014), 『2014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 pp. 4~5.

26) 國務院(2015d), 「全国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纲要(2015-2020年)」,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3/30/content_9560.htm(검색일: 2015. 7. 9).

표 2-4. 중국 및 주요국의 의료기관 · 의료인력 수 비교(2012년)

	인구 천 명당 병상 수(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명)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명)
중국	3.02	1.55	1.81
한국	10.29	2.08	4.84
일본	13.36	2.29	10.54
미국	-	2.50	-

주: 국가별 데이터 누락이 많아 비교가 가능한 2012년 데이터를 정리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검색일: 2015. 7. 9).

중국의 의료서비스 시장은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민영자본에 개방되었다. 1984년 광저우시에 중국 최초의 민영 의료기관인 '이쇼우병원(益寿医院)'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민영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나 현재 1만여 개가 넘는 민영병원이 설립되었다(2013년 기준, 그림 2-15 참고).[27] 중국 전체 병원 수 중 민영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8%로 양적으로는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림 2-16]의 진료횟수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민영병원의 진료횟수는 전체 진료횟수의 10.5%에 불과한 수준으로, 여전히 공립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민영 의료기관의 발전이 더딘 것은 입지 선정, 대형설비 설치 허가, 의료보험 적용, 인력유치 등에 여러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 의료서비스 계획 수립 시 환자 유치에 유리한 핵심지역은 종종 공립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민영 의료기관은 배제되며, 대형 의료설비 설치 허가나 의료보험 적용기관 심사 시 민영 의료기관은 좀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곤 한다. 또한 민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공립 의료기관 소속 의사에 비해 의료 관련 학회 또는 중요 행사에 참여가 어려워,

27) 陈绍福(2012), 「中国民营医院发展回顾与2012年展望」, 『中国民营医院发展报告(1984-2012)』, p. 6.

우수 의료인력이 공립 의료기관으로만 몰리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제약은 특정한 법이나 정책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의료서비스 시장이 오랫동안 공립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장기적으로 형성된 관행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28)]

최근 중국정부는 늘어나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정부재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재정은 의료서비스 발전이 취약한 농촌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고, 민간자본을 통해 일반 의료서비스 및 노인간호 · 심리상담 · 재활 · 건강검진 등 새롭게 늘어난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이원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29)] 이에 민영 의료기관이 왕성히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형설비 설치 심사 시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어려움 없이 대형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 의료기관이 공립 의료기관과 동등하게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30)] 의료서비스 시장 관행이 급격히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장려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민영 의료기관의 발전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28) 陈绍福(2012),「中国民营医院发展回顾与2012年展望」,『中国民营医院发展报告(1984-2012)』, pp. 50~51.

29) KIEP 전문가 간담회(2015. 5.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0) 国务院办公厅(2010),「国务院办公厅转发发展改革委卫生部等部门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意见的通知」, http://www.gov.cn/zwgk/2010-12/03/content_1759091.htm(검색일: 2015. 6. 8); 国务院办公厅(2015),「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若干政策措施的通知」, http://www.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06/t20150615_1256629.htm(검색일: 2015. 6. 8).

그림 2-15. 중국 공립 · 민영병원 수 (2009~13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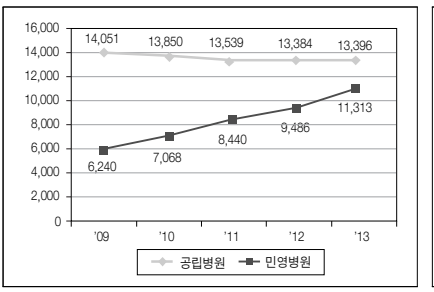

자료: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2014),『2014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 p. 10.

그림 2-16. 중국 공립 · 민영병원 진료횟수 (2009~13년)

(단위: 억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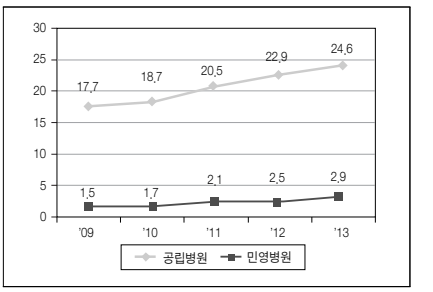

자료: 좌동, p. 122.

4) 법률

2013년 기준 중국의 변호사 수는 약 24만 9천 명, 법률사무소 수는 약 2만 개다.[31] 중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5,473명으로 한국(3,024명)과 일본(3,786명)[32]에 비해 인구 수 대비 변호사 수가 적은 편이나, 변호사 수가 2008년 대비 59% 이상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2013년 기준). 법률사무소 개수 역시 2008년 대비 약 43% 증가하였다.[33]

중국 법률사무소의 90% 이상은 변호사가 100명 미만인 중소형이나,[34] 상위 10개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수가 500명이 넘는 초대형이다. 매년 중국 법률사무소 순위를 발표하는 아시아 리걸 비즈니스(Asia Legal Business)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변호사 수 기준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법률사

31) 国家统计局(2014),『中国统计年鉴2014』, p. 780.

32)「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이대로 좋은가」(2015. 4. 6),『대한변협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511(검색일: 2015. 6. 22).

33) 国家统计局(2014),『中国统计年鉴2014』, p. 780.

34)「我国律师数突破25万 律师业加速两极分化」(2014. 6. 24),『上海法治报』, B01.

무소는 '잉커(盈科)'로 변호사 수가 거의 4천 명에 달한다(표 2-5 참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곳은 '다청(大成)'으로 3,400여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규모가 큰 중인(中银), 궈하오(国浩), 더헝(德恒)도 각각 천 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표 2-5 참고).

최근 중국의 유명 법률사무소는 외국 법률사무소와의 합병을 통해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다청(大成)의 경우 2015년 초 미국 법률사무소 덴톤스(Dentons)와 합병함으로써 변호사 수가 6,200명으로 늘어났다.[35] 이러한 합병 추세에 따라 향후 중국 대표 법률사무소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5. 중국 5대 법률사무소 현황(2014년)

순위	법률사무소명	변호사 수
1	잉커(盈科律师事务所)	3,976
2	다청(大成律师事务所)	3,410
3	중인(中银律师事务所)	1,458
4	궈하오(国浩律师事务所)	1,210
5	더헝(德恒律师事务所)	1,106

주: 2014년 소속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매긴 순위임.
자료: 盈科移民(2014), 「盈科荣登2014年中国规模最大律所(Asia Legal Business」, http://www.ykkh.com.cn/Information/Dynamic/1664.html(검색일: 2015. 6. 8)

5) 교육

중국의 교육시장은 [그림 2-18]에서 알 수 있듯이 3차 산업 내에서 약

35) 「中 다청-美 덴톤스 통합…세계 최대규모 로펌으로」(2015. 2. 4),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20340251(검색일: 2015. 6. 22).

7%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에서도 교육지출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36]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도 교육의 비중은 1%대로 작으나, 그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주민의 소비를 살펴보면 2014년 문화 · 교육 · 여가 · 오락서비스에 지출한 일인당 평균금액은 2,142위안으로 전년대비 7.7% 성장하였으며,[37] 교육지출은 전체 생활소비에서 식품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큰 일상 지출이 되었다.[38]

중국의 교육시장은 크게 학제 교육과 비(非)학제 교육으로 나뉘고 운영주체에 따라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된다. 교육단계는 중국 교육부의 분류방법에 따라 시기별로 취학 전 교육, 의무교육, 중등단계교육, 고등교육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교육분야는 취학 전 교육이다. 교육기관 수와 재학생 수로 살펴본 시장규모에서 2014년 중국 내 유치원 수는 전년대비 1만여 개가 증가한 20만 9천여 개이며, 재학생 수는 4,051만 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의무교육, 중등단계교육(고등학교, 직업교육)에서는 교육기관 수 및 재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등교육의 경우는 교육기관과 재학생 수가 미미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9]

---

36) 2014년 교육 지출은 2조 3,041억 위안으로 전체 재정의 15.2%, 전체 GDP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CEIC Database(검색일: 2015. 6. 16) 참고).

37) 통계상의 한계로 그중 교육에 관한 금액은 2012년까지만 존재한다.

38) CEIC Database(검색일: 2015. 6. 5).

39) 教育部(2015),「2014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jyb_xwfb/gzdt_gzdt/s5987/201507/t20150730_196698.html(검색일: 2015. 7. 30).

그림 2-17. 중국 교육시장의 구성

학력인정여부 / 운영주체	학제	비(非)학제
공립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취학 전 교육
사립	중등단계교육(고등학교, 성인고등학교, 중등직업교육) 고등교육(대학교, 성인고등교육)	성인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8. 중국 교육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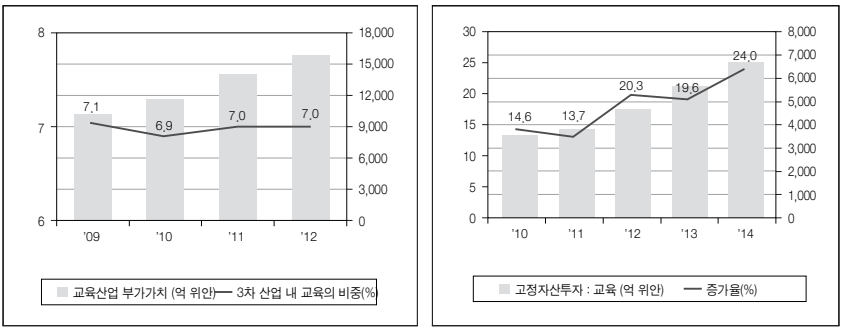

주: 통계상의 한계로 교육산업의 부가가치는 2012년까지만 있음.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6. 16).

한편 비학제 교육분야 중 한국의 사교육과 성격이 유사한 중국의 교육훈련(教育培训) 시장에는 직업기술 훈련기관(职业技术培训)과 민간경영훈련(民办培训)기관이 있다. [그림 2-19]에서 2009~13년간 교육훈련기관의 수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데, 이는 시장이 일정수준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경쟁에서 일부 기관들이 도태된 것과 국가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12년 전체 교육훈련시장의 규모는 9,600억 위안이며 주로 어학, IT, 어린이교육 등 분야이다.[40] 지역별로는 베이징, 랴오닝, 산둥, 장쑤,

40) 北京民教信息科学研究院(2014), 「中国教育培训行业发展报告」, http://www.cnein.ac.cn/

표 2-6. 2009~13년 중국 교육시장 규모(교육기관 수 및 재학생 수 기준)

(단위: 개, 만 명)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취학 전 교육		교육기관 수	138,209	150,420	166,750	181,251	198,553
		재학생 수	2,657.80	2,976.70	3,424.40	3,685.80	3,894.70
의무교육	초등학교	교육기관 수	280,184	257,410	241,249	228,585	213,529
		재학생 수	10,071.50	9,940.70	9,926.40	9,695.90	9,360.50
	중학교	교육기관 수	56,167	54,823	54,063	53,167	52,764
		재학생 수	5,433.60	5,275.90	5,064.20	4,761.20	4,439.10
특수교육		교육기관 수	1,672	1,706	1,767	1,853	1,933
		재학생 수	42.8	42.6	39.9	37.9	36.8
중등단계 교육 (高中阶段教育)	고등학교 (普通高中)	교육기관 수	14,607	14,058	13,688	13,509	13,352
		재학생 수	2,434.30	2,427.30	2,454.80	2,467.20	2,435.90
	성인고등학교 (成人高中)	교육기관 수	753	654	857	696	611
		재학생 수	11.5	11.5	26.5	14.4	11.1
	중등직업교육 (中等职业教育)	교육기관 수	14,401	13,872	13,093	12,663	12300
		재학생 수	2,195.20	2,238.50	2,205.30	2,113.70	1,923.00
고등교육 (高等教育)	대학교 (普通高等教育本专科)	교육기관 수	2,305	2,358	2409	2,442	2491
		재학생 수	2,144.70	2,231.80	2,308.50	2,391.30	2,468.10
	성인고등교육 (成人高等教育本专科)	교육기관 수	384	365	353	348	297
		재학생 수	541.4	536.0	547.5	583.1	626.4
민간경영교육(民办教育)*		교육기관 수	106,500	119,000	130800	139,900	149,000
		재학생 수	3,065.40	3,393.00	3,713.90	3,911.00	4,078.30
교육훈련*	직업기술 훈련기관	교육기관 수	153,100	129,400	129,500	123,800	112,300
	민간경영 훈련기관		19,395	18,341	21,403	20,155	20,100

주: * 민간경영교육은 사립교육, 교육훈련은 사교육으로 해석함.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6. 16); 教育部(2010a), 「2009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1485/201008/xxgk_93763.html(검색일: 2015. 6. 16); 教育部(2011), 「2010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203/xxgk_132634.html(검색일: 2015. 6. 16); 教育部(2012a), 「2011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208/141305.html(검색일: 2015. 6. 16); 教育部(2013), 「2012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308/155798.html(검색일: 2015. 6. 16); 教育部(2014a), 「2013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407/171144.html(검색일: 2015. 6. 16).

html/special/jyhyfzbg/?pc_hash=0ofrHl#004(검색일: 2015. 6. 15).

저장, 허난, 광둥 등 주요 대도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의 훈련기관은 7,000개 이상이다.[41] 그중 영어교육훈련 시장의 발전은 매우 빠르며 이미 포화된 성인영어교육뿐 아니라 중고등학생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도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교육자원의 불균형과 공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가 만족되지 못하다 보니 중고등학생의 교육훈련시장은 매년 30%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림 2-19. 중국 교육훈련기관의 발전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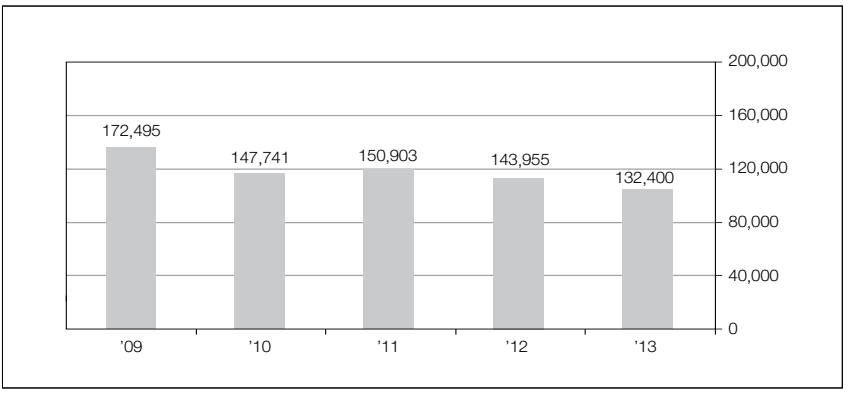

주: 교육훈련기관의 수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教育部(2010a),「2009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1485/201008/xxgk_93763.html(검색일: 2015. 6. 16); 教育部(2011),「2010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203/xxgk_132634.html(검색일: 2015. 6. 16); 教育部(2012a),「2011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208/141305.html(검색일: 2015. 6. 16); 教育部(2013),「2012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308/155798.html(검색일: 2015. 6. 16); 教育部(2014a),「2013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407/171144.html(검색일: 2015. 6. 16).

41) 「2014中国教育市场发展报告」(2014. 12. 4),『中搜资讯』, http://zixun.zhongsou.com/faster/24/05614300836c532bb0de16c6c5c14655.html(검색일: 2015. 6. 5).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민간경영교육(이하 사립교육)[42] 시장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기존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교육과 대치되는 민간경영교육은 국가 외 개인이나 조직이 설립 · 운영하며 비학제 교육뿐 아니라 학제 교육도 포함이 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정부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독점적인 주체였으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수요에 따른 교육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사립교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했다.

이에 1995년 「교육법(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잇따라 1997년에는 「사회역량강화를 위한 학교운영조례(社会力量办学条例)」가 발표되었고 사립학교와 교육훈련기관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존 정책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훈련시장은 그동안 제약되었던 많은 한계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2년 「민영교육촉진법(民办教育促进法)」과 2004년 「민영교육촉진법 실시조례(民办教育促进法实施条例)」를 발표

42) 중국의 민간경영 학교는 한국의 사립학교로 대비되지만 유형과 운영에 있어 더욱 다양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사립학교, 사립교육으로 표기하였다.

△ 중국의 사립학교(民办教育) 유형

영리성 여부			소유와 지배구조				
비영리성	준영리성	영리성	가족제	집단제	주식제	중외합작제	국유민판제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나 개인에 의해 설립		개인, 합작투자로 만들어진 기업에 의해 설립	-	사업단위나 기업에서 설립하고 운영	주식회사와 같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운영	외국의 자본이나 학교와 협력하여 설립	공립학교를 민영화하여 운영

자료: 양한순(2011), 「중국교육의 시장화와 사립학교의 성장」, 『동북아문화연구』, 제26집, p. 429 정리.

표 2-7. 2013년 중국 사립교육의 규모

(단위: 개, 만 명, %)

	전체		사립교육	
	교육기관 수	재학생 수	교육기관 수	재학생 수
취학 전 교육	198,553	3,894.7	133,500(67%)	1,990.3(51%)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265,693	13,799.6	9942(4%)	1,091(8%)
고등학교	13,352	2,435.9	2375(18%)	231.6(10%)
중등직업학교	12,300	1,923	2482(20%)	207.9(11%)
대학교	2,491	2,468.1	718(29%)	557.5(23%)

주: ( ) 안은 전체에서 사립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教育部(2014a),「2013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407/171144.html(검색일: 2015. 6. 16).

하여 사립교육의 발전을 이끄는 법률이 제도화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4년 중국 전역에 약 15만 개의 사립교육기관이 있으며 재학생도 4천만 명을 초과했다.[43] 사립교육기관 중에서도 취학 전 교육영역의 발전이 돋보이는데, 현재 중국의 유치원 중 2/3가 사립이며, 전체의 1/2의 유아들이 사립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반면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정부의 관리 아래 운영되는 만큼 시장의 폐쇄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현재 전국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각각 629만 명, 462만 명으로 전체에서 각각 6.7%, 8.6%를 차지한다.[44] 그러나 공립교육이 기본 교육수요만을 만족시키는 반면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는 선택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학제 교육뿐 아니라 비학제 영역의 사립교육훈련(民办教育培训)

43) 教育部(2015),「2014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jyb_xwfb/gzdt_gzdt/s5987/201507/t20150730_196698.html(검색일: 2015. 7. 30).

44) 2015年我国民办教育行业布局分析(2015. 6. 16), 中国报告大厅, http://www.chinabgao.com/k/mbjyxy/17512.html(검색일: 2015. 6. 15).

분야에서는 유아교육, IT 교육, 외국어, 금융 등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발전해왔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관련 교육기관들 역시 해외로 진출하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교육기관은 신둥팡(新东方), 쉬에따교육(学大教育), 하오웨이라이(好未来) 등 모두 8개이며,[45] 이 중 신둥팡은 2006년 뉴욕 증시거래소에 처음으로 상장된 중국 교육기관이다.[46]

6) 관광[47]

중국에서 관광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 관광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약 10%에 달하며, 관광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1조 5,000억 위안을 넘어섰다.[48] 중국의 관광경쟁력도 아시아에서 일본,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였다.[49] 중국은 2027년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관광국가로 도약할 전망이다.[50]

중국 관광시장의 영업수입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국내 관광이 80.2%로 비중이 가장 높고, 인바운드 관광이 9.5%, 아웃바운드 관광이 10.3%를

---

45) 8개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新东方、学大教育、好未来、正保远程教育、弘成教育、ATA、安博教育、诺亚舟. 2013년 12월 19일 기준.

46) 成刚(2013),「我国民办教育产业战略研究」,『复旦教育论坛』, 第11卷 第2期, p. 69.

47) 관광산업에는 숙박, 운송, 여행사 등이 포함되나 본고에서는 관광업을 크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시장으로 구분(국내시장 제외)하여 서술함.

48)「我国旅游产业对GDP综合贡献超过10%」(2015. 7. 7),『国家信息中心旅游规划研究中心』. http://www.cnta.gov.cn/xxfb/wxzl/201507/t20150707_720396.shtml(검색일: 2015. 7. 24).

49)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5,” http://www3.weforum.org/docs/TT15/WEF_TTCR_Chapter1.1_2015.pdf(검색일: 2015. 7. 24).

50) “A Look at Global Travel Trends”(2014. 3. 26),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4/03/30/travel/a-look-at-global-travel-trends.html?_r=0(검색일: 2015. 7. 25).

차지한다.[51] 그중 중국의 인바운드 관광시장은 1978년 개혁 · 개방 이래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2004년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 수가 1억 명을 넘어섰다. 외래 관광객은 2007년에 1억 3,187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입국자 수가 감소하더니 2010년부터는 재차 증가하면서 2011년에는 사상 최대 수준인 1억 3,542만 명이 중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하락추세로 전환되면서 2014년에는 1억 2,850만 명을 기록했다.

표 2-8. 중국 인바운드 관광 현황 및 관광수입 추이(2002~14년)

(단위: 만 명, 억 달러)

연도	총계			관광수입
		외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	
2002년	9,791	1,344	8,447	203.8
2003년	9,166	1,140	8,026	174.1
2004년	10,904	1,693	9,211	257.4
2005년	12,029	2,026	10,004	293.0
2006년	12,494	2,221	10,273	339.5
2007년	13,187	2,611	10,576	419.2
2008년	13,003	2,433	10,570	408.4
2009년	12,648	2,194	10,454	396.8
2010년	13,376	2,613	10,764	458.1
2011년	13,542	2,711	10,831	484.6
2012년	13,241	2,719	10,521	500.3
2013년	12,908	2,629	10,279	516.6
2014년	12,850	2,636	10,214	569.1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6. 20).

51) Yuanta(2015. 6. 23), 「中国旅游需求看俏」, 『产业初次报告』, p. 5.

한편 이와 달리 관광수입은 2003년을 제외하고는 외래 관광객 수의 추이와 상관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4년 관광수입액은 전년대비 10.1% 증가한 56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표 2-8 참고).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은 1984년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친지 방문을 위한 조치가 실시되면서 시작됐다.[52] 이후 1990년대 아웃바운드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가 지정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한 개방폭이 확대되면서,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53] 특히 2010년 처음으로 출국 관광객 수가 5,000만 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도 출국자 수가 전년대비 19.5% 증가하며 처음으로 1억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그중 약 70%는 홍콩, 대만, 마카오 등 경내 지역으로 향하는 방문객으로 실제 국외 여행자들은 3,000만 명 수준으로 파악된다.[54] 해외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관광지출도 비슷한 추이로 증가하고 있다. [표 2-9]에서 보듯이 2002년 관광 지출액은 1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약 55억 달러로 8년간 5.5배 증가했다. 이후에는 관광지출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2014년에는 16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4년 만에 다시 3배 증가했다.

향후에도 아웃바운드 관광 규모는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2020년 중국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 수가 5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

5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대한 한 · 중 공동 연구」, pp. 145~159.

53)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 증가는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가 △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 △ 지방정부의 육상-항공 교통편 개선노력 △ 개선된 비자정책 등이 이어지면서 지속되고 있음. 중국관광연구원 李创新 박사 인터뷰(2015. 9. 15, 베이징).

54) 중국관광연구원 李创新 박사 인터뷰(2015. 9. 15, 베이징).

하였다.[55]

지역별로 아웃바운드 관광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이 꼽힌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는 1인당 GDP가 1만 5,000달러(2014년 말 기준)를 상회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56] 전체 관광시장에서 아웃바운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도 15%를 넘는다. 그 밖에 장쑤, 저장성 등 동부 연해 일부 지역도 아웃바운드 관광 비중이 5~10%로 비교적 높다. 쓰촨, 후베이, 산둥, 랴오닝 등은 아웃바운드 관광의 비중이 3~5% 수준이며, 그 밖에 신장, 칭하이, 간쑤 등 지역은 아웃바운드 관광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표 2-9.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현황 및 관광지출 추이(2002~14년)

(단위: 만 명, 억 달러)

연도	총계	홍콩, 마카오, 대만	그 외	관광지출
2002년	1,660	-	-	10.4
2003년	2,022	-	-	15.2
2004년	2,885	-	-	19.1
2005년	3,103	-	-	21.8
2006년	3,452	-	-	24.3
2007년	4,095	-	-	29.8
2008년	4,584	-	-	36.2
2009년	4,766	3,478	1,288	43.7
2010년	5,739	4,087	1,651	54.9
2011년	7,025	4,993	2,032	72.6
2012년	8,318	5,909	2,409	102
2013년	9,819	6,846	2,972	128.6
2014년	11,659	-	-	164.9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6. 20); 관광지식정보시스템(TOUR.GO), 국가별관광통계, http://www.tour.go.kr (검색일: 2015. 7. 20).

55) 「习近平:今后5年出境游将超5亿人次进口商品超10万亿美元」(2014. 11. 9), 『人民网』, http://politics.people.com.cn/n/2014/1109/c1024-25999009.html(검색일: 2015. 6. 15).

56) 2014년 말 현재 베이징의 1인당 GDP는 1만 6,279달러, 상하이는 1만 5,841달러, 광저우는 2만 1,041달러임. CEIC Database(검색일: 2015. 7. 20).

그림 2-20. 중국 해외 출국 관광객의 지역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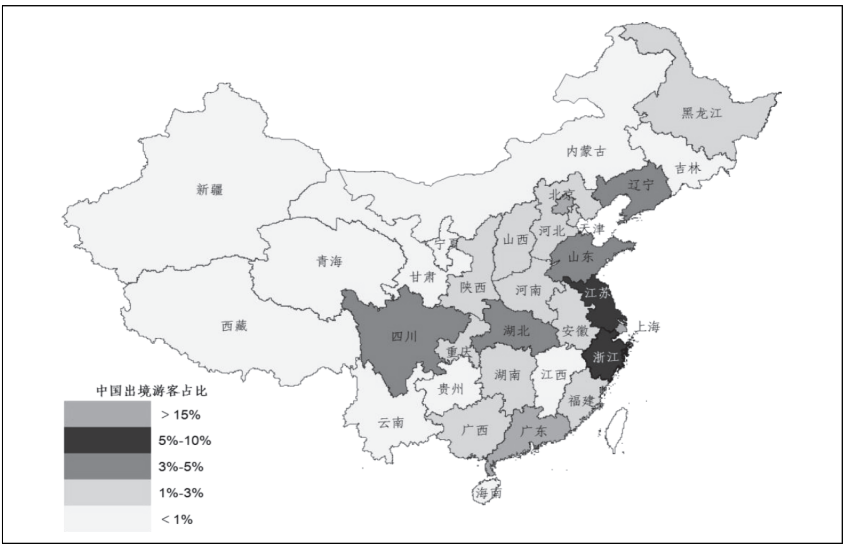

자료: WTCF(2014),「中国公民出境(城市)旅游消费市场调查报告」, http://en.wtcf.travel/download/report201409cn.pdf (검색일: 2015. 7. 20).

2014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해외 국가(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는 한국이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610만 명이며,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수(418만 명)를 합치면 1,000만 명을 넘는다.[57] 이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상반기(1~5월) 방한 중국인 수는 269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가 증가하였다.[58] 5월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7월 이후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재차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그 밖에 중국인들이

57)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board/view.kto?id=423699&isNotice=true&instanceId=294&rnum=0(검색일: 2015. 7. 20).

58)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2015. 7. 15),「今年上半年韩国访华游客人数继续增长」, http://www.cnta.gov.cn/xxfb/hydt/201507/t20150715_742084.shtml(검색일: 2015. 7. 20).

많이 찾는 국가는 태국, 일본,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다.[59]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의 형태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저가에 단체관광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점차적으로 개인화, 고급화되는 추세이다.[60] 변화된 추세에 맞춰서 관광상품도 다양해지고 있

표 2-10. 중국 10대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취급업무	홈페이지
上海春秋国际旅行社(集团)有限公司	국내 · 해외여행 상품, 항공 · 열차 티켓 등	http://www.springtour.com
广州广之旅国际旅行社股份有限公司	국내 · 해외여행 상품, 항공 티켓, 렌트카 등	http://www.gzl.com.cn
中青旅控股股份有限公司(CYTS)	국내 · 해외여행 상품, 항공 티켓, 호텔 예약 등	http://www.cytsonline.com
广东省中国旅行社股份有限公司	국내 · 해외여행 상품, MICE, 호텔, 열차 티켓 등	http://www.gdcts.com
北京众信国际旅行社股份有限公司	국내 · 해외여행 상품, 비자, 크루즈 관광 등	http://www.utschina.com http://www.utourworld.com (아웃바운드)
中国国际旅行社总社有限公司(CITS)	국내 · 해외여행 상품, 항공 티켓, 크루즈 관광, 호텔, 여행용품 등	http://www.cits.cn
北京凯撒国际旅行社有限责任公司	해외 여행상품, 크루즈 관광, 유로패스, 교육관광 등	http://www.caissa.com.cn
中青旅国际会议展览有限公司(CYTS)	MICE 관광	http://www.cytsmice.com
上海携程国际旅行社有限公司(Ctrip)	호텔 예약, 국내 · 해외여행 상품, 항공 · 열차 티켓, 렌트카, 각종 티켓, 단체관광, MICE, 크루즈 관광 등	http://www.ctrip.com
湖北万达新航线国际旅行社有限责任公司	국내 · 해외여행 상품, 비자, 여행 정보 등	http://wdxhx.com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2013), 「百强旅游社」, http://www.cnta.gov.cn/was5/web/search?channelid=211111&searchword=%28INPUTDATE+%3D%272013-01-01%27%29(검색일: 2015. 7. 20); 각 여행사 홈페이지 검색 후 정리(검색일: 2015. 7. 20).

59) 「中国内地公民出境旅游人数2014年首次突破1亿人次」(2014. 12. 3), 『人民网』, http://travel.people.com.cn/n/2014/1203/c41570-26141388.html(검색일: 2015. 7. 20).

60) WTCF(2014), 「中国公民出境(城市)旅游消费市场调查报告」, http://en.wtcf.travel/download/report201409cn.pdf(검색일: 2015. 7. 20).

다. 상위 10대 여행사를 중심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1] 우선 해외여행 상품을 패키지 상품보다 개인별로 원하는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항공 티켓, 호텔 예약 외에도 차량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연을 비롯한 각종 티켓을 구매 대행해 주고 있으며, 그 밖에 크루즈 관광, 교육 관광 패키지 상품 등도 있다.

한편 중국국제여행사(中国国游), 중국청년여행사(中青游), 중국여행사(中国旅行社总社)가 주도하던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62] 특히 최근에는 Ctrip(携程), U-tour(众信旅游) 등 온라인 여행 플랫폼(在线旅游)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여행사들은 호

그림 2-21.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거래액 및 성장률 추이(2012~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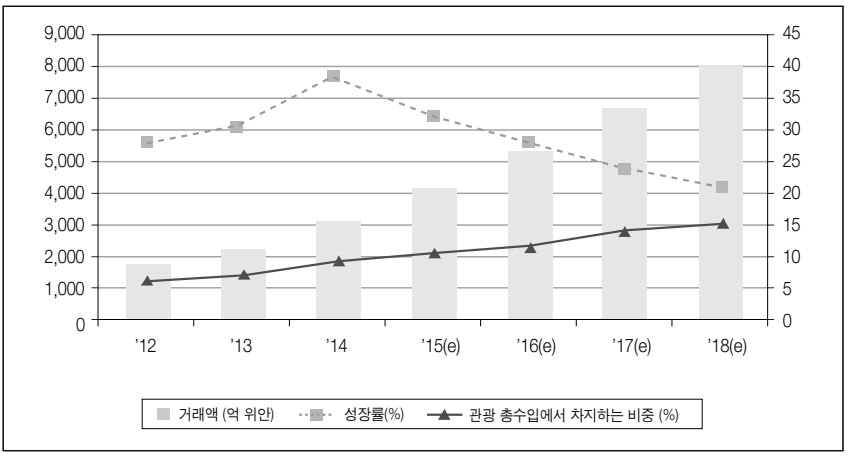

주: 2015~18년은 예측치임.
자료: iResearch(2015), 「中国在线旅游度假行业研究报告」, p. 4.

61) 2014년 말 기준 중국에는 총 2만 7,000여 개의 여행사가 있는데,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음. iResearch(2015), 「中国在线旅游度假行业研究报告」, p. 11.

62) 「上海自贸区 : 出境游对外开放 市场竞争加剧」(2013. 9. 29), 『人民网』, http://finance.people. com.cn/n/2013/0929/c1004-23073875.html(검색일: 2015. 6. 10).

텔과 항공 티켓, 렌트카 등 여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의 거래액은 2014년 3,07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8.9%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관광업 총수입의 9.2%에 해당한다.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세가 지속되어 2018년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거래액이 8,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21 참고).

7) 콘텐츠[63]

가) 공연산업[64]

2014년 중국 공연시장 규모는 434억 3,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중국 공연시장은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위안 이상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공연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티켓 판매가 전년보다 12.1% 감소한 가운데, 오락 연출(-22.8%), 공연파생상품 수입(-6.3%), 관련 시설 및 기타 서비스 수입(-3.5%)이 모두 감소하면서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6.2% 감소했다(그림 2-22, 표 2-11 참고).

공연수입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관광상품과 연계된 공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3년 관광업 발전을 위해 제정된 종합 법률인 여유법이 발표되면서, 저가에 수준 낮은 공연을 상품으로 묶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65]

---

63) 본문에서는 상하이 시험구에서 개방 실험을 진행 중인 공연, 콘솔게임기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봄.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현황은 노수연 외(2014) pp. 32~46를 참고 바람.

64) 중국은 음악, 연극, 무용, 서커스, 마술, 설치예술 등의 현장 문예표현 활동을 공연으로 정의하고 있음.

65) 中国演出行业协会(2015), 「2014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4%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색일: 2015. 12. 1).

그림 2-22. 중국 공연시장 발전 추이(201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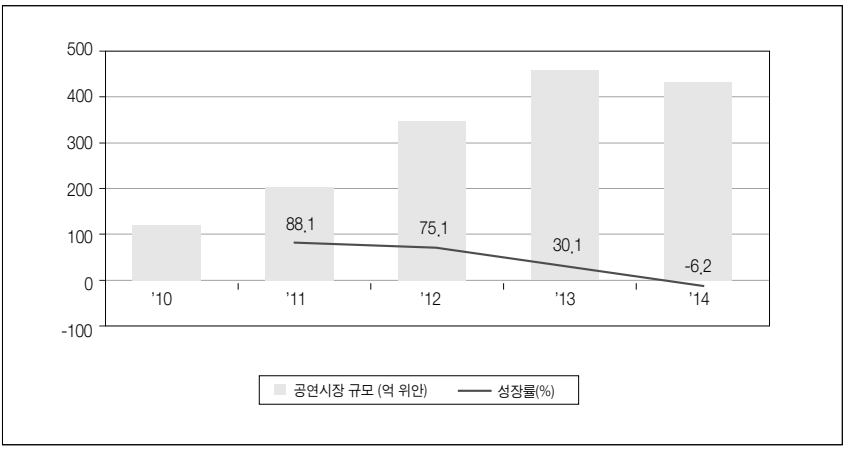

주: 2013년부터는 통계집계방식이 변화함.

자료: 中国演出行业协会(2015), 「2014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4%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색일: 2015. 12. 1); 中国演出行业协会(2014), 「2013年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news/showDetail/65993(검색일: 2015. 12. 1); 中国演出行业协会(2013), 「2012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2%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색일: 2015. 12. 1); 「2010年中国演出市场收入达108亿元」(2011. 1. 21), 『财经网』, http://www.caijing.com.cn/2011-01-21/110624920.html(검색일: 2015. 12. 1) 등 참고.

반면 정부보조금은 전년대비 13.5%가 증가했다. 2014년 처음으로 국가예술기금이 설립되어 무용, 공연 등 분야에 투입됐다(표 2-11 참고).

중국의 공연산업은 크게 음악공연, 춤 · 무용공연, 연극공연, 관광상품 연계공연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콘서트, 페스티벌, 음악회, 연극, 뮤지컬 등으로 구분되며, 아직 공연산업 규모나 발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66]

공연 장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음악공연류의 콘서트다. [표

66) 베이징대학 예술학원 관계자 인터뷰(2015. 9. 14, 베이징), 중국 문화부 산하 국유기업(四海一家) 공연기획 담당자 인터뷰(2015. 9. 14, 베이징), 종합.

표 2-11. 2014년 중국 공연시장 현황

유형별 수입규모	금액(억 위안)	전년대비(%)
전체 공연시장 규모	434.3	-6.2
티켓 판매 수입	148.3	-12.1
농촌 공연 수입	20.5	8.5
오락 공연 수입	72.9	-22.8
공연파생상품 수입	26.3	-6.3
관련 시설 및 기타 서비스 수입	56.3	-3.5
정부보조 수입	109.9	13.5

자료: 中国演出行业协会(2015), 「2014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4%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색일: 2015. 12. 1).

2-12]에서 보듯이 2014년 중국 전역에서 콘서트가 총 1,200여 회 개최되었으며, 티켓 수입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19억 4,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평균 티켓 가격은 453위안으로 전체 공연 장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장르와 규모가 다양화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유료 모델이 새로이 생겨났다.

페스티벌은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로 꼽힌다. 2014년 티켓 판매 수입은 6억 3,000만 위안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페스티벌 전반의 조직능력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질서나 안전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67]

음악회는 정부의 민생정책 추진에 따라 티켓 가격이 낮아지면서 대중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2014년 음악회 전체 관람객 수는 496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티켓 수입은 10억 9,000만 위안을 기록했다(표 2-12 참고).

춤 · 무용 분야는 2014년 6,000회의 크고 작은 공연이 이어졌다. 총 티켓 판매 수입은 8억 7,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이 분야는 특히 젊은 공연 감독

67) 中国演出行业协会(2015), 「2014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4%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색일: 2015. 12. 1).

이 성장하고 있고,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대 무용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편이다(표 2-12 참고).

연극공연 분야에서는 연극 장르의 규모가 가장 크다. 2014년 연극 티켓 판매 수입은 19억 1,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연극시장은 주로 베이징, 상하이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2선 도시의 성장속도가 빠르다. 쓰촨성 청두(成都)는 2014년 연극공연 횟수가 전년대비 8배 증가한 1,549회를 기록했

표 2-12. 2014년 중국 공연산업 장르별 통계

대분류	음악공연류			춤 · 무용 공연류	연극공연류				관광 상품 연계 공연류
소분류	콘서트	페스티벌(音乐节)	음악회	-	연극	뮤지컬	아동극	전통극	-
공연 횟수	1,200회	-	1만 9,000회	6,000회	1만 1,700회	1,500회	1만 8,500회	1만 5,500회	6만 회
관람객수(누적)	-	-	496만 명	311만 명	-	-	-	-	-
티켓판매 수입	19.4억 위안	6.3억 위안	10.9억 위안	8.7억 위안	19.1억 위안	-	7.4억 위안	9.5억 위안	38.4억 위안
티켓가격(평균)	453위안	220위안	137위안	279위안	285위안	213위안	100위안	181위안	-
좌석 점유율(%)	77.6	-	-	77	66	79.7	76	70	-
특징	1. 장르와 규모가 다양화 2. 온라인을 통해 콘서트 유료관람 가능	1. 공연 횟수 증가 2. 허술한 기획수준	정부의 민생정책 추진에 따라 음악회 대중화	1. 젊은 공연 감독 성장 2. 대도시 중심으로 현대무용 발전	1. 베이징, 상하이 외 2, 3급 도시에서 빠르게 발전 2. 온라인 소설, 드라마 각색 작품 인기	1. 해외 유명 작품의 로컬화 2. 국내 창작 뮤지컬 지원	1. 아동극 공연 횟수 대폭 증가 2. 횟수 증가 대비 공연의 질은 오히려 저하	1. 티켓 가격 인하로 인한 관객 점유율 상승 2. 소재나 표현방식 혁신	수준 낮은 공연 품질

자료: 中国演出行业协会(2015), 「2014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 2014%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색일: 2015. 12. 1); 베이징대학 예술학원 관계자 인터뷰(2015. 9. 14, 베이징); CJ E&M 관계자 인터뷰(2015. 9. 18, 상하이)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다.[68] 또한 온라인에서 유행하던 소설과 드라마 등도 무대에 맞게 각색되어 공연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뮤지컬은 아직 크게 대중화되지는 못했다. 뮤지컬은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개 도시에서만 상연되고 있으며, 대체로 해외 유명작품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뮤지컬 공연의 평균 좌석 점유율은 79.7%로 전체 공연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공연이 허가가 아닌 심의를 통해 제약을 받으므로, 전문가들은 중국 연극 및 뮤지컬 소재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평가한다.[69]

그 밖에 아동극이 2014년 공연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통극도 티켓 가격이 내려가면서 관객 점유율이 높아졌다. 아동극과 전통극은 2014년 티켓 수입이 각각 7억 4,000만 위안, 9억 5,000만 위안을 기록했다(표 2-12 참고).

나) 게임산업[70]

중국 게임시장 규모는 2014년 1,14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7.7%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PC에 프로그램 설치 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게임이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모바일 게임, 웹게임 순이다(그림 2-23 참고).

그러나 클라이언트 게임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반면에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급증하는

---

68) 中国演出行业协会(2015), 「2014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 n/uploads/File/2014%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색일: 2015. 12. 1).

69) 베이징대학 예술학원 관계자 인터뷰(2015. 9. 14, 베이징); CJ E&M 관계자 인터뷰(2015. 9. 18, 상하이).

70) 본고에서는 콘솔게임기를 중심으로 살펴봄.

그림 2-23. 중국 게임산업 규모 변화(좌) 및 게임 분야별 시장 점유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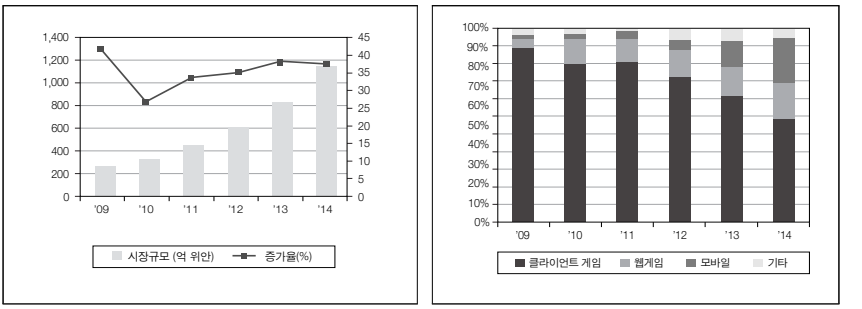

자료: 中国出版工作者协会游戏出版物工作工作委员会(2015), 「2014年中国游戏产业报告」, pp. 3~4.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모바일 게임의 시장 점유율은 24%로 2009년 대비 21%p 이상 증가했다(그림 2-23 참고).

한편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콘솔게임은 2014년 중국 게임 시장에서 불과 0.0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2014년 콘솔게임 시장판매수입은 5,0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43.8%가 감소하였다.[71] 이는 2014년 신작 타이틀 출시가 2편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에는 판타지 무협(仙侠) 장르에서 다수의 신작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 재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72]

한편 미국, 유럽과 달리 중국에서 콘솔게임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오랜 기간 무료로 게임을 이용하는 사용 습관이 형성되었고, 2000년 중국정부가 콘솔게임기 생산, 판매,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73] 일부 병행수입업자를 통해 수입이 되긴 하였으나 정식수입은 상당기간 이뤄지지 못했다.

71) 中国出版工作者协会游戏出版物工作工作委员会(2015), 「2014年中国游戏产业报告」, p. 87.

72) 中国出版工作者协会游戏出版物工作工作委员会(2015), 「2014年中国游戏产业报告」, p. 88.

73) 「禁令解除 : 国内主机游戏就能复活?」(2015. 7. 29), 『腾讯科技』, http://tech.qq.com/a/20150729/019050.htm(검색일: 2015. 10. 11).

2. 중국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의 서비스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경제에서의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중속성장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기존의 수출, 투자 중심의 경제구조가 투자와 소비 중심의 구조로 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중국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 서비스업이 고용확대와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는 12 · 5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육성정책을 시행해 왔다. 여기에서는 12 · 5 기간에 추진된 서비스업 주요 육성정책을 서비스업 전반과 본 연구의 대상인 6대 업종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가. 전체 서비스업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2년 12차 5개년 시기 서비스업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서비스업 발전 12 · 5 규획(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을 발표하였다. 이 규획에서는 2015년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보다 4%p 확대될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재 성장추세로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74]

12 · 5 시기에 발표된 서비스업 관련 정책은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 많고 생산형 서비스업에 특화한 정책이 발표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국무원, 과학기술부, 공업신식화부가 각각 고기술서비스업이나 서비스업의 과학기술 발전,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을 주제로 한 정책을 발표

74) 「十三五"服务业占比有望达55% 重点发展生活性服业」(2015. 10. 29), 『21世纪经济报道』, http://www.askci.com/news/finance/2015/10/29/930410fe5.shtml(검색일: 2015. 11. 11).

하고 R&D 설계, 전자상거래, 디지털,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의 발전을 강조했다. 또한 국무원은 2014년 중국이 제조대국(製造大國)에서 제조강국(製造强國)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발전이 필수라고 강조

표 2-13. 12 · 5 기간 서비스업 주요 육성정책

발표시기	발표부처	발표 문건명	주요 내용
2011. 12	국무원	고기술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지도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高技术服务业的指导意见)	- 12 · 5 기간 고기술서비스업 영업수입 연평균 18% 성장 목표 - R&D 설계, 지식재산권, 검역검사, 과학기술 상업화, 정보기술, 디지털콘텐츠, 전자상거래, 바이오기술 등 8대 서비스 분야 육성
2012. 1	과학기술부	현대서비스업의 과학기술 발전 12 · 5 전문계획 (科学技术部关于印发现代服务业科技发展十二五专项规划的通知)	- 전자상거래 기술발전, 물류종합서비스 능력향상, 시스템 아웃소싱 서비스모델 혁신강화 등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 - 문화, 의료, 생활, 교육, 복지와 디지털이 접목된 신형 서비스업 육성 - R&D 설계, 과학기술성과의 상업화, 창업, 금융, 과학기술 컨설팅 발전
2012. 4	공업신식화부	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업 '12 · 5' 발전규획 (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十二五"发展规划)	- 기초소프트웨어, 공업용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정보안정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정보시스템 집대성서비스, 정보기술 컨설팅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가공처리, 서비스 아웃소싱, 신형정보기술서비스, IC 설계 등 10대 영역 중점 육성 - 앵커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시범기지 건설, 클라우드 컴퓨팅 등 8대 주요 프로젝트 시행
2012. 12	국무원	서비스업 발전 '12 · 5' 규획 (国务院关于印发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的通知)	- 2015년 서비스업의 GDP 비중과 고용비중을 2010년보다 4%p 향상 - 생산형, 생활형 서비스업, 농촌서비스업, 해양서비스업 발전 - 서비스무역 발전, 외자유치, 해외진출전략 실시,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협력 심화 등 서비스업 개방 확대
2014. 7	국무원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촉진 지도의견 (国务院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业结构调整升级的指导意见)	- R&D 설계, 제3자 물류, 융자리스, 정보기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검역검사인증,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컨설팅, 서비스아웃소싱, 애프터서비스, 인적자원서비스 및 브랜드구축 등을 집중 육성 - 개방확대, 세제혜택, 금융서비스, 토지정책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인재육성, 통계제도 완비 등으로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 지원
2014. 10	국무원	과학기술서비스업 발전가속화에 관한 의견 (国务院关于加快科技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 R&D, 기술이전, 검사검역인증, 창업인큐베이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컨설팅, 과학기술금융, 과학기술보급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종합과학기술서비스 중점 발전

표 2-13. 계속

발표시기	발표부처	발표 문건명	주요 내용
2014. 12	인력자원 · 사회보장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의견 (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关于加快发展人力资源服务业的意见)	- 근로자 관리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서비스로, 인력자원 모집, 직업지도, 사회보장 업무대행, 교육, 평가, 파견, 관리 등을 포함 - 인력자원서비스기구발전, 인력자원서비스혁신능력 향상, 인력자원서비스 브랜드 육성, 인력자원서비스업 집적발전, 인력풀 구축 등
2015. 5	재정부	중앙재정의 서비스업 발전전문자금 관리방법 (财政部关于印发《中央财政服务业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的通知)	- 현대적인 상품 유통의 발전을 지원하고 서비스업의 공공서비스시스템 건설을 촉진하는 데 활용 - 전자상거래, 물류, 과학기술, 환경보호, 정보, 광고, 지식재산권, 양로, 건강, 농산품 유통네트워크 등 분야 포함

자료: 国务院办公厅(2011),「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高技术服务业的指导意见」, http://www.gov.cn/zwgk/2011-12/16/content_2021875.htm(검색일: 2015. 11. 10); 科学技术部(2012),「关于印发现代服务业科技发展十二五专项规划的通知」, http://www.most.gov.cn/fggw/zfwj/zfwj2012/201202/t20120222_92619.htm(검색일: 2015. 11. 10); 工业和信息化部(2012), 《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十二五"发展规划》印发,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1293907/n11368223/14542600.html(검색일: 2015. 11. 10); 国务院(2012c),「国务院关于印发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的通知」, http://www.gov.cn/zwgk/2012-12/12/content_2288778.htm(검색일: 2015. 11. 10); 国务院(2014d),「国务院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业结构调整升级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8/06/content_8955.htm(검색일: 2015. 11. 10); 国务院(2014c),「国务院关于加快科技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4/content_2775509.htm(검색일: 2015. 11. 10);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2014),「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关于加快发展人力资源服务业的意见」, http://www.mohrss.gov.cn/gkml/xxgk/201501/t20150121_149768.htm(검색일: 2015. 11. 10); 财政部(2015),「中央财政服务业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 http://bs.zhenghe.cn/xwzx/zxDetail.aspx?id=46964&MasterPageFile=UI(검색일: 2015. 11. 10).

하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할 생산형 서비스업 육성에 특화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다.

나. 부문별 육성정책

1) 금융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발표된 40건의 행정법규와 10,131건의 부문규장을 분석한 결과, 12 · 5 기간의 금융정책 방향은 주로 금융제도의 규범화, 다양한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금융업 영역 및 참여자의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표 2-14. 12 · 5 기간 금융서비스 주요 육성정책

세부분야	발표시기	발표부처	발표 문건명
총괄 및 제도정비	2014. 11	국무원	金融机构反洗钱监督管理办法(试行)
	2014. 11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关于严格规范非保险金融产品销售的通知
	2011. 1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中国人民银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关于印发《金融人才发展中长期规划(2010-2020年)》的通知
	2011. 9	중국인민은행	中国人民银行关于印发《中国金融业信息化"十二五"发展规划》的通知
	2012. 1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国银监会关于整治银行业金融机构不规范经营的通知
	2012. 3	상무부, 중국수출입은행	商务部、中国进出口银行关于"十二五"期间金融支持服务贸易发展的指导意见
	2012. 9	국무원	金融业发展和改革"十二五"规划
	2014. 4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中国人民银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等关于规范金融机构同业业务的通知
	2013. 8	국무원	国务院关于同意建立金融监管协调部际联席会议制度的批复
	2013. 7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金融支持经济结构调整和转型升级的指导意见
	2011.11	국무원	国务院关于清理整顿各类交易场所切实防范金融风险的决定
농업, 농촌, 농민	2014. 12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延续并完善支持农村金融发展有关税收政策的通知
	2014. 12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国银监会办公厅关于印发加强农村商业银行三农金融服务机制建设监管指引的通知
	2012. 11	국무원	农业保险条例
	2012. 6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国银监会办公厅关于农村中小金融机构实施富民惠农金融创新工程的指导意见
	2012. 7	농업부, 국가개발은행	农业部、国家开发银行股份有限公司关于推进开发性金融支持现代农业示范区建设的意见
	2014. 8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办公厅关于推进基础金融服务"村村通"的指导意见
	2014. 4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金融服务"三农"发展的若干意见
	2014. 3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中国人民银行、财政部、中国银监会等关于全面做好扶贫开发金融服务工作的指导意见
신형금융 및 업무영역 확대	2015. 7	중국인민은행, 공업신식화부, 공안부 등	中国人民银行、工业和信息化部、公安部等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
	2011. 10	과기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등	科技部、财政部、中国人民银行等关于促进科技和金融结合加快实施自主创新战略的若干意见
	2014. 12	국가외환관리국	国家外汇管理局关于调整金融机构进入银行间外汇市场有关管理政策的通知
	2014. 11	중국인민은행	中国人民银行金融市场司关于做好部分合格投资者进入银行间债券市场有关工作的通知

표 2-14. 계속

세부분야	발표시기	발표부처	발표 문건명
신형금융 및 업무영역 확대	2014. 11	중국인민은행	中国人民银行关于下调金融机构人民币贷款及存款基准利率并进一步推进利率市场化改革的通知
	2014. 10	중국인민은행	中国人民银行金融市场司关于非金融机构合格投资人进入银行间债券市场有关事项的通知
	2015. 9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金融租赁行业健康发展的指导意见
	2014. 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中国人民银行办公厅关于组织开展移动电子商务金融科技服务创新试点工作的通知
중소, 영세기업 지원	2015. 6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国银监会关于进一步落实小微企业金融服务监管政策的通知
	2011. 5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国银监会关于支持商业银行进一步改进小企业金融服务的通知
	2011. 10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关于支持商业银行进一步改进小型微型企业金融服务的补充通知
	2013. 8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关于进一步做好小微企业金融服务工作的指导意见
	2014. 1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金融机构与小型微型企业签订借款合同免征印花税的通知
	2013. 8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金融支持小微企业发展的实施意见
산업지원	2012. 2	중국인민은행, 발전개혁위원회, 관광국 등	中国人民银行、发展改革委、旅游局等关于金融支持旅游业加快发展的若干意见
	2014. 3	문화부,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文化部、中国人民银行、财政部关于深入推进文化金融合作的意见
사회복지 (보험)	2014. 10	국무원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商业健康保险的若干意见
	2014. 8	국무원	国务院关于加快发展现代保险服务业的若干意见
	2011. 6	국무원	国务院关于开展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试点的指导意见
민간, 외국자본 참여	2015	중국인민은행	中国人民银行办公厅关于境外中央银行类机构在境内银行业金融机构开立人民币银行结算账户有关事项的通知
	2013. 5	국무원	中华人民共和国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2013修订)
	2012. 12	국무원	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条例(2012第二次修订)
	2014. 11	국무원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2014年第2次修订)
	2015. 6	국무원	国务院办公厅转发银监会关于促进民营银行发展指导意见的通知
	2015. 5	국무원	国务院办公厅转发财政部发展改革委人民银行关于在公共服务领域推广政府和社会资本合作模式指导意见的通知
개발금융 기관	2015. 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개발은행	国家发展改革委、国家开发银行关于推进开发性金融支持国家级新区健康发展有关工作的通知
	2015. 4	민정부, 국가개발은행	民政部、国家开发银行关于开发性金融支持社会养老服务体系建设的实施意见

주: 北大法宝(http://www.pkulaw.cn)에서 금융(金融), 은행(银行), 보험(保险)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저자 정리.
자료: 北大法宝, http://www.pkulaw.cn(검색일: 2015. 11. 11).

첫째, 금융제도의 규범화와 리스크 통제를 위해 관리감독제도를 강화하였다. 인민은행장을 필두로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수장이 참여하는 금융감독관리협조연석회의가 2013년 조직되어 공동으로 화폐정책, 금융리스크통제, 금융상품혁신, 금융정보공유 등에서 협조한다. 또한 2014년 「금융기관의 돈세탁척결관리방법」을 시범운영하고, 비(非)보험 금융상품 판매나 은행의 비(非)규범화된 경영활동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둘째, 문화산업, 관광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을 부처별로 발표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도 매년 공포했다. 국무원은 농업, 농민, 농촌을 일컫는 '삼농(三農)' 발전을 위해 금융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터넷 금융, 전자상거래, 금융리스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 육성을 촉진하고, 민간자본의 금융업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외자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일부 완화하여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와 「외자은행관리조례」를 수정하고, 자동차강제책임보험제도를 수정하여 외국계 보험사의 참여를 허용했다.

2) 의료

의료서비스 육성정책은 △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 민간자본의 투자 장려 △ 재활 · 양로 서비스 확충 △ 건강보험제도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농촌, 신도시, 도시 변두리 등은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중국정부는 이들 지역주민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동식 의료서비스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노력

표 2-15. 12 · 5 기간 의료서비스 주요 육성정책

서비스 분야	발표 시기	발표 문건명	주요 내용
의료	2012년 10월	「보건사업발전 12 · 5 규획」	- 중증질환 예방시스템, 응급의료시스템 등 공공보건서비스시스템 구축 - 민간의료기관 발전 장려, 농촌 · 변두리 지역 등에 의료서비스 확충 - 의료보험 지급기준 확대, 의료보험 가입률 확대 등을 통해 의료보험제도 강화 - 약품안전 수준, 전문약사 배양 등을 통해 약품 공급보장 시스템 구축
	2012년 12월	「서비스업발전 12 · 5 규획」	(의료 분야) - 공립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공동발전 · 다원화 추진 -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감독관리 · 기술지도 강화 - 간호, 건강검진 등의 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 재활의료서비스 강화 - 기본의료보험 강화, 상업의료보험 확대로 다층적 의료보장시스템 구축
	2013년 9월	「건강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 의료기관 다원화: 공립의료기관의 기본의료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 기업 · 자선기구 · 상업보험기구 등의 의료서비스 투자 장려, 중 · 외 합자 · 합작 의료기관 설립 요건 완화, 민영의료기관 · 공립의료기관 평등 대우 추진 - 양로서비스 강화: 의료기관 · 양로기구 협력 강화, 2급 이상 병원과 노인질환병원 · 양로원 · 재활기구 간 진료 협력 강화 - 건강보험 발전: 상업건강보험 확대, 다양한 의료보험 서비스 발전 촉진
	2015년 6월	「사회자본(민간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강화에 관한 정책조치」	- 의료기관 설립 심사 규범화, 공립병원 수량 통제 등을 통해 시장 진입장벽 완화 - 투융자 채널 확대, 대형 의료설비 공유 촉진, 의사의 타 병원 의료서비스 제공 허용 -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보험 적용 확대
	2015년 11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 · 5 규획에 관한 건의」	- 의약보건시스템 개혁, 의약분업 추진 - 공립병원 개혁, 원격의료 발전, 가정의학과 의사 확대, 전자의료기록시스템 확충 - 민간자본의 건강서비스업 참여 확대, 비영리성 민영병원 · 공립병원 평등 대우 추진 - 중병보험제도 마련, 도농주민 의료보험 정책 통합, 의료보험 확충 및 상업의료보험 발전 장려, 생육보험 · 기본의료보험 통합

자료: 国务院(2012b), 「国务院关于印发卫生事业发展"十二五"规划的通知」, http://www.gov.cn/zwgk/2012-10/19/content_2246908.htm(검색일: 2015. 11. 5); 国务院(2012c), 「国务院关于印发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的通知」, http://www.gov.cn/zwgk/2012-12/12/content_2288778.htm(검색일: 2015. 11. 10); 国务院(2013b), 「国务院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3-10/18/content_6067.htm(검색일: 2015. 11. 5); 国务院(2015b),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若干政策措施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6/15/content_9845.htm(검색일: 2015. 11. 5); 中国共产党(2015),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http://cpc.people.com.cn/n/2015/1103/c399243-27772351.html (검색일: 2015. 11. 5).

을 하고 있다.[75] 이와 동시에 늘어나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 민간자본의 의료서비스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민영 의료기관이 좀더 쉽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민영 의료기관 설립 심사를 규범화하고, 건강검진기계와 같은 고가의 대형 의료설비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76]

또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2급 이상 병원과 노인질환병원 · 양로원 · 재활기구 간 진료 협력을 강화하고 재활 · 양로 관련 의료서비스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가입률을 늘리고 상업의료보험을 발전시키고 있다.[77]

3) 교육

12 · 5 기간 내 교육서비스 발전정책의 주요 골자는 △ 교육시스템 개선 △ 교육제도 혁신 △ 교육기회 확대 △ 인재 배양 △ 교육 대외개방 전략 실시 등으로 국내 제도개선 및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방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국제교류 및 합작을 강화시키고, 중국 교육의 국제 영향력 및 대외개방 능력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정보화와 현대 직업교육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교육정보화 정책에서는 단기적으로 교육현대화 목표에 상응하는 교육정보화

---

75) 国务院(2012b),「国务院关于印发卫生事业发展“十二五”规划的通知」, http://www.gov.cn/zwgk/2012-10/19/content_2246908.htm(검색일: 2015. 11. 5).

76) 国务院(2015b),「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若干政策措施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6/15/content_9845.htm(검색일: 2015. 11. 5).

77) 国务院(2012b),「国务院关于印发卫生事业发展“十二五”规划的通知」, http://www.gov.cn/zwgk/2012-10/19/content_2246908.htm(검색일: 2015. 11. 5); 国务院(2013b),「国务院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3-10/18/content_6067.htm(검색일: 2015. 11. 5).

표 2-16. 12 · 5 기간 교육서비스 주요 육성정책

서비스 분야	발표 시기	발표 문건명	주요 내용
교육[1]	2010년 7월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 규획(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교육 현대화, 학습 현대화, 인력자원 강국진입이 목적 (총 22장 중 제16장 교육 개방 확대) - 국제교류 및 합작 강화 - 양질의 교육자원 도입 - 교류 합작 수준 제고
	2012년 6월	「국가발전교육사업발전12 · 5규획(国家教育事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	(교육 대외개방 전략 실시) 1) 교육 교류 및 협력 확대 - 쌍방/다자간 지역 교육교류 협력 추진 - 양질의 교육자원 적극적 도입 2) 중국 교육의 국제 영향력 제고 - 유학생 유치 계획 실시 - 국제 학술교류 적극적 참여 - 문화의 "대외 수출" 프로젝트 적극 참여 3) 서비스 대외개방 능력 제고 - 대외무역, 대외투자, 대외원조 강화 - 국제문제 연구 강화 - 변경(边境)학교 건설 강화 - 교육 국제원조 적극 개시
	2012년 3월	「교육정보화 10년 발전규획(2011~2020)教育信息化十年发展规划(2011-2020年)」	- 1단계('11~'15): 교육 정보 인프라 전면 구축, 교육 정보화 자원 이용 실현 - 2단계('15~'20): 교육정보화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 정보 기술과 교육의 전면적 · 심층적 융합 실현
	2014년 6월	「현대 직업교육 발전가속화 관련 결정(关于加快发展现代职业教育的决定)」	- 2020년까지 산업 · 교육융합(产教深度融合),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의 연결,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간 소통 강화 목표 - 현대 직업교육 체계 조성 가속화 - 직업교육의 학교설립 활성화 - 인재 배양 제고
	2014년 6월	「현대 직업교육 시스템 건설 규획(现代职业教育体系建设规划(2014-2020年))」	- 1단계('15): 현대 직업교육 체계 프레임 형성 - 2단계('16~'20): 중국 특색의 현대 직업교육 체계 구축

주: 1) 교육서비스 정책의 경우, 산업육성 측면보다는 교육사업 내부의 개혁 성향이 강하여 문건 중 개방분야를 중점으로 정리함.

자료: 教育部(2010b),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838/201008/93704.html(검색일: 2015. 11. 3); 教育部(2012b), 「国家教育事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0/201207/139702.html(검색일: 2015. 11. 3); 教育部(2012c), 「教育信息化十年发展规划(2011-2020年)」, http://www.edu.cn/html/info/10plan/ghfb.shtml(검색일: 2015. 11. 3); 教育部(2014b), 「现代职业教育体系建设规划(2014-2020年)」,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0/201406/170737.html(검색일: 2015. 11. 3); 国务院(2014a), 「关于加快发展现代职业教育的决定」,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1778/201406/170691.html(검색일: 2015. 11. 3).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지역과 학교에 광대역 인터넷 보급을 추진 중이다.[78] 또한 규획 기간 내 기업의 인력난 해결과 고급 기술인력 배양을 위해 직업교육을 중시해왔다. 최근에는 현대 직업교육 발전과 현대 직업교육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산업과 교육을 융합, 중등직업과 고등 직업교육의 연계,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간의 소통을 강화시키고 있다.[79]

4) 법률, 관광, 콘텐츠

법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크게 △ 법률 인력 양성 △ 법률서비스기구 능력 강화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늘어나는 법률서비스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인력 수를 확대하고 법률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법에 능통한 법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법률 분야 해외 유학을 장려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대형 법률사무소 발전을 장려하고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서비스기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80]

관광업의 경우, 12 · 5 기간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규모 확대와 더불어 시장화를 통한 자원 효율성 제고, 발전 모델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81] 구체적으로는 대형 관광업체

---

78) 教育部(2012c),「教育信息化十年发展规划(2011-2020年)」, http://www.edu.cn/html/info/10 plan/ghfb.shtml(검색일: 2015. 11. 3).

79) 国务院(2014a), 「关于加快发展现代职业教育的决定」,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1778/201406/170691.html(검색일: 2015. 11. 3).

80) 国务院(2012c),「国务院关于印发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的通知」, http://www.gov.cn/zwgk/2012-12/12/content_2288778.htm(검색일: 2015. 11. 10); 国务院(2012a),「教育部 中央政法委员会关于实施卓越法律人才教育培养计划的若干意见」, http://education.news.cn/2012-04/25/c_123029528.htm(검색일: 2015. 11. 5).

81) 国家旅游局(2010),「中国旅游业“十二五”发展规划纲要」, http://www.chinaho telba.org/uploads/%E4%B8%AD%E5%9B%BD%E6%97%85%E6%B8%B8%E4%B8%9A%E5%8D%81%E4%B

표 2-17. 12 · 5 기간 법률, 관광, 콘텐츠 서비스 주요 육성정책

서비스 분야	발표 시기	발표 문건명	주요 내용
법률	2012년 4월	「법률인재 교육 · 배양 계획」	- 법률실무를 배양하고 다양한 법률 관련 직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교육 기지 80개 조성 - 국제적인 시각,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국제법률사무에 참여하여 중국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국제법률 인재 양성 기지 20개 조성 - 국가 유학기금을 법학 분야 유학생 및 법학교수의 해외 교류 · 연구활동에 중점적으로 지원
	2012년 12월	「서비스업발전 12 · 5 규획」	(법률 분야) - 법률인력 양성: 법률 인력 수 확대 및 소양 제고, 국제법률에 정통한 변호사 육성 - 법률 서비스 영역 확대 및 수준 제고, 경제 · 사회발전 각 영역에 법률서비스 참여 확대, 서비스 규범화 - 법률서비스기구의 전문화 · 분업 촉진, 대형 법률사무소 육성 - 법률서비스 개방 확대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서비스기구 조성
관광	2010년 12월	「중국 관광업 "12.5" 발전 규획강요(中国旅游业"十二五"发展规划纲要)」	- 2020년까지 중국 관광업, 세계 선진수준으로 도약 목표 - 관광대기업 육성,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관광 시스템 개혁 -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 IT, 금융, 문화산업과의 융합 추진 (아웃바운드 관광) - 해외관광객 권익보호 강화, 출국절차 간소화, 전문적인 통계수집 및 시장 감독 강화 등
콘텐츠	2012년 2월	「'12 · 5' 기간 문화산업 배증계획(文化部"十二五"时期文化产业倍增计划)」	(주요 임무) 1. 문화콘텐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모델 전환 3. 문화콘텐츠산업 입지 최적화 4. 문화콘텐츠산업 창작지원 5. 문화콘텐츠소비 확대 6. 문화콘텐츠산업의 과학기술적 혁신 추진 7. 중대 프로젝트 전략 실시 8. 건전한 투융자 시스템 구축 9. 문화콘텐츠산업 인재 육성 10.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중점 산업) 1. 공연예술 2. 엔터테인먼트 3. 애니메이션 4. 게임 5. 문화여행 6. 예술품 7. 공예미술 8. 문화전시 9. 디자인 10. 인터넷 문화 11. 디지털 문화서비스
	2012년 2월	「12 · 5 기간 문화개혁 발전규획("十二五"时期文化改革发展规划)」	1. 재정지출에서 문화지출 비율 제고 2. 문화콘텐츠 산업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속도 20% 이상, 2010년 대비 2배 이상 3. 10개 정도의 국가급 문화콘텐츠 산업 시범단지 건설 4. 100개 정도의 특색문화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육성 5. 30개 정도의 상장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6. 3~5개 정도의 영향력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전시회 구축 7. 국제 국가급 해외 문화행사 30건 이상 등

자료: 国务院(2012c), 「国务院关于印发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的通知」, http://www.gov.cn/zwgk/2012-12/12/content_2288778.htm(검색일: 2015. 11. 10); 国务院(2012a), 「教育部 中央政法委员会关于实施卓越法律人才教育培养计划的若干意见」, http://education.news.cn/2012-04/25/c_123029528.htm(검색일: 2015. 11. 5); 国家旅游局(2010), 「中国旅游业"十二五"发展规划纲要」, http://www.chinahotelba.org/uploads/%E4%B8%AD%E5%9B%BD%E6%97%85%E6%B8%B8%E4%B8%9A%E5%8D%81%E4%BA%8C%E4%BA%94%E5%8F%91%E5%B1%95%E8%A7%84%E5%88%92%E7%BA%B2%E8%A6%81.pdf(검색일: 2015. 11. 6)에서 정리; 노수연 외(2014),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43~44. 재인용: 文化部(2012b), 「"十二五"时期文化产业倍增计划」, http://59.252.212.6/auto255/201203/t20120301_28193.html(검색일: 2014. 5. 24); 文化部(2012a), 「国家"十二五"时期文化改革发展规划」, http://59.252.212.6/auto255/201205/t20120510_28451.html(검색일: 2014. 5. 24).

A%8C%E4%BA%94%E5%8F%91%E5%B1%95%E8%A7%84%E5%88%92%E7%BA%B2%E8%A6%81.pdf(검색일: 2015. 11. 6).

육성과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관광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아울러 IT, 금융 및 문화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한다.

콘텐츠 분야는 12 · 5 기간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우선 「'12 · 5' 기간 문화산업 배증계획」에서는 공연예술 분야를 비롯하여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여행, 예술품 등 11개 분야가 포함되었다. 주요 임무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도기업 육성, 발전모델 전환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내용도 새로이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12 · 5 기간 문화개혁 발전규획」에서는 콘텐츠 산업이 중국경제의 주요 핵심 산업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재정지출에서 문화에 대한 지출 비중을 높이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도 연평균 20% 이상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제3장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과 개방전략

1. 전체 개방수준 평가
2.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개방 현황
3. 서비스시장 개방전략

1. 전체 개방수준 평가

중국은 2001년 WTO 가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해 왔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여전히 개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OECD 회원국 및 주요 국가[82]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비교결과, 중국은 비교대상인 18개 업종에서 모두 42개국의 평균값보다 높은 값을 기록해 개방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8개 업종 중에서도 특히 택배(courier)와 방송의 STRI가 각각 0.868과 0.784로 42개국 중에서도 가장 규제가 심한 분야로 분석된다(표 3-1 참고).

한 · 중 양국의 STRI 비교에서도 18개 업종 모두 중국의 규제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택배와 함께 방송, 보험, 시중은행, 통신, 영화 분야에서 양국의 STRI 격차가 0.3 내외에 달해 본 연구의 대상인 금융과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간 개방도에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표 3-1 참고).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도에 대한 중국의 자체적인 분석도 이루어졌다. 裴长洪 等(2015)은 중국이 체결한 10개 FTA 협정문에서 서비스무역 개방양허를 분석한 결과, 개방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 분야는 환경서비스이며, 시청각, 컴퓨터, 전문, 관광, 보험, 건축, 유통, 항공운수, 은행, 해운, 전신, 엔터테인먼트, 교육, 우정(郵政), 건강, 사회서비스 순으로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3]

---

82) OECD가 발표하는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회원국 34개국과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8개국을 조사대상으로 함.

83) 裴长洪 等(2015),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试验思路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 3~4.

이 중 본 연구대상과 관련 있는 비즈니스, 교육, 금융, 관광의 경우에는 부분개방 위주로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엔터테인먼트와 건강 분야는 비개방 분야로 구분된다.

표 3-1.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국가별 비교(2015년)

분야			중국	한국	OECD 회원국			42개국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사업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법률	0.524	0.358	0.102	0.525	0.276	0.059	0.731	0.304
		회계	0.415	0.239	0.115	1.000	0.286	0.089	1.000	0.291
		건축(Architecture)	0.247	0.243	0.066	0.470	0.209	0.066	0.470	0.217
		엔지니어링	0.274	0.070	0.065	0.463	0.187	0.065	0.463	0.194
	컴퓨터, 관련 서비스	컴퓨터	0.293	0.102	0.079	0.264	0.151	0.058	0.321	0.164
커뮤니케이션	택배(Courier)		0.868	0.338	0.070	0.481	0.216	0.070	0.868	0.255
	통신		0.507	0.190	0.052	0.370	0.171	0.052	0.607	0.209
	시청각	영화(motion picture)	0.429	0.138	0.060	0.296	0.144	0.060	0.716	0.172
		방송	0.784	0.342	0.070	0.437	0.240	0.070	0.784	0.278
		녹음(Sound recording)	0.308	0.153	0.049	0.287	0.138	0.049	0.367	0.152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건축물(일반)건설(Construction)		0.274	0.136	0.054	0.324	0.147	0.054	0.344	0.161
유통(Distribution)			0.344	0.058	0.033	0.247	0.106	0.033	0.421	0.128
금융	보험, 보험관련	보험	0.496	0.075	0.047	0.283	0.156	0.047	0.635	0.198
	은행, 기타금융	시중은행 (Commercial banking)	0.478	0.137	0.075	0.366	0.148	0.075	0.551	0.187
운송	해상운송		0.387	0.288	0.070	0.386	0.222	0.070	0.443	0.237
	항공운송		0.605	0.523	0.258	0.581	0.401	0.121	0.668	0.428
	철도운송	철도화물운송	0.400	0.149	0.057	1.000	0.177	0.057	1.000	0.220
	도로운송	도로화물운송	0.370	0.106	0.081	0.250	0.143	0.049	0.370	0.154

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많음을 의미.
자료: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TRI(검색일: 2015. 10. 26).

표 3-2. 중국 서비스업 부문별 개방비율

(단위: %)

	양허개방비율	완전개방비율	부분개방비율	비(非)개방비율
비즈니스	60.9	22.8	38.1	39.1
통신	62.5	19.8	42.7	37.5
건축	100	25	75	0
유통	100	35	65	0
교육	100	25	75	0
환경	100	25	75	0
금융	76.5	16.2	60.3	23.5
관광	50	25	25	50
운송	20	11.3	8.7	80
엔터테인먼트	0	0	0	100
건강	0	0	0	100
기타	0	0	0	100
평균	67	21	46	33

자료: 裴长洪 等(2015),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试验思路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 4.

2.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개방 현황

가. 금융

1) 개방과정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보험업-은행업-금융투자업(자산운용-증권) 순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해 왔다.[84] 가장 먼저 개방이 이루어진 보험업의 경우, WTO 가입과 함께 외국계 보험사의 전면적인 진입을 허용하면서

84) 임병익(2015), 「최근 중국금융환경 변화와 한중금융협력방향」, 대외정책포럼 발표자료, p. 2. (5월 14일)

손해보험사는 2003년부터 100% 외자지분을 허용하고, 생명보험사는 지분 50% 합자로 제한했으며, 지역제한은 철폐하였다. 또한 자동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책임보험도 2012년 말부터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취급이 허용되었다.[85]

은행업 역시 WTO 가입 직후부터 외자은행에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외환업무를 개방하고, 2006년 12월에는 모든 외자은행에 대해 위안화 업무를 개방함으로써 외자은행의 중국시장 접근이 전면 허용되었다. 그러나 외국계 자본이 중국 국내은행 지분율이 25%를 넘어서는 안 되는 등 경영권 제한은 유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은 타 금융 부문에 비해 제한적으로 개방이 진행되어 왔다. 2002년 「외자가 지분참여한 증권회사의 설립규칙(外資參股證券公司設立規則)」을 공포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일정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86]에서 합작투자를 허용하였다. 중국 내 포트폴리오 투자와 관련해서는 2002년 말부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의 기관투자자에 대해 내국인 투자전용인 A주식과 거래소 상장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적격외국인투자자(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부터는 위안화로 중국 본토의 주식, 채권 투자를 허용하는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를 허용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는 후강퉁(沪港通) 제도를 통해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상호 직접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

85) 임병익(2015), 「최근 중국금융환경 변화와 한중금융협력방향」, 대외정책포럼 발표자료, p. 2. (5월 14일)

86) 초기에는 33%, 3년 이내 49%로 확대를 조건으로 했음.

2) 개방수준 평가

중국은 2001년부터 꾸준히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금융개방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은 개방수준이 낮은 상황이며, 최근 체결한 FTA에서도 기존의 DDA 수정양허안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표 3-1]에서 보듯이 중국 보험, 은행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각각 0.496과 0.478로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및 한국보다 훨씬 제약요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표 3-2]의 부문별 개방도 비교에서도 금융은 부분개방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일례로 한 · 중 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도를 비교해 보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 참여에 대한 제한조치의 경우, 한국은 1998년 7월 모든 주식, 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한 데 반해, 중국은 2002년 QFII, 2011년 RQFII 제도를 도입하여 여전히 외국기관 투자자의 중국 주식, 채권 시장 투자를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나. 의료

1) 개방 과정

중국은 1989년부터 의료서비스 시장의 대외개방을 추진했다. 1989년 '외국인 · 화교의 병원 · 진료소 개설 및 외국인 의사의 중국 내 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합자 · 합작에 한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최초로 허용하였다. 이어 1992년 '외국 의료인의 중국 내 단기 의료활동 임시 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외국에서 의료면허를 취득한 이가 1년마다 '외국인 의사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중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외국 의료기관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 규정이 설립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병원 설립 과정부터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중국정부는 1997년 의료기관 설립 요건을 명시한 문건(「외상투자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보충규정」, 이하 '보충규정')을 발표하였다. 본 보충규정은 외국 의료기관이 중국에 합자 · 합작 형식으로 진출할 때 △ 중국 측 보유지분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 경영기한(의료기관 운영가능 기한)은 20년 이하로 제한된다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후 중국은 WTO 가입 준비과정에서 '중 · 외 합자 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나 필요에 따라 수량제한을 실시하며, 외국 측 투자자의 다수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고 약속하였고, 2000년 앞의 보충규정을 개정한 문건(「중 · 외 합자 · 합작 의료기관 관리 잠정방안」, 이하 '잠정방안')을 발표하였다.[87] 본 잠정방안은 WTO와의 개방약속에 맞춰 중국 측 최저 보유지분을 기존의 50%에서 30%로 낮췄으나, 경영기한을 20년 이하로 제한하는 요건은 유지하였고 최소 투자액이 2,000만 위안 이상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또한 수치화된 객관적 요건 외에도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투자자는 선진적인 의료기관 경영 경험이 있거나, 중국에 우수한 의료서비스 경영 모델 혹은 의료기술 ·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다소 추상적인 요건이 추가되었다.

중국인의 소득 증가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자, 늘어나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정부재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중국정부는 의료서

87) 박성철(2014), 「Global Healthcare Frontier 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컨퍼런스 발표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월 4일)

비스에 민간 · 외자 투자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2010년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장려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외자 의료기관 진출 시 지분비율(중국 측 최저 보유지분)에 제한을 뒀던 기존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일부 지역을 시범지로 지정하고 외자 독자 병원 진출을 허용하는 정책을 공표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2000년에 발표된 잠정방안에서 제시된 지분비율, 투자액, 경영기한 등의 설립 요건[88]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89] 즉, 현재 중국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 측 투자자는 △ 단독으로 의료기관 설립 불가 △ 최소 2,000만 위안 투자 △ 합자 · 합작 시 최대 30% 이하의 지분참여 △ 설립한 의료기관 운영 20년으로 제한 등의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진출 제한 요건은 외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90]

---

88) WTO 양허안에서는 이를 '중국의 필요와 일치하는 수량제한 요건(ENT)'으로 표현하고 있음.

89) 중국정부는 2013년 상하이 시험구에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처음으로 허용한 후, 2014년 7월 베이징, 톈진, 상하이, 광둥, 장쑤, 푸젠, 하이난 7개 성급단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외자 독자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각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각 지방의 실시방안은 발표되지 않았고, 2015년 3월 새롭게 발표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의료기관은 합자 · 합작 진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며 상하이 시험구에서도 독자 의료기관 설립이 다시 불가능한 것으로 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2014년 7월 7개 시범지역에 허용한 개방조치(외자 독자 병원 설립 허용)도 자동적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4년 7월 이후 7개 시범지에서 독자 진출한 외자 병원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며,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2014년 7월의 정책에 근거해 독자 병원 설립을 신청하더라도 설립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 한다. 商务部(2014a), 「国家卫生计生委、商务部关于开展设立外资独资医院试点工作的通知」, http://www.mofcom.gov.cn/article/b/f/201408/20140800711993.shtml(2015. 7. 21); 광둥성 · 장쑤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26~28, 광저우 · 난징).

90)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요건 외에도 비제도적인 장벽이 많아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이 매우 어렵다. 한 예로 병원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통상 1주일이면 끝날 절차가 중국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신청자가 사적인 방법을 동원해 요청을 해야 비로소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도 건물 임대료

표 3-3. 중국의 의료서비스 분야 주요 개방조치		
발표시기	발표 문건명	주요 내용
1989.2	「외국인 · 화교의 병원 · 진료소 개설 및 외국인 의사의 중국 내 의료행위에 관한 규정(关于开办外宾华侨医院诊所和外籍医生来华执业行医的几条规定)」	- 중 · 외 합자 · 합작 병원 · 진료소 시범 실시 - 병원 · 진료소 설립 시 의료 인력은 중국인 위주로 채용, 외국 의사 초빙 시 위생부 비준 필요
1992.10	「외국 의료인의 중국 내 단기 의료활동 임시 관리방법(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외국인 의사의 1년 이내의 단기 의료행위 허용 - '외국 의사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취득 후 1년 이내의 의료행위 가능, 필요 시 재등록 · 연장 가능
1997.4	「외상투자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보충규정(关于设立外商投资医疗机构的补充规定)」	- 중 · 외 합자 · 합작 의료기관 제한적 설립 허용 - 설립 요건: △ 중국 측 최저 보유 지분 50%(특수상황인 경우 30%) △ 경영기한(의료기관 운영 가능 기간) 20년 이하
2000.5	「중 · 외 합자 · 합작 의료기관 관리 잠정방안(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중 · 외 합자 · 합작 의료기관 제한적 설립 허용 - 설립 요건: △ 최소 투자액 2,000만 위안 △ 중국 측 최저 보유 지분 30% △ 경영기한 20년 이하 △ 다음 요건 중 1개 충족 1) 선진 의료기관 경영 경험 · 경영 모델 · 서비스 모델 제공 가능 2) 선진 의료기술과 설비 제공 가능 3) 의료서비스 능력 · 의료품질 · 기술 · 자금 및 의료시설 측면에서 소재지의 부족한 분야 보충 · 개선 가능 -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 불가
2010.11	「사회자본(민간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장려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	- 중 · 외 합자 · 합작 의료기관 출자 비율에 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 -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시험적으로 허용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자료: 卫生部(1989), 「关于开办外宾华侨医院诊所和外籍医生来华执业行医的几条规定」, http://www.chinalawedu.com/falvfagui/fg22598/30303.shtml(검색일: 2015. 11. 5); 卫生部(1992),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http://www.gov.cn/fwxx/bw/wsb/content_416839.htm(검색일: 2015. 11. 5); 对外贸易经济合作部(1997),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http://www.chinalawedu.com/falvfagui/fg22598/26216.shtml(검색일: 2015. 11. 5); 卫生部(2000),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http://project.mofcom.gov.cn/1800000121_23_68227_0_7.html(검색일: 2015. 11. 5); 国务院(2010), 「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 http://www.gov.cn/zwgk/2010-12/03/content_1759091.htm(검색일: 2015. 11. 5).

는 계속 지불해야 하기에 자금 부담이 커진다. 중국의 첫 외자병원인 '허무자(和睦家)병원'의 경우 설립 허가를 받기까지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한국의 SK아이캉병원 역시 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현지 E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5, 베이징).

우선 외자 독자 진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중국 측과 합자 · 합작 방식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적합한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중국 측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 · 중 합자 형식으로 진출한 한 한국 병원의 경우 중국 측 파트너가 자국의 법률과 재무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병원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행정원장직을 요구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이견이 있었고, 이러한 갈등 발생 시 현지 정부와 이해관계가 두터운 중국 측 파트너에 휘둘리는 일이 많아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91]

또한 중외 합자 · 합작 시 최소 2,0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조건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00만 위안을 충당하기 어려운 외국 의료기관들은 정식 진출을 포기하고 중국인 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원내원(院內院, shop in shop) 방식으로 우회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우회 진출한 병원들은 투자금 부담은 덜 수 있으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에 중국 측 파트너와 불화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우려를 항상 안고 있다고 한다.[92]

외국인 의사가 중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외국인 의사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발급 제도 역시 불편을 주고 있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므로 번거로울뿐더러, 등록한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어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출장 진료를 갈 경우 해당 지역에서 허가증을 다시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93]

---

91) 현지 A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7, 상하이). 또한 규정상으로는 외국 측이 70%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나, 외국 측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는 병원은 설립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지 B병원 관계자 인터뷰(2015. 5. 29, 상하이).

92) 현지 D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7, 상하이).

93) 현지 A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7, 상하이).

2) 개방수준 평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에는 여러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업과 달리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외국자본 진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많으며, 중국의 개방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편이다. WTO 양허안을 비교해 보면 의료서비스 각 분야(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양허한 헝가리와 같은 국가도 있으나,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들은 각종 제한을 두고 있다.[94]

한국과 비교해서도 중국의 개방도는 높은 편이다. 한국은 DDA 양허안에 의료서비스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국내외 자본을 불문하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영리성 의료기관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대부분 영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성 의료기관의 설립을 금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을 제한한다. 2007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내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성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95] 2008년 제주시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인천, 제주도에서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개설 요건과 허가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미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진출한 외자 의료기관이 없다.

---

94) 송건용, 정기택(2002), 『WTO ODA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전략 연구』, p. 11.

95) 성한경, 강준구, 배승빈(2007), 『한 · 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pp. 44~45.

표 3-4.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전문가서비스-의사 및 치과의사 서비스)

분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국경간 공급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해외소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상업적 주재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의 필요와 일치하는 수량제한 요건 하에서 중국인 파트너와 함께 외국인 다수지분의 합작 투자 병원 또는 진료소 설립 허용	합작투자 병원 또는 진료소의 의사 · 치과의사 총 인원 중 다수가 중국국적자여야 함
자연인의 이동	- 수평적 조치에 기재된 사항과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양허 없음 -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중국 위생부로부터 면허(외국의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취득 후 단기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의료 서비스 제공 가능 기간은 6개월이며 1년으로 연장 가능	수평적 조치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면 양허 없음.

주: 전문가서비스 중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재사항 없음.
자료: 성한경, 강준구, 배승빈(2007), 『한 · 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p. 47.

다. 법률

1) 개방 과정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가 국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96]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외국과의 경제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 수요가 늘어나자 법률서비스 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1992년 외국 법률사무소가 중국 내 일부 지역(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하이커우)에 1개의 '대표처'를 설립하고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97] 이후 2001년 WTO

96) 최승록(2008), 「한국 로펌의 중국 법률서비스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1.

97) 최송자(2005), 「중국의 법률서비스시장개방 및 한국의 문제점」, 『한국동북아논총』, 제37집, p. 353. 대표처는 일종의 자문회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러한 형식으로는 외국 법률사무소가 단독으로 법률사무를 보는 데 제약이 많아 대부분 중국 법률사무소와 제휴해 업무를 보는 일

에 가입하면서 지역적 제한과 수량적 제한을 없애는 등 개방도를 확대하고, 「외국변호사사무실의 주중 대표기구 관리조례(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외국변호사사무실의 주중 대표기구 관리조례의 집행규정(关于执行〈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的规定)」을 제정해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의 설립 요건 및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3-5. 주중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의 주요 구비 요건 및 업무 범위

구분	주요 내용
대표처 설립 요건	- 대표처에는 1명의 수석대표와 수명의 대표변호사가 파견되어야 하며, 매년 6개월 이상 중국 내에 체류해야 함 - 수석대표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개업변호사(执业律师)로 자국에서 파트너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여야 하고, 대표변호사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개업변호사여야 함
소속 변호사에 허용된 업무	- 변호사 자격 취득국의 법률, 국제협약, 국제관례에 대한 자문 - 당사자 또는 중국 법률사무소로부터 위임을 받아 변호사 자격 취득국의 법률사무를 처리 - 외국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국 법률사무소에 중국 법률사무를 위임 - 중국 법률사무소와 계약에 의해 형성된 장기적 위탁관계를 통한 법률사무의 처리 - 중국 법률 환경과 관련된 정보 제공(단, 중국 법률 적용에 관한 구체적 의견이나 판단 제공은 불가)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협력 방식	- 중국 법률사무소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불가 - 중국 법률사무소 또는 중국 변호사와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을 공동으로 하는 연합체 구성 불가 - 중국 법률사무소와 함께 연합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법률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불가 - 중국 법률사무소의 지분권 관리, 경영, 통제, 소유 불가
중국 변호사의 고용	- 중국 변호사 고용 불가

자료: 国务院(2001),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61860.htm(검색일: 2015. 7. 21); 司法部(2001), 「关于执行《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的规定」,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3/content_62105.htm(검색일: 2015. 7. 21).

이 많다. 현지 A법률사무소 관계자 인터뷰(2015. 9. 16, 상하이).

2015년 기준 중국에 설립된 외국계 법률사무소 대표처는 2001년에 제정된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본 관리조례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법률사무소의 외국 변호사는 자국 혹은 국제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으나 중국 법률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제공할 수 없다. 중국 법률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소송활동, 중국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증명의 제공과 같이 실질적인 중국 법률사무를 볼 수 없다.[98] 또한 외국인은 중국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에 중국 법률사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변호사가 필요한데, 대표처가 중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 외국계 법률사무소 대표처가 중국 법률사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다. 비록 대표처가 중국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수임한 중국 법률 관련 업무를 중국 법률사무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중국 법률 업무를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의뢰인이 비용을 두 배로 내야 하기에 대표처가 이러한 방식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외국계 법률사무소가 중국에서 업무를 보는 데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법률사무소의 경우 진출 초기에는 한국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업무가 주를 이뤘지만 점차 중국 현지법과 관련된 일상법률 자문업무, 분쟁해결 업무 같이 중국 법률사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99]

이에 일부 외국 대표처들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중국 법률 관련 사무를 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위 관리조례에서 허락된 '중국 법률 환경과

98) 国务院(2001),「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61860.htm(검색일: 2015. 7. 21).

99) 오기형(2012),「한중 FTA서비스시장-법률시장 중심으로」, KIEP 세미나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 따른 영향과 대책' 발표자료. (10월 19일)

관련된 정보 제공' 업무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여 중국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국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석하고, 전자우편이나 구두 등으로 중국 법률에 대한 해석, 의견, 자문을 제공한다.[100] 또한 중국 변호사를 변호사가 아닌 다른 직함으로 고용하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중국 법률사무를 보게 하기도 한다. 2006년 상하이변호사협회에서 '외국 법률사무소 중국 대표처가 규정을 어기고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것에 관한 보고' 등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중국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다소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101]

2) 개방수준 평가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도는 일반적으로 외국 변호사 및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의 업무 범위에 따라 [표 3-6]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102]

[표 3-6]의 기준에 따르면 중국의 법률시장 개방도는 '2단계(중간 수준의 개방)'에 해당한다. 중국 법률사무소와 계약에 의해 형성된 장기적 위탁관계를 맺는 방식의 업무 제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 변호사가 자국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자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개방도가 낮으나, FTA를 통해 법률서비스 개방 협정을

---

100) 최승록(2008), 「한국 로펌의 중국 법률서비스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44~45.

101) 「上海律协调查 : 揭秘外国律所违法执业」(2014. 7. 23), 『新浪财经』, http://finance.sina.com.cn/g/20060607/02202629967.shtml(검색일: 2015. 6. 7); 최승록(2008), 「한국 로펌의 중국 법률서비스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44~45.

102) 최승록(2008), 「한국 로펌의 중국 법률서비스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11~12.

맺은 일부 국가에만 2단계 수준의 개방을 허용한 한국에 비하면 개방도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103)]

표 3-6. 외국 변호사 및 외국 법률사무소의 업무 범위에 따른 개방도 구분

구분	업무 범위
1단계: 낮은 수준의 개방	- 외국 변호사가 '외국법 자문인'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국의 법률 및 국제법에 관한 자문 가능 - 외국 법률사무소가 대표처 개설 가능 - 주재국 법률사무소와의 업무 제휴 및 주재국 변호사 고용 불가능
2단계: 중간 수준의 개방	- 외국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대표처가 주재국을 제외한 법 영역에 대해 자문 및 대리 업무 수행 가능 -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가 주재국 법률사무소와 업무 제휴 가능(변호사 자격 취득국과 주재국의 법률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 처리하고 수익 분배)
3단계: 높은 수준의 개방	-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가 주재국 법률사무소와 동업(local partnership), 합작(joint venture)하거나, 외국 변호사 주재국 변호사를 고용 가능(주재국의 법률 사무 제공 가능)

자료: 최승록(2008), 「한국 로펌의 중국 법률서비스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11~12; 법무부(2015),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2015. 3. 6)를 바탕으로 작성.

라. 교육

1) 개방 과정

중국은 WTO 가입 시 약속했던 서비스무역 양허안에 따라 교육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였다. WTO 양허안에 따르면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 교육(군사, 경찰, 정치, 당 간부 교육)을 제외하고, 중등 및 고등 교육 분야에서 중외합작설립에 한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103) 한 · 중 FTA에서 한국은 한 · 미, 한 · EU FTA와 달리 중국에 1단계 수준의 개방만을 허용함. 중국 법률사무소는 한국 법률사무소와 업무제휴(2단계 개방)를 하거나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설립해 한국 변호사 고용(3단계 개방)을 할 수 없음. 「한 · 중 FTA 이르면 연내 발효… 법률시장 개방은 1단계만」(2015. 6. 2),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427(검색일: 2015. 10. 15).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中华人民共和国法)」과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中外合作办学条例)」에 따르면 '교육'은 교육 사업이나 공익성 사업으로 간주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해외 교육관련 기관 및 기업의 중국 진출 제약요인으로 작용된다.[104]

한편 외국교육기관이 중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선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中外合作办学条例)」(이하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합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운영조례」 제3항에 따르면 교육법과 마찬가지로 '외국 교육기관이 중국 교육기관과 합작 형태로 설립한 중외합작학교는 공익성 사업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교육기관은 중국측 기관과 합작을 하여 비영리성 중외합작 교육기관, 중외합작 직업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중외합작 직업기능훈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중외합작교육기관은 학력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105]

또한 중외합작교육기관의 설립은 가능해졌지만 기준이 까다롭고, 영리성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학원 등의 교육기관 및 기업의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내·외자 기업들은 교육사업이 아닌 자문사, 교육투자회사, 문화미디어회사 등의 우회방식으로 진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불가피하게 회색지대(gray zone)에 놓인 경우가 많다.[106]

---

104)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과 「고등교육법(高等教育法)」에는 '대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국가고등교육발전 규획, 국가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105) 国务院(2013d),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4/content_2692776.htm(검색일: 2015. 7. 7).

106) 상하이 A교육기업 관계자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표 3-7. 외국기업의 중국 내 교육기관 진출관련 규정

구분		관련 규정
오프라인 교육	고등교육기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제한류' 중외합작교육조례
	보통 고등학교 교육기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제한류' 중외합작교육조례
	취학 전 교육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제한류' 중외합작교육조례
	직업교육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류' 사립교육촉진법(民办教学促进法)」 중외합작교육조례
온라인 교육	일반 온라인 교육사이트	온라인 교육 사이트와 온라인 학교 임시관리방법 (教育网站与教育网校暂行管理办法)
	온라인 교육기관(학위, 자격증 수여)	

자료: KOTRA상하이 KBC(2009. 8. 10),「中, 금융위기가 낳은 황금알 온라인 교육시장」, http://www.globalwindow.org/GW/chin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15&SCH_TYPE=SCH_CN&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1039126&ARTICLE_ID=2106435&UPPER_MENU_CD=M10114&NM_KO=&BBS_ID=10&NM_EN=&SCH_VALUE=%EA%B5%90%EC%9C%A1%EA%B8%B0%EA%B4%80+%EC%A7%84%EC%B6%9C&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검색일: 2015. 7. 7)를 인용하여 저자가 일부 수정함.

2) 개방수준 평가

중국 교육서비스 시장 진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이 금지되어 있어 해외 교육관련 기관 및 기업의 중국 진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수준은 WTO DDA 양허안,「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중국 교육서비스 분야 DDA 양허안에서는 국경간 공급(원격교육)은 시장 진입이나 내국민 대우에 있어서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으로는「온라인 교육사이트와 온라인학교 임시관리방법(教育网站与教育网校暂行管理办法)」이 있다.[107] 그러

107) 教育部(2000),「教育网站与教育网校暂行管理办法」,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7062/201401/162898.html(검색일: 2015. 7. 8).

나 이 규정은 외국기업이 현지에 사무소나 교육기관의 설립을 전제로 현지 법인과 합작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사무소의 설립 없이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법적 규제가 없다. 공식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자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108)]

반면, 해외 소비(유학)의 경우는 시장진입이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방수준이 매우 높다. 상업적 주재(해외대학의 국내분교 설립,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립)는 내국민 대우에 대해선 약속을 하지 않았으나 합작형태의 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진출에는 제한이 많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교는 단독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원어민 교사채용 등의 자연인 주재와 관련해서는 시장진입과 내국민 대우에 있어 전제조건, 자격 등 제한조건이 비교적 많다.

WTO 양허안을 통해 약속한 개방조치와 함께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규제조치인 제7차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5년 개정)」에서는 기존 「목록」보다 교육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 측면이 있다. 기존 제6차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운영 · 설립이 장려류로 합작과 합자가 모두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제한류로 분류되어 개방도가 비교적 높았던 고등교육기관마저 오히려 개방도가 후퇴했다. 개정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에 있어 비학제형 직업훈련기관을 장려하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 운영 · 설립, 보통고등학교 운영 · 설립, 유아교육기관 운영 · 설립은 제한류로 분류되어 합작에 한해서 제한

108) 이정미 외(2012), 「한-중 FTA 교육서비스 분야 협상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 384.

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합작의 조건도 과거보다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교육서비스의 개방은 당분간 미온적일 것으로 보인다.

외자기업이 중국 교육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외합작형 사립학교(비학제) 설립이 가장 용이한 상황이며, 직업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이 되어 있다. 현재로선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에 있어 법률적 제한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립교육을 통한 진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가장 많이 진출되는 형태가 중외합작을 통한 국제학교이거나, 교육기관 및 기업이 아닌 우회적으로 운영되는 어학원, 학원 등이 주를 이룬다.

표 3-8. 중국의 교육서비스 분야 양허안 비교/한 · 중 FTA 협정문

		Mode 1: 국경 간 공급	Mode 2: 해외 소비	Mode 3: 상업적 주재	Mode 4: 자연인의 주재
WTO DDA (2005. 7)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약속 안함	제한 없음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의 합작 학교 설립이 허용됨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과 다음 외에는 약속 안함. - 외국의 개인 교육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들에 의해 초청되거나 고용될 경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국이 가능함. - 자연인 입국의 관련 조건에 만족해야 함.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약속 안함	제한 없음	약속 안함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 보유 - 적합한 전문직 직합 또는 자격증, 2년 전문직 경력
한 · 중 FTA (2015. 6)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약속 안함	제한 없음	외국인 다수 지분 소유의 합작 학교 설립이 허용됨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과 다음 외에는 약속 안함. - 한국의 개인 교육 서비스 공급자들은 중국 학교들과 그 밖의 다른 교육 기관들에 의하여 초청되거나 고용될 경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음.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약속 안함	제한 없음	약속 안함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 보유 - 적합한 전문직 직합 또는 자격증, 2년 전문직 경력

자료: WTO DDA 양허안, http://i-tip.wto.org/services/(S(idqwttybsrky3yjkxpbnxhj2))/SearchResultGats.aspx(검색일: 2015. 7. 8); 산업통상자원부(2015), 「한 · 중 FTA 협정문」, http://www.fta.go.kr/cn/doc/1(검색일: 2015. 7. 8).

마. 관광

1) 개방 과정

중국에 외자여행사가 최초로 진출한 시기는 1998년이다. 이후 2001년 중국이 WTO 가입을 통해 관광업의 대외개방이 확대되면서 외자여행사의 진출도 점차 증가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여행사는 2013년 9월 기준 총 81개 업체로 집계된다.[109] 진출 형태는 독자기업이 56개로 69%를 차지한다.[110] 지역으로는 베이징이 36개로 가장 많으며, 그 밖에 광둥성(16개), 상하이(14개)에도 다수 진출해 있다. 전체 외자여행사의 81.5%는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111]

그러나 중국은 해외 외화 반출 관리를 이유로 하여, 개인의 해외여행을 제한하여 왔다.[112] 외자여행사에 대해서는 아웃바운드 관광업무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중국기업과 합작할 경우에만 자격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해당 기업이 최소 2년 이상 관광분야에 업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업무량이나 등록자본 등에도 까다로운 규정을 두었다.

중국 관광업의 대외 개방 변화는 시기별로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WTO 가입 이전(1999~2001년)에는 외자여행사가 중국에서 영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다. 최소 등록자본 기준도 100만 달러로 높았고, 투자비율도 중국 측의 비중이 높아야 했다. 또한 외자기업의 독자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고, 경영범위도 일부 국가관광휴양구(国家度假区)의 업무와 중국

---

109) 中国旅行社协会(2014. 3. 4), 「外商投资旅行社在华发展研究」, http://cats.org.cn/lilunyuandi/yewu/22118(검색일: 2015. 7. 29).

110) 中国旅行社协会(2014. 3. 4), 「外商投资旅行社在华发展研究」, http://cats.org.cn/lilunyuandi/yewu/22118(검색일: 2015. 7. 29).

111) 中国旅行社协会(2014. 3. 4), 「外商投资旅行社在华发展研究」, http://cats.org.cn/lilunyuandi/yewu/22118(검색일: 2015. 7. 29).

112) 푸단대학 관광학과 郭英之 교수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의 국내관광과 인바운드 관광 일부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외자여행사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등록자본 기준은 최소 250만 위안 수준으로 낮아졌고, 투자비율은 주식제(控股)나 외상독자 설립도 가능해졌다. 그 밖에 설립지역의 제한도 크게 사라졌다. 단 주식제나 외상독자 설립기업은 국가관광휴양구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시안 5개 도시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이어 2009년 「여행사 조례(旅行社条例)」가 발표되면서 외자여행사에 대한 관리규제가 한층 더 완화되었다. 최소 등록자본 기준이 30만 위안으로 크게 낮아졌고, 설립지역, 투자비율, 투자처의 자격기준, 지사개설 등 대부분의 제한 규정이 해제되었다. 그렇지만 2010년 아웃바운드 업무를 신청한 14개의 합자여행사 가운데 중뤼투이여행(中旅途易旅游有限公司, 독일 'TUI' 합자), JTB신지위안국제여행사(JTB新纪元国际旅行社有限公司, 일본 'JTB' 합자), 궈뤼윈퉁여행사(国旅运通旅行社有限公司, 미국 'American Express' 합자) 3개 업체에만 자격을 부여하였다. 2011년부터는 중외합자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무 취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경영범위 제한도 해제했다.

한편 중국에서 관광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주요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정부는 2013년 처음으로 관광 종합 법률에 해당하는 「여유법(旅游法)」을 제정하였다. 「여유법」은 「여행사 조례」와 비교하여 외자여행사 관리기준에 변화는 없지만, 초저가 관광상품 기획과 중국 여행사와 랜드사(접객대행사) 간의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113] 이를 통해 중국 관광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향후 아웃바운드 시장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국 내 지방정부별로 법조

113) 최경은(2014), 「중국 여유법 시행 이후 관광 동향 분석 및 정책과제」, pp. 18~19.

항 해석을 달리하였고, 사실상 구매자의 동의만 구하면 얼마든지 저가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114)]

표 3-9. 외자여행사 관리 법규 변화

시기	WTO 가입 이전 (1999~2001년)	WTO 가입 이후, 「여행사조례(旅行社条例)」 발표 이전 (2001~09년)	「여행사 조례」 발표 이후 (2009~13년)	「여유법」 발표 (2013년 10월~현재)
외자여행사 (개)	6	24	51	확인 불가
관련 법규	「국가관광휴양구내 운영되는 중외합자경영의 제 1류 여행사 심의비준 관리 잠행 방법(关于在国家旅游度假区内开办中外合资经营的第一类旅行社的审批管理暂行办法)」(1998)	「여행사 관리 조례(旅行社管理条例)」(2001), 「외상기업의 주식제, 독자여행사 설립 잠행 규정(设立外商控股, 外商独资旅行社暂行规定)」(2002)	「여행사조례(旅行社条例)」(2009),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무 시범경영 관리감독 잠행방법(中外合资经营旅行社试点经营出境旅游业务监管暂行办法)」(2010)	「중화인민공화국 여유법(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2013)
등록자본기준	최소 100만 달러 혹은 500만 위안	최소 400만 위안(2001)에서 최소 250만 위안(2002)으로 완화	최소 30만 위안	최소 30만 위안
설립지역	국가관광휴양구(国家度假区), 단 합자사는 주식제 혹은 외상독자로는 설립 불가	특별한 규제 없음, 단 주식제 혹은 독자의 경우에는 국가관광휴양구 및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시안 5개 도시로 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투자비율	중국 측이 51% 이상	2003년 6월부터 주식제(控股) 혹은 외상독자 설립 가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투자처의 자격기준	중국, 외국의 기업이 모두 여행사인 경우	외국 기업은 여행기업만 가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경영범위	관광휴양구 관련 업무, 국내 및 인바운드 관광	국내 및 인바운드 관광	2011년부터 아웃바운드 관광 취급 가능	국내 관광,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관광
지사 개설	금지	금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허가 절차	성급 여유국을 통해 국가 여유국과 대외경제무역부(对外经贸部)에 보고	성급 여유국을 통해 국가 여유국과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	성급 여유국을 통해 국가 여유국과 상무부(商务部)에 보고	성급 여유국을 통해 국가 여유국과 상무부에 보고

자료: 中国旅行社协会(2014. 3. 4), http://cats.org.cn/lilunyuandi/yewu/22118(검색일: 2015. 7. 29); 최경은(2014), 「중국 여유법 시행 이후 관광 동향 분석 및 정책과제」, pp. 8~19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114) 모두투어 관계자 인터뷰(2015. 9. 22, 베이징).

2) 개방수준 평가

중국 관광업은 DDA 수정 양허안에서 여행알선대행(여행사)과 호텔 · 레스토랑 분야의 개방범위를 제시하였다. 여행사의 경우 아웃바운드 관광 업무는 중외합작투자기업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FTA를 체결한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와의 협정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말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 · 중 FTA에서는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에 대해 별도의 합의사항이 추가됐다. 협정문 제17장 22조에는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의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현 시범사업 계획하에서 아웃바운드 관광 운영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한국 회사가 중국 관련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 관광회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사업 운영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라는 조항이 추가됐다.[115] 이로써 향후 한국 여행사들이 중국에서 아웃바운드 업무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관광분야에 포함되는 호텔업이나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개방을 양허했다. 우선 외자도 중국에서 호텔 설립이나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인력 이동과 관련(Mode 4)해서 중 · 스위스 FTA에서는 중국의 합작 호텔이나 레스토랑과 계약을 맺은 외국인만 서비스 제공 가능한 요건을 철폐했다.

바. 콘텐츠

1) 개방 과정

문화콘텐츠 분야는 2001년 WTO 가입에 맞춰 산업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을 시작했다. 또한 10차 5개년 발전계획(2001~05년)부터 본격적으로

115) 한 · 중 FTA 협정문 제17장 22조, p. 167, http://www.fta.go.kr/cn/doc/1(검색일: 2015. 10. 13).

문화를 산업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4년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문화예술, 방송영화업을 제한적이지만 개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방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경쟁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맞춰 문화산업 육성에 주력했다.[116] 11차 5개년 규획시기(2006~10년)에는 주로 문화산업 진흥정책 위주로 발표되었다.

이어 12차 5개년 발전규획 기간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중국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도약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특히 게임, 영화 등 일부 분야는 해외로 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콘텐츠(선전물) 제작에 있어 여전히 개방폭을 확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외자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각종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콘솔 비디오게임기는 2000년 전까지 생산과 유통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게임콘텐츠가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2000년 6월 「전자 게임 경영장소 전문 관리 의견 통지(关于开展电子游戏经营场所专项治理意见的通知)」를 통해 생산, 유통을 금지시켰다.[117] 일부 병행수입과 짝퉁제품을 통해 콘솔 비디오게임기가 암암리에 유통되기도 하였지만 2014년 상하이 시험구에서 발표한 정책에 따라 재차 생산과 유통 규제가 해제되었다.[118]

---

116) 베이징대학 예술학원 관계자 인터뷰(2015. 9. 14, 베이징).

117) 网易游戏, 「从上海自贸区成立看大陆游戏机解禁」, http://play.163.com/special/news/freetradezone.html(검색일: 2015. 12. 1).

118) 콘솔 게임기 관련 개방조치는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

2) 개방수준 평가

문화콘텐츠 영역은 분야별로 진입규제수준이 상이하지만 외국자본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개방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에서 공연장 경영(演出场所经营)은 투자 장려분야로 분류했다.[119] 그 밖에 방송 TV 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은 협력만 가능하며, 공연기획(演出经纪机构) 기업은 중국 측 지분통제에 한하여 투자가 가능하다. 그 밖에 출판이나 영화 배급 등에 대해서는 투자 불가분야로 분류했다.

한편 중국의 문화서비스 분야 DDA 수정 양허안에서도 WTO 가입 시기 양허했던 조건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기체결한 중국 · 뉴질랜드, 중국 · 스위스와의 FTA에서도 DDA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그러나 최근 타결이 이뤄진 한 · 중 FTA에서는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기업의 합작 진출에 대한 내용이 협정문에 추가되었다. 협정문에 따르면 공연 중개기관 및 공연장 법인은 상업적인 공연을 진행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한국기업은 중국과의 협력 시 최대 지분을 49%까지 소유 가능하게 된다. 또한 2015년 2월 발표한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에 따르면 후난, 톈진 등에 한 · 중 합작 K-POP 홀로그램 공연장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120]

한편 콘솔게임기는 상하이 시험구에서 2014년 생산과 판매 분야 모두 개방되었으나 오랜 기간 규제되면서 사용층이 급감하였기 때문에 개방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121]

---

119)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 http://www.sdpc.gov.cn/zcfb/zcfbl/201503/W020150402620481787669.pdf(검색일: 2015. 10. 11).

120) 관계부처합동(2015. 2. 25),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121) 「文化部宣布解禁游戏机 媒体认为对市场影响有限」(2015. 7. 27), 『观察者』, http://www.guancha.cn/Industry/2015_07_27_328278.shtml(검색일: 2015. 12. 1).

3. 서비스시장 개방전략

가. 서비스시장 개방내용 비교

중국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업 발전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중국정부는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以開放促改革)'한다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서비스 분야에서도 개방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6~15년간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개방'에 대한 언급을 분석한 결과, 11 · 5 기간(2006~10년)과 12 · 5 기간(2011~15년)의 평균 언급 횟수는 각각 19.6회와 20회로 큰 차이가 없으나,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11 · 5 기간에는 주로 경제특구, 상하이 푸둥신구, 톈진 빈하이신구의 개발과 개방을 강조하고 금융과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해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12 · 5 기간에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개방대상 지역을 연해, 내륙, 변경으로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개방업무를 명시함으로써 개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외자(外資)의 적극적인 활용, 서비스업의 확대개방, 내 · 외자 기업의 동일한 대우, 상하이 시험구 조성 등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나아가 2015년에는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수정방향을 제시하고 전방위적인 대외개방구도의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서비스업의 개혁개방을 심화할 것을 언급하면서 특히 관광, 헬스, 양로, 창의설계 등 구체적인 발전분야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16년에도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중국정부

표 3-10. 2006~15년간 연도별 정부업무보고상의 '개방' 관련 내용

연도	빈도수	장/절 여부	전년도 성과	해당연도 목표
2006년	28	6장: 개혁개방 진일보 추진	- 대외개방: 수출환급세, 관세, 가공무역정책 조정을 통한 대외무역구조 개선. 서비스업 대외개방의 안정적 추진	- 대외개방확대정책조치 시행 경제특구, 상하이 푸둥신구 역할을 발휘하고, 톈진빈하이신구 개발개방을 추진 -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서비스영역 대외개방 확대(언급수준) - 11 · 5규획 강요(초안)에서 개혁심화와 개방확대를 목표로 함
2007년	13	5장: 개혁심화, 개방확대	개혁개방 진일보 심화(수출입, FDI실적) 외자이용 구조개선, 은행/유통/전신 등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 개혁개방을 각종 사업추진의 동력으로 삼음 - 경제특구, 푸둥신구 역할 발휘, 빈하이신구 등 조건이 양호한 지역의 개발개방 추진 - 5장 내용 중(금융체제 개혁 가속화: 금융 대외개방 추진, 개방수준 향상)
2008년	26	5장: 경제체제개혁 심화, 대외개방수준 향상	5년간의 실적 중 개방형 경제성과(수출+경제특구, 푸둥신구, 빈하이신구 개발개방 추진+대외개방 확대 견지(대외무역 경영권 개방, 관세 대폭인하, 수입쿼터 및 허가증 등 비관세조치 철폐, 금융/상업/전신 등 서비스업 개방확대) + 개혁개방 견지(개방도 개혁이며, 개방을 겸용해야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	- 5장 내용 중(대외개방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고, 개방형 경제수준 향상: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안정적 추진) - 마지막 부분에서 '호리공영(互利共贏)의 개방전략 견지'를 강조
2009년	17	5장: 개혁개방 심화, 과학적 발전에 유리한 체제/기제 마련	개혁개방 추진(무역, FDI 실적) + 대외개방수준 지속향상(서비스업의 대외개방확대)	- 금융혁신, 금융개방 및 금융감독관리의 관계 처리 - 경제특구, 푸둥신구, 빈하이신구가 개혁개방의 첨병 역할 유지 - 5장 내용 중(외자이용 및 대외투자의 조화로운 발전, 외자가 하이테크산업, 선진제조업,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현대서비스업에 투자되도록 유도, 중서부 국가급 개발구 발전수준 및 변경지역 개방수준 향상) - 여전히 호리공영의 개방전략 강조
2010년	14		지역발전에서 중서부, 동북부지역 개방개발 가속화, 개혁개방 심화를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동력으로 간주하고 대외개방수준을 제고	- 과학기술발전에서 과학기술 자원의 최적화 배치 촉진과 개방공유 및 고효율 이용을 강조 - 대외개방의 범위와 심도를 확대
2011년	22	9장: 대외개방수준 진일보 향상	- 11 · 5시기 성과를 논의하면서 개혁개방, 개방형 경제수준 등을 강조 - 개혁개방심화: 보험업 개혁개방 추진 - 대외개방은 경제발전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며,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을 흡수해 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	- 12 · 5 시기 목표로 개혁개방 심화 제시(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개방전략을 실시) - 2011년 목표 중 경제특구, 푸둥신구, 빈하이신구의 개혁개방 선도역할 강화 - 9장 내용 중 새로운 개방영역과 공간을 확대

표 3-10. 계속

연도	빈도수	장/절 여부	전년도 성과	해당연도 목표
2012년	18	9장: 대외개방의 질과 수준을 향상	개혁개방 추진심화(수출입을 동시에 중시하고 외자이용과 대외투자를 동시에 추진하여 개방형 경제수준을 전면향상)	-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 혁신을 촉진 - 경제특구, 푸둥신구, 빈하이신구의 개혁개방 선도역할 발휘 - 민생과 관련해 사회자본의 병원개설을 장려하고 대외개방을 통해 다원화한 병원개설 구조형성을 가속화 - 9장에서 대외개방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으며 무역, 쌍방향 투자의 지위와 역할에도 큰 변화가 있음을 강조 - 중국의 홍콩, 마카오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
2013년	21	4장: 정치적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개혁개방을 심도 있게 추진	금융체제개혁 중 보험업 개혁개방의 추진 대외개방확대, 개방형 경제수준 향상	- 과학기술 자원개방 공유기제 완비 - 4장 내용 중(개혁개방이 국가발전 진보의 근본적인 동력임을 강조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개방전략을 실행할 것임을 천명+연해개방심화, 내륙 및 변경지역 개방확대, 선진국 및 개도국에 대한 개방결합)
2014년	18	2장: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국면을 열기	- 개혁개방 심화를 통해 시장활력과 내생동력을 활성화 - 개방심화: 상하이 시험구 설립, 실크로드이니셔티브 제안 등	- 개방 확대 목표 - 2장 내용 중(새로운 대외개방을 추진, 전방위에서 주동적으로 개방을 확대,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외자를 이용하고, 서비스업의 확대개방을 추진하며, 내외자 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함으로써 중국이 외국인투자 1순위 국가가 되도록 함. 상하이 시험구 조성과 내륙/변경지역 개방확대를 통해 전국이 대외개방의 대상이 되도록 함+다자간, 역내 개방협력강화)
2015년	21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아니라 별도의 큰 장으로 구성: 개혁개방을 더욱 깊은 단계로 추진	-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 자유무역시험구 범위를 상하이에서 광둥, 톈진, 푸젠으로 확대. 수출입, FDI 실적 제시, FTA 실적 제시	- 개방도 개혁이며, 개방을 통해 발전과 국제 경쟁을 주동 -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외자이용을 위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수정하고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의 개방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인투자 제한류를 반으로 줄일 것임. - 전방위 대외개방구도를 조성(실크로드건설, 내륙 및 변경지역 개방확대, 경제기술개발구 혁신발전촉진,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적극 추진 등) - 다자간, 역내 개방협력강화 - 또 다른 장에서는 서비스업의 개혁개방 심화를 언급하면서 관광, 헬스, 양로, 창의설계 등 서비스업 발전을 강조

자료: 「2006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2009. 3. 16), 『新华社』, http://www.gov.cn/test/2009-03/16/content_1260216.htm(검색일: 2015. 12. 21); 「2007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2009. 3. 16), 『新华社』, http://www.gov.cn/test/2009-03/16/content_1260188.htm(검색일: 2015. 12. 21); 「2008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2009. 3. 16), 『新华社』, http://www.gov.cn/test/2009-03/16/content_1260198.htm(검색일: 2015. 12. 21); 「2009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2009. 3. 16), 『新华社』, http://www.gov.cn/test/2009-03/16/content_1260221.htm(검색일: 2015. 12. 21); 「温家宝所作政府工作报告」(2010. 3. 15), 『新华社』, http://www.gov.cn/2010lh/content_1555767.htm(검색일: 2015. 12. 21); 「温家宝在十一届人大四次会议上所作政府工作报告」(2011. 3. 15), 『新华社』, http://www.gov.cn/2011lh/content _1825233.htm(검색일: 2015. 12. 21); 「2012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2012. 3 15), 『新华社』, http://www.gov.cn/test/ 2012-03/15/content_2067314.htm(검색일: 2015. 12. 21); 「2013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2013. 3 19), 『新华社』, http://www.gov.cn/test/2013-03/19/content_2357136.htm(검색일: 2015. 12. 21); 两会授权发布 : 政府工作报告(2014. 3. 14), 『新华社』,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3/14/c_11977924 7.htm(검색일: 2015. 12. 21); 「2015 年政府工作报告」(2015. 3. 5), 『人民网』, http://www.people.com.cn/n/2015/0305/c347407-26643598.html(검색일: 2015. 12. 21).

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15년 11월 발표된 「13 · 5 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에서는 13 · 5 기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개방과 발전, 협력과 윈윈(win-win)을 제시하고, 대외개방의 새로운 체제를 형성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를 위해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광범위하게 이를 확산, 복제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해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순서대로 확대하며, 은행, 보험, 증권, 양로 등 시장진입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업의 쌍방향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122]

나. 12 · 5 기간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언급은 11 · 5 기간에도 있었으나, 12 · 5 기간, 특히 중속 경제성장시대에 직면한 2014년부터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발생한다. 중국정부의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는 개방의 목적, 대상, 지역, 방식 등에서 나타난다.

1) 목적의 변화

과거 중국이 외국자본에 자국 시장을 개방한 것은 유입되는 FDI를 통해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1978년 개혁개방 초기부터 1990년대까지 중국의 시장개방전략은 '자국시장으로 외국기술을 교환하는(以市場換技術)' 전략으로 대표된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

122)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1. 4), 人民日报海外版, 第01版.

과 중국은 3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고,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세계적으로 주요한 제조기지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면서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자원, 각종 조세혜택 등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던 인센티브가 사라지면서 저부가가치의 임가공 기지로서 성장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고,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던 경제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2014년 중속 성장기, 경제구조 조정기에 진입하였음을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등 과거 제조업 위주의 고성장 시대와는 다른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시장 개방의 목적도 과거 외국인투자유치에서 이제는 국내 환경, 제도의 개선과 글로벌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등 국내 경제구조 개선이 서비스시장 개방의 주요 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대상의 확대

서비스시장 개방의 대상은 과거 외국기업이었다. 그러나 과거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초국민대우'를 해주면서 오히려 자국기업, 특히 민영기업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 존재했다는 입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서비스시장 개방 대상은 과거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민영기업까지 포함한다. 상무부연구원의 李钢, 聂平香, 李西林(2015)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개방하기에 앞서 자국의 민영기업에 먼저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23)]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2010년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 유도하

기 위한 국무원의 의견(国务院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한 바 있다. '신36조(新36條)'라고 약칭되는 이 정책을 통해 민영기업도 국유기업의 전유물이었던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 교육, 문화, 금융, 관광, 유통 등 서비스 영역의 참여가 장려되었다.

3) 지역의 선택

중국은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점-선-면'으로 불리는 지역발전전략을 시행해 왔다. 1970년대 말 최초의 경제특구인 선전에 국한해 시행한 홍콩과의 연계나 동부연해 소재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개방정책은 그 효과가 확인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개혁개방 전반에 대한 시험이었지, 산업을 타깃팅(targeting)한 지역 선택은 아니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파급효과가 크며,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장기간의 국유독점체제로 인해 외부환경 변화나 경쟁에 취약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 서비스시장의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금융, 전자상거래 관련 지역 선정이 대표적이다.

금융의 경우, 2012년 저장성 원저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5개 지역에 금융종합개혁시험구가 설립되었으며,[124] 이들 시험구는 '인접국 또는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민간경제 활성화'[125]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전자상

123) 李钢, 聂平香, 李西林(2015), 「新时期我国扩大服务业开放的战略与实施路径」, 『中国经贸』, 第3期, p. 6.

124) 5개 금융종합개혁시험구는 저장성 원저우, 광둥성 주장삼각주, 푸젠성 취안저우, 윈난성 옌볜, 산둥성 칭다오임.

125) 김명아(2014), 「중국 5개 금융종합개혁시험구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개혁 정책 운용현황과 시사점」, p. 8.

거래와 관련해서는 2012년 정저우, 항저우, 닝보, 상하이, 충칭을 국제무역 전자상거래서비스시범지역(国家跨境贸易电子商务服务试点)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5년 3월에는 항저우에 중국(항저우)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中国(杭州)跨境电子商务综合试验区)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또한 2013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광둥, 푸젠, 톈진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조성해 서비스시장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종합적인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4) 태도의 변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시장에 대한 중국의 개방은 2001년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외부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인 대응이다.

그러나 최근 TPP, RCEP 등 전 세계적으로 다자간 협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동적인 입장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본 연구의 대상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이다. 2013년 조성을 시작한 상하이 시험구는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중국정부가 자발적으로 먼저 시작한 개방시험구이다. 이는 그만큼 서비스시장의 개방 필요성을 중국 스스로도 절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방식의 변화

첫째, 제도 개선을 중시한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대외개방에서는 조세감면이나 저렴한 부지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2012년 외국기업에 대한 기존의 우대정책이 모두 폐지되면서 최근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치중한다.

둘째, 개방수준을 높인다.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정책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시행이다. 이 목록에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권장, 제한, 금지하는 업종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포지티브 리스트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외개방 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형태로 시범적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이며, 시험구에서 사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負面淸單)를 향후 전국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셋째, 대외개방의 방향을 확대한다. 정부업무보고 분석결과, 대외개방을 언급할 때 해외진출도 함께 언급된 바가 있으나, 2012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중시하고 외자이용과 대외투자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개방형 경제 수준을 전면 향상시킬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개방의 방향이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위한 내향(內向, inbound)에서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막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외향(外向, outbound)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조성

12 · 5 기간 서비스시장의 대외개방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이다. 상하이 시험구는 2016년 TPP 타결을 예상하고 서비스 분야의 개방압력이 국제적으로 가중될 것에 대비해 국내 제도의 자체적인 정비 차원에서 중국정부가 먼저 시작한 개방조치이다. 또한 시험구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해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모든 인센티브를 폐지하여 중국 대외개방전략의 방식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개방대상 역시 외국기업에 국한

하지 않고 있고, 시험구 면적도 2014년 확대됨으로써 개방조치의 테스트베드로서의 효과를 검증한 후 적용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중국정부의 전략을 반영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방조치를 주요 서비스 분야별로 분석하여 중국 서비스시장 대외개방의 첨병으로서 상하이 시험구의 활용도를 평가한다.

제4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조치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황
2.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개방조치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황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9월 1차로 푸둥신구(浦东新区) 소재 4개 보세구(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단지, 양산보세항구, 푸둥공항종합보세구, 총 면적 28.78㎢)가 지정되었고, 2014년 12월 루자쭈이금융지구(陆家嘴金融片区), 진차오개발지구(金桥开发片区), 장장하이테크지구(张江高科技片区)가 추가로 지정되어 전체 면적이 120.72㎢으로 확대되었다.

상하이 시험구의 최상위 관리기구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추진공작영도소조(中国(上海)自贸试验区推进领导小组)'로서 2015년 4월 출범했다. 영도소조는 상하이시 정부가 주축이 되고,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와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동으로 판공실 주임을 맡는다.[126] 시험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표 4-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구성

명칭	면적(㎢)	역할/특성
종합보세구 (综合保税区)	28.78	- 2013년 1차로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4대 보세구 - 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 보세물류단지, 양산보세항구, 푸둥공항종합보세구로 구성
루자쭈이금융지구 (陆家嘴金融片区)	34.26	- 루자쭈이금융무역구: 상하이 국제금융허브의 핵심지역, 국제해운허브의 첨단서비스지역, 국제무역허브의 비즈니스 집결지 - 엑스포 첸탄지구(世博前滩地区): 헤드쿼터경제, 해운금융, 문화체육관광, 첨단서비스 집결지
진차오개발지구 (金桥开发片区)	20.48	- 선진제조업 핵심기능단지, 생산형 서비스집결지, 전략적 신흥산업 선행지구, 생태공업시험구
장장하이테크지구 (张江高科技片区)	37.2	- 혁신형 국가전략의 핵심기지 - 장장국가자주혁신시험구 건설과 연계 발전

자료: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2015c),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全区概况」, http://www.china-shftz.gov.cn/Overview.aspx(검색일: 2015. 7. 27).

126) 「上海自贸区公布扩区后体制框架 将设推进工作领导小组」(2015. 4. 27), 『看看新闻』, http://www.kankanews.com/a/2015-04-27/0036698110.shtml(검색일: 2015. 8. 19).

관리위원회였으나, 시험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15년 4월부터는 푸둥신구 정부와 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관리위원회 사무실이 푸둥신구 정부청사로 이전되었고, 상하이시 부시장과 푸둥신구 당서기가 관리위원회 주임을 겸임하고 있다.[127] 관리위원회 직원이 시험구 조성과 관련한 계획을 작성하고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은 후 시험구에서 집행할 때 푸둥신구 정부가 이에 협조하는 형태로 업무공조가 이뤄지고 있다.[128] 또한 시험구에 속하는 5개 지구별로 관리국을 두고 있다.

그림 4-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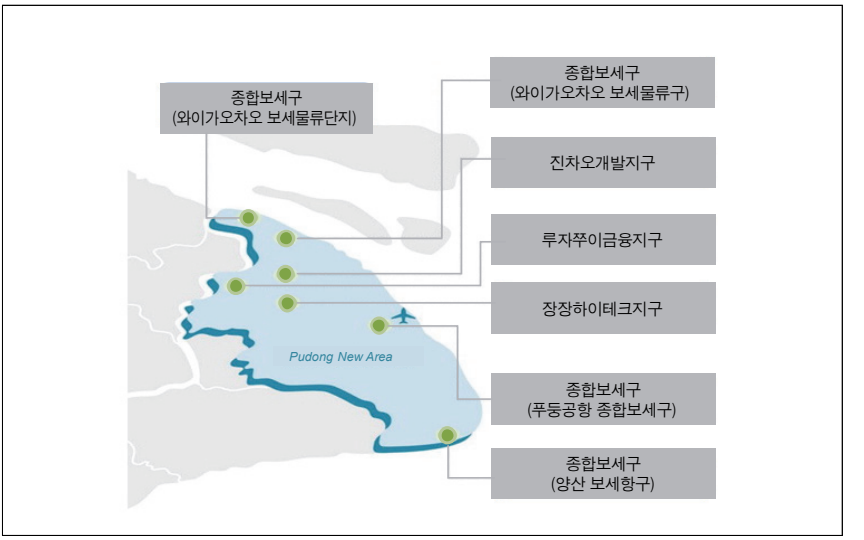

자료: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 http://www.china-shftz.gov.cn/InstitutionalFramework.aspx?MenuType=2&Type=5(검색일: 2015. 11. 10).

127) 이처럼 다른 부처가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보는 행정형태를 '합서판공(合署办公)'이라 한다.

128) 상하이시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 간담회(2015. 9. 1, 상하이) 내용.

그림 4-2.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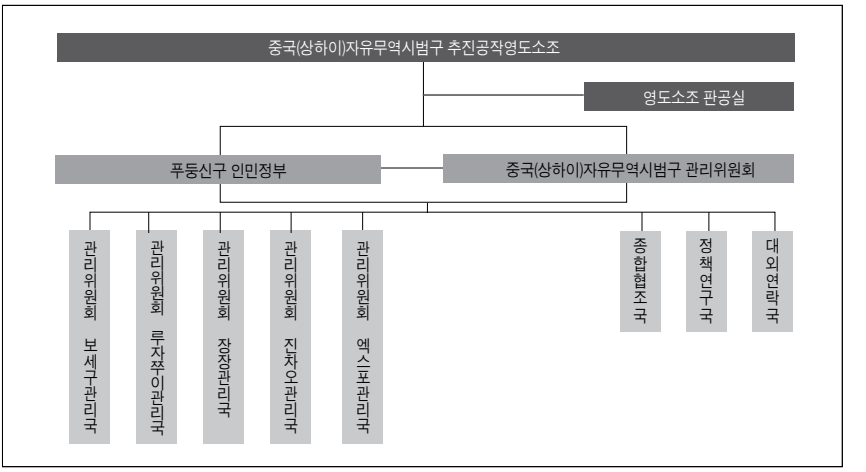

자료: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 http://www.china-shftz.gov.cn/InstitutionalFramework.aspx?MenuType=2&Type=5(검색일: 2015. 8. 19).

상하이 시험구의 핵심 목표는 △ 정부 관리의 중립화 △ 시장경제 운행의 법치화 △ 상품무역의 자유화 △ 서비스 무역의 편리화 △ 금융분야의 개방이다.[129] 먼저 정부 관리의 중립화를 위해 외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기존의 심의비준제(審批制, 허가제)에서 등록제(備案制)로 전환하고, 제도개혁을 위해 국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03건의 심의비준제도를 철폐했다. 정부의 감독관리를 사전(事前) 관리 중심에서 사중(事中), 사후(事後)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부 직능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참여 또는 관여할 업무 리스트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경제 운행의 법치화를 위해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였으며, 상품무역 자유화의 일환으로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무관세를 추진 중이며, 통관수속제도를 개선해 세관, 검역 등을 전자화해 6시간 내에 모

129) 상하이재경대 관계자 인터뷰(2015. 8. 27, 상하이).

든 수속을 완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서비스 무역의 편리화를 위해서는 교육, 관광, 컨설팅,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업의 개방수준을 높이는 조치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개방은 국내외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분야로, 18개 개방조치 발표, 위안화의 국제화 및 SDR 참여 시도, FTA 계정 출시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130]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 무역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투자 · 무역이 편리하고, 화폐 태환이 자유로우며 감독관리의 효율이 높고 법제환경이 갖추어진 자유무역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131] 결국 상하이 시험구는 중국이 향후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면서 중국 국정에 가장 적합한 경제발전 모델을 찾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라고 할 수 있다.

상하이 시험구는 2~3년 내에 조성을 완료하기로 계획되었기에, 짧은 목표기한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앙의 각 부처 및 상하이 시 정부, 관리위원회 등 유관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정책과 법규를 발표, 시행해왔다. 2015년 8월 기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문건 2건, 국무원 및 산하 부처에서 발표한 문건 47건, 상하이 시 차원에서 발표한 문건 50건 등 총 99건의 각종 정책이 발표되었다.[132]

2013년의 과도기를 거쳐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2014년부터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가 2013년부터 매년 새롭게 발표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를 금지 · 제한하는 항목이 2013년의 190

---

130) 상하이재경대 관계자 인터뷰(2015. 8. 27, 상하이).

131) 国务院(2015e),「进一步深化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4/20/content_9631.htm(검색일: 2015. 11. 3).

132)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 http://www.china-shftz.gov.cn/govInfoDir.aspx?GTID=237c0b98-9fdd-4ab3-9f6d-92aba33b9191&MenuType=2&subMenuID=2&tagIndex=2&govMainTagIndex=0&govSubTagIndex=0(검색일: 2015. 8. 19).

개에서 2014년에는 139개, 2015년에는 다시 122개로 점차 축소되는 등 시장 개방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133] 이에 2014년 말까지 신규로 11,440개의 기업이 시험구에 등록했고, 이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2,057개이며 계약액은 118억 달러에 달했다. 2015년 1~8월에는 아더 갤리거(Arthur J. Gallagher) 보험회사, 애플페이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등 총 283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투자 계약이 이뤄졌다.[134]

또한 통관제도가 개선되면서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시험구 이외 지역에 비해 41.3% 축소되었고, 수출통관 소요시간도 36.8% 축소되었다(2014년 말 기준). 금융분야에서는 자유무역계좌가 활성화되면서 10개의 은행이 9,741개의 자유무역계좌를 개설했고, 위안화의 국경간 사용이 확대되면서 위안화의 국경간 결제총액이 3,226억 위안에 달했다(2014년 말 기준).[135]

정부 직능전환 등의 제도혁신으로 인해 행정수속이 간소화되면서, 기업 설립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가 각 지구별 행정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있다. 일례로 푸둥신구 정부 인근에 위치한 행정센터에서는 2014년 74만 건의 신청을 처리했고, 현재 1일 평균 1,000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136]

상하이 시험구 출범 이후 1년여 만인 2014년 12월 톈진, 광둥, 푸젠이 자유무역시험구로 추가 지정된 것으로 볼 때 중국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

133) KOTRA 글로벌윈도우(2015. 5. 14),「상하이자유무역구 시범기간 중간점검」,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8503&ARTICLE_SE=20307(검색일: 2015. 11. 10).

134) 전년동기대비 3.3배 증가함.「上海自贸区扩大服务业开放项目数量破千」(2015. 9. 18),『新华网』, http://www.sh.xinhuanet.com/2015-09/18/c_134637678.htm(검색일: 2015. 9. 20).

135) 上海市统计局 国家统计局上海调查总队(2015. 2. 28),「2014年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www.stats-sh.gov.cn/sjfb/201502/277392.html(검색일: 2015. 8. 19).

136)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행정서비스센터 관계자 인터뷰(2015. 9. 1, 상하이) 내용.

모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하이 시험구는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 최고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 3개 시험구와 차별화된다.[137)]

표 4-2. 상하이 시험구 관련 주요 문건

발표시기	문건명	발표기관	주요 내용
2013. 9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국무원	- 시범구 조성 목표, 추진 방향, 지역적 범위 - 금융, 항운, 비즈니스, 법률, 관광, 교육, 의료 등 서비스업 개방조치
2013. 10	「2013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3年))」	상하이시	- 외국인 투자가 금지 · 제한되는 업종 · 분야(금지류 38개, 제한류 152개)
2013. 12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관련 행정법규와 행정심사비준 · 진입특별관리조치를 잠시 조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 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和国务院文件 规定的行政审批或者准入特别 管理措施的决定)」	국무원	- 외자기업 진출과 관련된 각 행정심사를 심의비준제(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2014. 6	「2014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상하이시	- 외국인 투자가 금지 · 제한되는 업종 · 분야(금지류 29개, 제한류 110개)
2015. 4	「2015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국무원	- 외국인 투자가 금지 · 제한되는 업종 · 분야(금지류 37개, 제한류 85개)

자료: 国务院(2013c),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http://www.gov.cn/jrzg/2013-09/27/content_2496302.htm(검색일: 2015. 7. 8); 上海市商务委员会(2013),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3年)」, http://www.scofcom.gov.cn/wgtzgl/232023.htm(검색일: 2015. 7. 8); 国务院(2013a), 「国务院关于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和国务院文件规定的行政审批或者准入特别管理措施的决定」,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4/content_2567151.htm(검색일: 2015. 7. 8);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4. 7. 1), 『凤凰网』, http://news.ifeng.com/a/20140701/40958904_0.shtml(검색일: 2015. 6. 22); 国务院(2015c),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5/content_2856650.htm(검색일: 2015. 7. 8).

137) 톈진 시험구는 베이징-톈진-허베이의 통합, 광둥 시험구는 홍콩, 마카오와의 연계, 푸젠 시험구는 대만과의 연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음.

또한 국무원은 2014년 12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복제가능한 개혁시범사업경험의 확대실시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를 공포하였다. 이 통지에서는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행된 개혁조치 중 투자관리, 무역편리화, 금융, 서비스업 개방, 사중사후 감독관리 등에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조치를 선정하고, 사안별로 공간적 범위와 시한을 지정하였다.[138]

이처럼 상하이 시험구 모델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시험구 조성 초기에 목표로 했던 3년이 지나더라도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시험구(自由貿易試驗區)라는 현 명칭에서 '시험(試驗)'을 삭제하고 계속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2.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개방조치

가. 금융

1) 주요 내용

상하이 시험구의 핵심이 금융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금융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며, 통상적으로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행되는 금융개혁 중 금리 자유화, 환율제도 개혁, 위안화 국제화와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시장 개방 등이 화두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금융서비스 시장 자체의 대내외 개방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138) 国务院(2014b), 「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1/29/content_9437.htm(검색일: 2015. 11. 11).

표 4-3.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업 개방확대조치

분야	개방조치
은행	• 외자금융기구의 외자은행 설립 허용 • 중국 민간자본과의 합자은행 공동설립 허용 • 중국계 은행의 오프쇼어(offshore) 업무 허용
건강의료보험	• 외자기업의 건강의료전문보험기구 설립 허용
금융리스	• 금융리스회사가 설립한 소규모 금융리스기업의 최소등록자본제한을 폐지 • 금융리스회사의 주요 영업업무와 관계된 팩토링(factoring) 업무의 겸업 허용

자료: 国务院(2013c),「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http://www.gov.cn/jrzg/2013-09/27/content_2496302.htm(검색일: 2015. 7. 8).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행되는 금융관련 조치는 크게 '구(舊)51조'와 '신(新)40조'로 대표된다.

'구51조'는 '일행삼회(一行三會)'라 약칭되는 중국 중앙의 금융 관련 부처가 상하이 시험구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까지 내놓은 51건의 '지도의견'을 지칭한다. 이 중 중앙은행이 발표한 31건의 지도의견은 자유무역계정시스템,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금리 시장화, 위안화의 국제 사용, 외환관리체제 개혁과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다.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8건의 지도의견은 중 · 외자 은행의 시험구 입주와 경영, 민간자본의 시험구 내 은행업 참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의견 5건은 자본시장 개혁의 심화,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개방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며,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지도의견 8건은 보험시장시스템의 정비와 기능성 보험기구의 클러스터링 촉진에 치중되어 있다.[139] 이와 함께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도 상하이 시정부의 은행, 보험, 증권국과 9건의 시행세칙을 발표한 바 있다.

139) 「"五十一条+九细则"明确金改方向」(2014. 10. 13),『解放日报』, http://newspaper.jfdaily.com/jfrb/html/2014-10/13/content_24490.htm(검색일: 2015. 10. 30).

국무원은 2015년 10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금융개방혁신시범사업의 추진과 상하이국제금융중심건설 가속화 방안(进一步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金融开放创新试点加快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方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신40조'로 불리는 이 방안에서는 상하이 시험구의 금융개방과 상하이 국제금융중심 건설을 연계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기존 '구51조'와 대별된다. 이 방안에서는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실현, 위안화 국제사용의 확대 심화, 금융서비스업 대내외 개방 확대, 국제적인 금융시장 건설 가속화, 금융감독 관리 및 리스크 예방과 대처 강화 등 다섯 가지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140]

이 중 금융서비스업의 대내외 개방 확대에 해당하는 내용이 18개에 달해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방주체로 중국의 민영자본과 외자기구를 병기하였다. 민영자본에 대해서는 민영은행, 금융리스회사, 재무공사, 자동차금융회사, 소비금융회사 등 금융기관 설립을 지지하고, 외자기관에 대해서는 외자금융기관의 시험구 내 합자증권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외국 측 파트너의 지분비율은 49% 이하로 규정하고 중국 측 주주는 반드시 증권회사일 필요는 없으며 합자증권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관이 시험구에 합자증권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였다.[141]

상하이 시험구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은 크게 방향과 개방대상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방향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의 시험구 진입을 허용하는 조치와 중

---

140) 「上海自贸区金改新政出台 试点人民币资本项目可兑换」(2015. 10. 23), 『中国新闻网』, http://news.sohu.com/20151023/n423993661.shtml(검색일: 2015. 10. 30).

141)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2015a), 「上海自贸区"金改新 40条"印发」, http://www.china-shftz.gov.cn/NewsDetail.aspx?NID=2ff4f755-2792-4b54-b41b-330f823d2325&CID=f672f518-99a3-4789-8964-1335104906b4&MenuType=2&navType=0(검색일: 2015. 11. 10).

국의 금융기관 및 개인의 해외진출을 허용하는 조치가 동시에 추진된다. 일례로 외자은행의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시험구 내 외자은행 사무소의 지점 승격에 필요한 기간 단축과 위안화 업무 취급에 필요한 최소영업기간 단축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상품선물거래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상업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던 은행 설립 자격을 외자금융기구로 확대하여 외자(독자)은행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시장 참여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국계 은행의 오프쇼어(offshore)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직접 진출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시험구 적격 국내 개인의 경외투자 시범사업(合格境内个人投资者境外投资试点, QDII 2)을 2015년 연내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둘째, 개방대상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과 중국 민간자본이 동시에 고려된다. 일례로 외자 금융기구와 중국 민간자본과의 합자은행 설립을 허용하여 국내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중국은 자국 내 은행 5곳을 대상으로[142] 상하이 시험구 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은행간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143] 이를 통해 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할 채널이 확대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다시 말해 상하이 시험구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유치라는 통상적인 대외개방과 함께 대내개방으로서 국내 민간자본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나아가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

142) 상하이 시험구 소재 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은행간 CD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은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상하이 연고의 지역은행 2곳이 선정되었다.

143) 「中,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내 외국 금융사도 CD 발행 허용」(2015. 6. 8),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21&newsid=03030726609399752&DCD=A00802&OutLnkChk=Y(검색일: 2015. 8. 19).

2) 추진배경

금융분야 개혁개방에 대한 국지적인 시도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저장성 원저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5개 지역에 금융종합개혁시험구가 설립되었으며, 이들 시험구는 "인접국 또는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민간경제 활성화"[144]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반면 상하이 시험구는 자본시장의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중국을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주요 금융시장으로 육성하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기존 시험구와는 차별화된다.

특히 2014년 추가 지정된 구역 중 루자쭈이 금융지구가 포함되어 있어 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개방조치가 실질적으로 금융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다. 그러나 2020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 금융허브 건설을 위해서는 금리, 자본계정의 흐름(capital account flow), 위안화 환율의 통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표 4-4. 중국 5대 금융종합개혁시험구

시험구	지정일	중점분야
저장성 원저우	2012. 3.	민간금융(중소기업 대상) 활성화
광둥성 주장삼각주	2012. 7	위안화 국제화 및 홍콩과의 연계
푸젠성 취안저우	2012. 12	실물경제 지원 금융기능 강화
윈난성 옌볜	2013. 11	ASEAN과 금융협력 강화
산둥성 칭다오	2014. 2	자산관리업무 육성, 한중일 3국간 협력

자료: 임병익(2015), 「최근 중국금융환경 변화와 한중금융협력방향」, 대외정책포럼 발표자료, p. 14. (5월 14일)

144) 김명아(2014), 「중국 5개 금융종합개혁시험구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개혁 정책 운용현황과 시사점」, p. 8.

상하이는 금융시장 규모 면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나, 진정한 국제 금융허브가 되기에는 질적인 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상하이에는 현재 1,432개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고, 상하이 로컬금융기관인 푸둥발전은행, 태평양보험은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다. 또한 황금, 선물, 증권, 채권, 외환 등 금융관련 거래소가 다양하게 설립되어 있고, 거래량은 올 상반기에만 729억 위안으로 세계 상위권 수준이며, 12차 5개년 규획말 달성목표인 1조 위안을 연내에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아울러 Ant Financial(蚂蚁金融)과 같은 인터넷 금융과 제3자 결제(Third party payment) 등 새로운 금융기구도 발달했다.[145]

이와 같은 양적 규모를 바탕으로 상하이는 2020년까지 국제 금융허브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는 정량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위안화의 국제적인 지위에 부합하고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정성적인 기준도 있어 국제화 수준은 아직 부족한 편이라는 게 상하이 시정부 입장이다.

이에 상하이 시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를 국제 금융허브 건설을 위한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현재 중앙정부가 금융허브 건설보다 자유무역시험구 사업을 더 중시하고 있는 만큼 상하이 시정부는 우선 시험구에서 시범적으로 개방을 추진한 후 자유무역시험구의 명분으로 중앙정부에 개방을 요구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146]

3) 평가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도되는 서비스 분야 개방의 핵심은 금융서비스이

145) 상하이시 금융서비스판공실 관계자 인터뷰(2015. 9. 1, 상하이) 내용.

146) 상하이시 금융서비스판공실 관계자 인터뷰(2015. 9. 1, 상하이) 내용.

며, 가장 많은 관련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일례로 「총체방안」에서도 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한 중시가 확인된다. 「총체방안」에서는 5대 주요 임무 및 조치 중 하나로 '투자영역의 개방확대'를 제시하면서 개방확대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영역의 개방혁신 심화'를 별도의 임무 및 조치로 한번 더 제시할 정도로 금융서비스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영역이 넓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방에 있어 더욱 신중한 입장이다. 즉 상하이 시험구라는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방을 시도한다고 해도 그 영향력은 전국으로 파급될 수 있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시도를 단행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총체방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이나 금리 시장화, 위안화의 국제사용 등을 제도혁신의 예로 제시하면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라는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상하이 시험구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중국 전체 금융서비스 부문의 발전 속도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4) 활용사례

가) 한국 금융업계의 입장

상하이 시험구에 대해서 기존에 상하이에 진출한 한국 금융업체는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입장이다. 시험구 진출관련 사례로는 SK에서 1년여에 걸쳐 팩토링(factoring) 법인 설립을 추진했다가 현재는 중단한 사례가 있는 정도이다. 그 밖에도 한국의 자본으로 중국 투자를 추진하는 각종 벤처캐피털사가 신규 진출을 신중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증권회사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최근에 루자쭈이 금융단지가 시험구에 편입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업무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시험구와 관련하여 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을 활용해볼 것을 고려해보기도 했으나, 중국에 유입은 가능하지만 중국 내에서 본토와 시험구 간의 자유로운 거래는 불허한다고 알고 있어서 추진하지 않았다.[147)]

자산운용사 역시 굳이 시험구에 사업체를 설치할 필요를 못 느끼며, 오히려 QFII, 펀드 교차판매(MR) 등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개방조치를 따라가기에도 벅찬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아직까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되는 금융조치가 큰 계획(grand plan)을 짜기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의 증권사가 와이가오차오에 사무실을 연다고는 하나, 파견되는 인력이 사내 우수인력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별히 시험구를 겨냥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일단 시도해보자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148)]

은행도 마찬가지여서 시험구에 실체(entity) 설립을 고려하는 한국계 은행도 있었으나, 기존의 전산시스템과는 별도로 시험구에서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50억 원 소요) 실제로 한국계 은행 중에는 시험구에 신규 진출한 사례가 없다. 또한 시험구에 한국계 기업의 기반이 없는 것도 지점설립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했다.[149)]

나) 자유무역계좌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행된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조치를 활용한 가장

147) NH투자증권 관계자 인터뷰(2015. 8. 28, 상하이) 내용.

148) 미래에셋 관계자 인터뷰(2015. 8. 28, 상하이) 내용.

149) 하나은행 관계자 인터뷰(2015. 8. 31, 상하이) 내용.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유무역계좌(自由贸易帐户, FT account)가 있다. 자유무역계좌는 일종의 역외계좌로서, 이 계좌가 있으면 역외에서도 위안화와 외화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도 편리하다. 또한 상하이 시험구에 진출한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150] 계좌유형은 크게 시험구 내 기관 전용계좌와 경외기관 전용계좌, 시험구 내 개인계좌와 경외 개인계좌, 동종업 기관계좌로 구분된다. 시험구 내 주체 및 경외기관은 자유무역계좌를 통해 경상항목과 직접투자항목의 국제자금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151]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공포한 「금융의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金融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意见)」에서 자유무역계좌 개설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가 2015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장부분할채산 업무의 경외융자 및 국제자금유동 거시 심사 관리 실시세칙(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分账核算业务境外融资与跨境资金流动宏观审慎管理实施细则)」과 「자유무역계좌 외환서비스기능 개시에 관한 통지(关于启动自由贸易帐户外币服务功能的通知)」를 발표하면서 자유무역계좌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다.

[표 4-5]에서 보듯이 2015년 8월 기준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가 자유무역계좌 설립을 허용한 금융기관은 총 33개이며, 이 중 은행이 28개, 비은행 기관이 5개를 차지한다. 특히 2015년에는 상하이 소재 국유기업집단의 계열사이면서 비은행 금융회사인 재무공사의 자유무역계좌 설립을 3건 비

150) 「日미쓰이스미토모銀, 상하이 자유무역계좌 개설」(2015. 2. 16),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57353(검색일: 2015. 11. 10).

151) 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2014. 6. 18), 「上海市首批金融机构启动自由贸易账户业务」, http://shanghai.pbc.gov.cn/fzhshanghai/113583/115042/2336490/index.html(검색일: 2015. 11. 10).

준함으로써 해당 그룹의 역내외 자금조달이 편리해졌다. 또한 HSBC를 필두로 8개의 외국계 은행이 자유무역계좌 설립이 가능해졌는데, 일본계 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미즈호은행, 미쯔비시도쿄UFJ은행이 2015년에 리스트에 추가되는 등 일본계 은행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외국계 은행 중 가장 먼저 자유무역계좌 업무를 실시한 씨티은행은 자유무역계좌를 통해 글로벌 냉동공조부품 전문기업인 댄포스(Danfoss)사가 상하이 시험구에 글로벌 위안화 결제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했다. 댄포스

표 4-5. 상하이 시험구 내 자유무역계좌 개설 허용 금융기관 리스트

	중국계	외국계	합계(개)
은행	中国银行上海市分行 中国工商银行上海市分行 中国建设银行上海市分行 上海浦东发展银行上海分行 上海银行 招商银行上海分行 交通银行上海市分行 中国农业银行上海市分行 中信银行上海分行 中国民生银行上海自贸试验区分行 华夏银行上海分行 南洋商业银行上海分行 上海农商银行 中国光大银行上海分行 南京银行上海分行 渤海银行上海分行 平安银行上海自贸试验区分行 江苏银行上海分行 兴业银行上海分行 上海华瑞银行	汇丰银行上海分行(HSBC, 홍콩) 花旗银行(中国)有限公司(Citi Bank, 미국) 三井住友银行(中国)有限公司(Sumitomo Mitsui, 일본) 东亚银行(中国)有限公司上海分行(BEA, 홍콩) 星展银行(中国)有限公司上海分行(DBS, 싱가포르) 瑞穗银行(中国)有限公司(Mizuho, 일본) 三菱东京日联银行(中国)有限公司上海分行(BTMU, 일본) 法国兴业银行(中国)有限公司上海分行(Societe Generale, 프랑스)	28
비은행	上海黄金交易所 上海清算所 上海电气集团财务有限责任公司 申能集团财务有限公司 上海汽车集团财务有限责任公司	-	5
합계	25	8	33

주: 2015년 8월 24일 기준임.
자료: 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2015. 8. 24),「上海市金融机构分账核算单元通过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系统接入验收名单」, http://shanghai.pbc.gov.cn/fzhshanghai/113583/115045/2939844/index.html(검색일: 2015. 11. 10).

사가 글로벌 위안화 결제센터를 기존의 런던에서 상하이 시험구로 이전한 이유는 자유무역계좌와 씨티은행의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국제 위안화 자금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다.[152)]

반면, 한국계 금융기관 중에는 현재까지 자유무역계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나. 의료

1) 주요 내용

중국정부는 2013년 9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에서 상하이 시험구에 외국 투자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개방조치를 발표하였다. 기존의 여러 제한사항 중 지분비율 제한(외국 측 투자자 보유 지분 70% 이하)을 없앤 것이다. 뒤이어 발표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자 독자 의료기관 관리 잠정방안」에서는 설립 절차 및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지분비율 제한 외의 다른 요건들은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하였다. 2,000만 위안 이상 투자해야 하며 경영기간은 20년 이하로 제한하는 요건을 유지하였고, 국제 선진 수준의 의료기관 경영 경험 또는 의료기술 · 설비를 제공할 수 있거나 의료서비스 능력 · 기술 · 자금 · 시설 등의 분야에서 소재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 ·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조건도 유지하였다.

상하이 시험구의 의료서비스 분야 개방은 2014년 더욱 심화되었다. 2014년 6월 발표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31개

152) 「花旗汇丰先后在上海自贸区完成首单自由贸易账户业务」(2015. 2. 15), 『中国新闻网』, http://finance.chinanews.com/cj/2015/02-15/7067325.shtml(검색일: 2015. 11. 10).

조치」에서 최저투자액과 경영기간 제한을 철폐하였으며, 이어 발표한 2014년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료기관은 지사 설립 불가'라고만 명시함으로써 지분비율 · 투자액 · 경영기한 등의 여타 제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2015년 들어 의료서비스 분야 개방도를 다시 낮추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15년 4월에 발표된 네거티브 리스트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대부분 한층 더 진전된 개방조치를 담고 있는 반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이전보다 후퇴한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은 합자 · 합작 형식으로만 설립 가능'이라 밝히고 있는데, 이는 외자 의료기관의 독자 진출이 다시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개방조치가 번복된 이유에 관해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한 것은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으로 상하이시로서는 이를 따라 개방조치를 번복해야만 했다고 한다.[153] 일부에서는 개방조치 후 실제로 진출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등 실적이 좋지 않자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개방조치를 중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154] 시험구의 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상하이 시험구는 2014년 12월 기존의 4개 보세구에서 푸둥신구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개방조치가 푸둥신구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면적 확대로 인해 기존에 제한된 공간에서 시험적으로 추진해보려던 개방조치를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다.[155]

---

153)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29, 상하이).

154) 현지 C병원 관계자 인터뷰(2015. 9. 16, 상하이). 중국 전문가들은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는 FTA와 같은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시험구라는 명칭 그대로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변동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궁바이화(龚柏华) 푸단대 법학과 교수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155) 상하이시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 간담회(2015. 9. 1, 상하이).

표 4-6. 상하이 시험구의 의료서비스 분야 주요 개방조치

발표시기	발표 문건명	주요 내용
2013. 9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 허가
2013. 10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자 독자 의료기관 관리 잠정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独资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외자 독자 의료기관의 설립 요건, 설립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 중 · 외 합자 · 합작 의료기관 제한적 설립 허용 - 설립 요건: △ 의료기관 투자 · 경영에 5년 이상 직접 종사 경험 △ 최소 투자액 2,000만 위안 △ 경영기한 20년 이하 △ 다음 요건 중 1개 충족 1) 선진 의료기관 경영 경험 · 경영 모델 · 서비스 모델 제공 가능 2) 선진 의료기술과 설비 제공 가능 3) 의료서비스 능력 · 의료품질 · 기술 · 자금 및 의료시설 측면에서 소재지의 부족한 분야 보충 · 개선 가능
2014. 6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31개 조치(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进一步扩大开放的措施)」	- 외자 투자 의료기관의 최소 투자액 및 경영기한 제한 취소
2014. 11	「2014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4年修订)」	- 의료기관은 지사(分支机构) 설립 불가
2015. 4	「2015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 의료기관은 합자 · 합작으로만 제한

자료: 国务院(2013c),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http://www.gov.cn/jrzg/2013-09/27/content_2496302.htm(검색일: 2015. 7. 8);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2013a),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独资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http://www.china-shftz.gov.cn/PublicInformation.aspx?GID=f685fecb-e3ed-4cb3-ac99-e3d7e5600d11&CID=953a259a-1544-4d72-be6a-264677089690&MenuType=(검색일: 2015. 7. 8); 「上海自由贸易试验区进一步扩大开放措施」(2014. 7. 2), 『中研网』, http://www.chinairn.com/news/20140702/085422158 .shtml(검색일: 2015. 6. 22);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4. 7. 1), 『凤凰网』, http://news.ifeng.com/a/20140701/40958904_0.shtml(검색일: 2015. 6. 22); 国务院(2015c),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5/content_2856650.htm(검색일: 2015. 7. 8).

2) 추진 배경

비록 무산되기는 했으나 상하이 시험구에서 이러한 조치가 시도된 이유로는 향후 발생 가능한 개방 요구 대비, 상하이 외곽지역(보세구) 의료환경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중국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체제 개선을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156] 외자 의료기관을 통해 현재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립의료기관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늘어나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비공립의료기관(社会办医 · 민영, 홍콩, 마카오, 대만, 외자 의료기관 포함)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으나 아직 진전이 느린 편이다. 2020년까지 비공립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을 20%까지 늘리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외자, 민영 의료기관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공립의료기관이 현재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위에 의존해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지 않는 한편 민영, 외자 의료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시험구에 우수하고 독립적인 외자 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외자 의료기관이 외국의 선진 의료경영 시스템과 첨단진료를 통해 공립의료기관의 환자를 분산시키고 일종의 '메기 효과(Catfish Effect)'를 일으켜 공립의료기관 개혁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고 있다.[157]

---

156) 중국 푸단대학교 공공위생학원 교수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157) 중국 푸단대학교 공공위생학원 교수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3) 평가

상하이 시험구에서 초반에 추진되었던 개방조치는 앞서 살펴본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에서 '상업적 주재'의 '시장접근' 분야에서 제한하고 있었던 수량제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조치이기는 했으나 홍콩 · 마카오 · 대만에는 CEPA, ECFA를 통해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점진적으로 허용되었던 조치이다.

우선 홍콩 · 마카오 투자자가 합자 · 합작 형식으로 중국에 진출할 경우 요구되는 최소 투자액은 2007년 1,000만 위안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2010년 홍콩 · 마카오 · 대만 투자자가 상하이, 광둥(廣東), 푸젠(福建), 하이난(海南) 등 중국 일부 지역에서 독자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13년에는 홍콩 ·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전국의 지급(地级) 이상 도시에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158]

이에 따라 최근 홍콩, 대만 투자자들이 중국에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대만 투자자가 상하이시에 독자로 '허신(禾新)병원'을 설립하였으며, 2013년에는 홍콩 투자자가 선전(深圳)시에 독자로 'C-MER 린슌차오(林顺潮) 안과'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상하이 시험구는 초반에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독자 의료기관 설립이 다시 불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보세구이기 때문에 의료설비 수입 시 면세로 들어올 수 있으며, 의료인의 출입국 허가가 편하다는 정도의 혜택이 있을 뿐이다.[159] 또한 시험구는 배후단지

158) 박성철(2014), 「Global Healthcare Frontier 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컨퍼런스 발표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월 4일)

159)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29, 상하이).

조성이 미진할뿐더러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의료 인력 및 환자의 방문이 용이하지 않기에 '독자 진출 허용'과 같은 차별화된 혜택이 없을 경우 외자 의료기관 진출에 매력적이지 않다.[160]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독자 진출이 다시 불가능해진 후 진출을 문의하는 외자 의료기관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161]

4) 활용사례

상하이 시험구가 2013년 외자 독자 의료기관 진출을 허용하자 여러 해외 의료기관들이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에 관련 문의를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치과, AIDS, 재활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관이 진출에 관심을 보였으나 실질적인 투자로까지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으며, 지금까지 독일의 '아르테메드 그룹(Artemed Group)', 일본의 '토와코(Towako)' 총 2개의 외자병원이 진출을 확정했다.[162] 이 두 병원은 모두 독자 형식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2015년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되기 전에 진출을 확정하였기에 독자 진출이 가능하였다.

가) Artemed Group(阿特蒙)[163]

아르테메드 그룹은 양로센터로 유명한 독일 의료기관으로 2014년 7월 상하이 시험구에 독자로 진출하였다. 상하이 시험구의 첫 독자 의료기관이자, 중국 전체적으로도 홍콩 · 대만계를 제외하면 첫 외자 독자 의료기관이

160) 현지 B병원 관계자 인터뷰(2015. 5. 29, 상하이).
161)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29, 상하이).
162)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29, 상하이).
163)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29, 상하이)를 바탕으로 작성함.

다. 아르테메드 그룹은 독일에 10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연인원 5만 명에 달하는 문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이다. 재활치료와 영상진단 분야에 국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심혈관 등의 외과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직접 생산하기도 한다.[164]

아르테메드 그룹은 상하이 시험구의 와이가오차오에 2016년 개관을 목표로 의료영상센터, 메디컬트레이닝센터, 근육 · 뼈 질환센터 등을 설립하는 1기 공정을 착공하였으며,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심혈관질환, 복강질환 관련 진료센터를 추가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165] 1기 공정으로 100병상 규모의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총 3기에 걸친 공정이 모두 완료되면 300병상 규모의 대형 시설을 갖추게 된다.[166]

진출을 희망한 여러 의료기관 중 아르테메드 그룹이 가장 먼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일류 의료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이었다.[167]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재활치료, 영상진단 분야에서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자의 움직임 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있는 첨단설비를 보유하고 있다.[168] 또한 향후 뮌헨이공대 의대, 독일 우주항공센터, 상하이과학기술대학원 면역연구소 등과 협력해 첨단 의료기술과 임상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라는 아르테메드 그룹의 운영계획 역시 상하이 시험구의 위상에 부합해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169]

---

164) 「自贸区医疗服务实体项目落地取得进展」(2015. 4. 16), 『人民网』, http://sh.people.com.cn/n/2015/0416/c134768-24523645.html(검색일: 2015. 8. 8).

165) 「上海自贸医疗服务业放行 首家外商独资医院将落户」(2014. 7. 23), 『新华网』, http://www.cq.xinhuanet.com/2014-07/23/c_1111766973.htm(검색일: 2015. 8. 8).

166) 「自贸区医疗服务实体项目落地取得进展」(2015. 4. 16), 『人民网』, http://sh.people.com.cn/n/2015/0416/c134768-24523645.html(검색일: 2015. 8. 8).

167)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29, 상하이).

168) 「上海自贸区首家外资医院签约成功背后的故事」(2014. 9. 29), 『健康界』, http://www.cn-healthcare.com/article/20140929/content-461021.html(검색일: 2015. 8. 8).

아르테메드 그룹은 비록 독자로 진출했으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기관들과 밀접히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하이 시험구 진출 시 '실버마운틴 캐피탈(银山资本)'과 함께 '산롄(三联)', '와이가오차오의료보건센터(外高桥医保中心)'와 MOU를 맺었다. 이 중 실버마운틴 캐피탈은 중국계 창립인이 운영하고 있는 홍콩 투자회자로서 아르테메드 그룹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롄은 상하이 푸둥신구 국유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상하이와이가오차오그룹(上海外高桥(集团)有限公司) 산하의 토지개발회사이며, 와이가오차오의료보건센터는 와이가오차오 내 유일한 병원으로 아르테메드 그룹의 병원은 이 보건센터 옆에 지어질 예정이다. 아르테메드 그룹은 향후 와이가오차오의료보건센터와 협력해, 중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진료서비스는 중국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등 중국의 의료개혁 사업에 시범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70]

나) Towako(永远幸)[171]

토와코는 시험관 아기 분야에서 일본 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의료기관이다. 1990년 일본 고마쓰에 처음 여성병원을 설립하였고, 도쿄, 오사카, 뉴욕 등지에서 여성병원 및 불임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172] 중국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아 상하이 시험구 설립 전부터 상하이에 소규모 진료소를

169) 「上海自贸区首家外资医院签约成功背后的故事」(2014. 9. 29), 『健康界』, http://www.cn-healthcare.com/article/20140929/content-461021.html(검색일: 2015. 8. 8).

170) 银山资本(실버마운틴캐피탈) 홈페이지, http://www.silvermountain.com.cn(검색일: 2015. 10. 14); 「自贸区首家外资医院可刷医保卡 项目进入全面启动阶段」(2015. 4. 15), 『和讯网』, http://insurance.hexun.com/2015-04-15/174963894.html(검색일: 2015. 10. 14); 중국 푸단대학교 공공위생학원 교수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171)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29, 상하이), 토와코 관계자 인터뷰(2015. 9. 16, 상하이)를 바탕으로 작성함.

172) 永远幸(토와코) 홈페이지, http://www.towako.com.cn(검색일: 2015. 10. 14).

운영했고, 상하이 병원들과 기술협력을 하는 등 꾸준히 의료서비스 교류를 해왔다.[173]

상하이 시험구에 외자 의료기관의 독자 진출이 허용되자 소규모 진료소가 아닌 병원 진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4년 7월 와이가오차오에 진출을 확정하였다. 시험구 진출 소식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된 아르테메드 그룹과 달리 언론 노출이 없이 진출하였으며,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진출 소식이 정식으로 공표될 예정이다.[174] 현재 건설 중인 병원은 2015년 10월 완공될 예정으로 아르테메드보다 먼저 개원하게 되며, 불임치료 전문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가정의학과, 내과 등의 여러 진료과목을 운영할 계획이다.[175]

토와코 관계자에 따르면, 시험구 진출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독자 진출이 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수속이 간편했기 때문이다. 상하이 시험구는 행정수속 간소화를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1개월은 넘게 걸릴 병원 진출 관련 수속이 시험구에서는 1주일 만에 완료되었다.[176]

또한 토와코가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토와코가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첨단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상하이 정부는 선진 의료서비스를 갖춘 의료기관의 진출을 절실히 바라고 있어, 이러한 조건에 부합했던 토와코의 진출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었다.[177]

---

173) 토와코 관계자 인터뷰(2015. 9. 16, 상하이).

174)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29, 상하이).

175) 토와코 관계자 인터뷰(2015. 9. 16, 상하이).

176) 토와코 관계자 인터뷰(2015. 9. 16, 상하이).

177) 토와코 관계자 인터뷰(2015. 9. 16, 상하이).

다. 법률

1) 주요 내용

상하이 시험구는 2013년 발표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에서 중국 법률사무소와 외국 법률사무소의 업무협력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2014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 · 외 법률사무소 업무협력 방식 및 시스템 시범업무를 탐색하는 것에 관한 방안」,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 · 외 변호사 법률고문 상호파견 실시방법」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개방조치를 발표했다(표 4-7 참고).

첫째, 외국 법률사무소와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연합경영(联营)'을 허용하였다. 중국에 이미 대표처를 설립한 외국 법률사무소는 중국 법률사무소와 협의하여 시험구 내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중 · 외 법률사무소가 양측의 법적 지위, 명칭, 재무, 민법상의 책임은 독립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롭게 설립된 사무소에 수임된 법률업무 중 자국의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수행하거나 국제법률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양측이 공동 출자해 동업이나 합작 형식으로 협력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중 · 외 법률사무소가 소속 변호사를 '법률 고문' 자격으로 서로의 기관에 파견해 자문업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중국 법률사무소의 중국 변호사가 외국 법률사무소에 파견되어 중국 법률 관련 자문을 할 수 있고,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 소속 변호사 역시 중국 법률사무소에 파견되어 자국 법률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때 몇 가지 제한요건이 있는데, 법률 고문을 상호 파견하는 중 · 외 법률사무소는 최소 한 쪽이 상하이 시험구 내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며, 파견 인원은 3명 이하로 제한된다.

표 4-7. 상하이 시험구의 법률서비스 분야 주요 개방조치

발표시기	발표 문건명	주요 내용
2013. 9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 중국 법률사무소와 외국 법률사무소 업무 협력 방식 모색
2014. 1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 · 외 법률사무소 업무협력 방식 및 시스템 시범업무를 탐색하는 것에 관한 방안 (上海市司法局关于在中国(上海)) 自由贸易试验区探索密切中外律师事务所业务合作方式和机制试点工作方案)」	- 시험구 내 중 · 외 법률사무소 연합경영(联营) 허용 - 시험구 내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는 중국 법률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소속 변호사를 '법률 고문' 자격으로 상호 파견 가능
2014. 7	「2014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4年修订)」	- 법률 자문서비스 투자 제한 - 외국 법률사무소는 대표처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2014. 11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 · 외 변호사 법률고문 상호파견 실시방법(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互派律师担任法律顾问的实施办法)」,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 · 외 변호사사무소 제휴 형태 운영에 관한 방법(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联营的实施办法)」	- 법률 고문을 상호파견 하는 중 · 외 법률사무소는 중 · 외 한 쪽이 시험구에 기관을 설립해야 함 - 양측은 법률 고문만을 파견하는 법적관계로, 상호 파견 시 상하이시 사법국에 등록 필요 - 파견 인원 수는 3명 이내
2015. 4	「2015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 외국 법률사무소는 대표처 형식으로만 중국 진출 가능 - 중국 법률 사무 종사 및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파트너십(合伙人) 금지 -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의 중국 변호사 고용 금지 - 외국 법률사무소가 고용한 보조인력은 법률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음

자료: 国务院(2013c),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http://www.gov.cn/jrzg/2013-09/27/content_2496302.htm(검색일: 2015. 7. 8); 司法部(2014), 「上海市司法局关于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探索密切中外律师事务所业务合作方式和机制试点工作方案」, http://www.moj.gov.cn/lsgzgzzds/content/2015-04/21/content_6052539.htm?node=278(검색일: 2015. 7. 8);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4. 7. 1), 『凤凰网』, http://news.ifeng.com/a/20140701/40958904_0.shtml(검색일: 2015. 6. 22); 「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转发市司法局制订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互派律师担任法律顾问的实施办法》,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联营的实施办法》的通知」(2014. 11. 18), 『上海政府法制信息网』, http://www.shanghailaw.gov.cn/fzbChinese/infodb/htmlfile/0000007632/0000007632.html(검색일: 2015. 6. 22); 国务院(2015c),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5/content_2856650.htm(검색일: 2015. 7. 8).

2) 추진 배경

개방조치 후 발표된 중국 측 언론자료 및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서

비스 개방조치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외국 법률사무소의 선진 경영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중국 법률사무소는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곳이 많으나 직원 교육, 인력 관리 등 법률사무소 경영 시스템은 아직 취약한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선진 경영시스템을 습득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법률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법률사무소로 발전하고자 한다.

둘째,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행하는 다른 개방조치에 따라 생겨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시험구에서는 금융 · 증권 · 지식재산권 · 항공 등 분야에서 여러 개방조치가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법률사무소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않은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는 중국과 외국 법률이 혼재된 사안도 많다. 이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 많은 외국 변호사 ·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경험을 쌓는 한편, 중국 · 외국 법률 장벽에 부딪히는 일이 없이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법률서비스 분야 개방 압력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FTA, TPP 등 자유무역협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은 상대국에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험구에서 관련 개방조치를 시험적으로 실행해 봄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시장 개방 압력에 대비하고자 한다.[178]

178) 杨建锋(2014),「上海自贸区法律服务业的开放与监管创新」,『WTO与国际经贸治理』(2014年 第12期), pp. 90~91;「上海自贸区法律服务对外开放的政策正式落地」(2015),『上海律师』(2015年 第01期), http://www.lawyers.org.cn/info/5d453ea5018d48d9aa63e3e07b0cf455 (검색일: 2015. 6. 19).

3) 평가

중국은 이번 개방조치가 두 가지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첫째, 홍콩과 마카오에만 허용되던 △ 법률 고문 파견 △ 연합경영 방식의 협력을 다른 국가들에도 확대 허용했기 때문이다. 외국 법률사무소의 경우 이전에는 중국 법률사무소와 '위탁' 형식으로만 협력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합경영' 방식의 업무협력이 가능해졌다. 둘째, 법률 고문을 '상호'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홍콩 · 마카오 법률사무소도 자신의 변호사를 중국 법률사무소에 파견하는 일방향(一方向) 파견만 가능하였지만 이번 개방조치에 따라 중국 변호사 역시 외국 법률사무소에 파견이 가능해져, 이전에 비해 개방도에 큰 진전이 있다는 입장이다.[179]

이에 반해 외국 측은 이번 조치에 관해 중국처럼 높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법률시장 개방도가 2단계에 위치한 중국에 기대하는 것은 3단계의 개방조치로, 중 · 외 법률사무소 간의 동업이나 합작을 허용하거나 외국 법률사무소가 중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데, 상하이 시험구 개방조치에서는 이러한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2단계 범위 내에서 업무협력 방식에만 조금 변화를 준 것으로, CEPA에 따라 최근 광둥성에서 홍콩 · 마카오 법률 사무소에 '파트너십 연합경영(合伙联营)'을 허용해준 것과 비교해 보아도 개방도가 높지 않다.[180]

---

179) 「上海自贸区法律服务对外开放的政策正式落地」(2015), 『上海律师』(2015年 第01期), http://www.lawyers.org.cn/info/5d453ea5018d48d9aa63e3e07b0cf455(검색일: 2015. 6. 19).

180) 홍콩 · 마카오와의 협력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온 광둥성은 2014년 8월 「광둥성에서 홍콩 · 마카오 법률사무소와 중국(본토) 법률사무소간 파트너십 제휴 운영(合伙联营)을 실행하는 것에 관한 시행방법(广东省司法厅关于香港特别行政区和澳门特别行政区律师事务所与内地律师事务所在广东省实行合伙联营的试行办法)」을 발표하고, 홍콩 · 마카오 법률사무소와 광둥성 법률사무소가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해 역내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표 4-8. 중 · 외 법률사무소간 업무협력 분야 개방도 비교	
구분	업무 범위
시험구 외의 지역	-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는 중국 법률사무소와 장기적 위탁관계를 맺고, 중국 관련 법률사무를 중국 법률사무소에 위임 - 중국 법률사무소 또는 중국 변호사와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을 공동으로 하는 연합체 구성 불가 - 중국 법률사무소와 함께 연합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불가
시험구의 개방조치	- 중 · 외 법률사무소 연합경영(联营) 허용 △ 중국, 외국 법률사무 분담 수행, 국제법률 사무 협력 수행 △ 양 법률사무소는 법적 지위, 명칭, 재무, 민사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유지 - 중 · 외 법률사무소는 소속 변호사를 '법률 고문'의 자격으로 상호 파견 가능
광둥성의 대홍콩 · 마카오 법률사무소 개방조치	- 중 · 외 법률사무소 파트너십 연합경영(合伙联营) 허용 △ 광둥성 법률사무소와 홍콩 · 마카오 법률사무소가 공동 출자(지분비율 제한: 광둥성 측의 지분이 더 높아야 하며, 홍콩 · 마카오 측의 지분은 30~49%가 되어야 함) △ 연합경영 법률사무소의 명의로 역내외 법률서비스를 제공, 법적 책임 공동 부담 △ 선전 첸하이(前海), 광저우 난샤(南沙), 주하이 헝친(横琴) 세 개 지역에만 설립 가능

자료: 国务院(2001),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61860.htm(검색일: 2015. 7. 21); 司法部(2001), 「关于执行《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的规定」,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3/content_62105.htm(검색일: 2015. 7. 21); 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2014), 「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转发市司法局制订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互派律师担任法律顾问的实施办法》《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联营的实施办法》的通知」, http://www.shui5.cn/article/67/75256.html(검색일: 2015. 6. 7); 广东省司法厅(2015), 「广东省司法厅关于香港特别行政区和澳门特别行政区律师事务所与内地律师事务所在广东省实行合伙联营的试行办法」, http://www.gd.gov.cn/govpub/bmguifan/201408/t20140814_201480.htm(검색일: 2015. 6. 7).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 한국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시험구의 조치는 이미 실질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업무협력 방식을 공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지금의 협력 방식과 큰 차이가 없기에 시험구 진출 필요성을 느끼

하였다. 본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총 5개의 홍콩 · 중국 파트너십 연합경영(合伙联营) 사무소가 설립을 비준받았다. 그중 가장 먼저 개업을 시작한 것은 광저우 궈신신양(国信信扬) 법률사무소와 홍콩의 Patrick Mak&Tse가 광저우에 설립한 사무소로, 2015년 7월 개업하여 7명의 중국 본토 변호사와 3명의 홍콩 변호사가 근무 중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광둥성 측 법률사무소는 홍콩 법률사무소가 다년간의 법률서비스 경험으로 축적한 경영 기법 및 법률서비스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며, 홍콩 측 법률사무소는 중국 본토 법률시장 접근을 강화하고자 한다. 「全市首家粤港合伙 联营律所在南沙挂牌」(2015. 7. 22), 『南方日报』, http://www.gzns.gov.cn/nsxx/mtkns/201507/t20150722_170364.htm(검색일: 2015. 10. 15); 「5家粤港合伙联营律所其中4家落户深圳前海」(2015. 5. 26),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gangao/2015-05/26/c_127844142.htm(검색일: 2015. 10. 15).

지 못한다고 한다.[181] 또한 오히려 연합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 시험구 내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며 △ 3년 이상 법률사무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일 것 등의 자격 제한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한다.[182]

한 법률사무소 분야 유명 컨설턴트는 이번 조치가 개방도를 크게 높였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불명확하게 운영되었던 부분을 법률로 명확히 해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183]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 법률사무소들은 비공식적이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중국 법률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변호사들을 고용해왔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보통 이를 묵인해왔기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관리감독이 엄격해질 경우 위법 행위로 몰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했다.[184] 그러나 이제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에 따라 외국 법률사무소의 대표처가 '법률 고문 파견' 및 '연합경영' 방식을 활용해 정식으로 중국 법률 서비스를 다룰 수 있게 되었기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185] 중국의 한 법학과 교수 역시 이번 개방조치의 장점으로 외국 법률사무소가 합법적으로 중국법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을 들었다.[186]

---

181) 현지 A법률사무소 관계자 인터뷰(2015. 9. 16, 상하이).

182) 현지 A법률사무소 관계자 인터뷰(2015. 9. 16, 상하이).

183) "Unpacking Baker & McKenzie's Joint Shanghai Operation"(2015. 4. 22), *Big Law Business*, https://bol.bna.com/unpacking-baker-mckenzies-joint-shanghai-operation(검색일: 2015. 6. 19).

184) 현재의 협력방식이 중국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185) "Unpacking Baker & McKenzie's Joint Shanghai Operation"(2015. 4. 22), *Big Law Business*, https://bol.bna.com/unpacking-baker-mckenzies-joint-shanghai-operation(검색일: 2015. 6. 19).

186) 궁바이화(龚柏华) 푸단대 법학과 교수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4) 활용사례

현재까지 상하이 시험구에 연합경영 사무소를 설립한 외국 법률사무소는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가 유일하다. 미국계 법률사무소인 베이커 앤 맥킨지는 2015년 4월 중국 법률사무소 펀쉰(奮迅)과 함께 상하이 시험구에 사무실을 설립하고 연합경영을 시작하였다.

베이커 앤 맥킨지는 세계 각지에 77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1,000여 명의 법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글로벌 법률사무소로, 2013년도 매출액이 25억 4,000만 달러(2조 6,083억여 원)로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지명도가 높다.[187] 중국에는 1993년 진출하였고, 상하이 푸둥신구에 설립된 대표처에는 130여 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188]

베이커 앤 맥킨지의 이러한 높은 국제적 인지도 및 다년간 중국정부와 쌓아온 좋은 관계가 이번 시험구 진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베이커 앤 맥킨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중국 법률사무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중국사업에 관심이 있는 다국적기업 고객 유치에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189]

---

187) 「'세계 최대 로펌' 美 베이커 앤 맥킨지 매출액이…미국계 '베이커 앤 맥킨지' 세계 최대 로펌으로」(2014. 8. 18),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6628(검색일: 2015. 10. 16).

188) Baker&Mckenzie(베이커 앤 맥킨지) 홈페이지(미국 본사). http://www.bakermckenzie.com/aboutus(검색일: 2015. 9. 9); 贝克 · 麦坚(베이커 앤 맥킨지) 홈페이지(중국 지사). http://www.bakermckenzie.com/zh-CHS/China(검색일: 2015. 9. 9).

189) "Baker boss dodgers merger in China move"(2015. 4. 20), *Lawyers Weekly*,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1&ved=0CBwQFjAA&url=http%3A%2F%2Fwww.lawyersweekly.com.au%2Fnews%2F16404-bakers-boss-spruiks-joint-operation-over-mergers&ei=FA2JVfq2Novq8AW2yaLQAg&usg=AFQjCNHF92Vy-PnYBDXFkZAN12LyxG-rHw&sig2=_rk7_WvkysaGaciOtDtrPA&bvm=bv.96339352,d.dGc&cad=rjt(검색일: 2015. 6. 19); 궁바이화(龚柏华) 푸단대 법학과 교수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라. 교육

1) 주요 내용

시험구의 개방조치와 관련해 교육 · 훈련 시장의 개방과 '영리성' 교육 허용에 관한 내용이 특징적이다.

시험구에서는 2013년 9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을 발표하여 18개 영역의 개방을 확대하였는데 여기에 교육훈련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총체방안에서 언급한 교육훈련 분야의 개방은 '중 · 외 합작 경영성 교육훈련기관'과 '중 · 외 합작 경영성 직업기술 훈련기관'의 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영리성 교육기관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했던 것과는 달리 교육훈련기관의 영리추구가 합법화되었다.

총체방안에 이어 2013년 10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외합작 경영성 훈련기관 관리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자유무역시험구 내 설립 방법과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임시방법」에 따르면 '중 · 외 합작 경영성 훈련기관'이란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 합작하여 설립하는, 비공익성 문화교육이나 직업기능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제 기업으로, 학제교육과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할 수 없으며, 종교, 군사, 경찰, 정치 및 당간부 교육 등 특수영역에 종사할 수 없다.[190]

또한 2014년과 2015년에 발표한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에 교육서비스 분야에 관한 개방조치를 명시

190)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2013b),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合作经营性培训机构管理暂行办法」, http://www.china-shftz.gov.cn/PublicInformation.aspx?GID=6ed9ebc5-7d7d-4108-a1e0-666135d04eef&CID=953a259a-1544-4d72-be6a-264677089690&MenuType=(검색일: 2015. 7. 8).

하였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191]에 따르면 교육 분야는 외국 교육기관, 기타 조직, 개인은 중국 국민을 주대상으로 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단독으로는 설립할 수 없지만 합작으로는 설립할 수 있고, 학제가 없는 직업기능 교육은 독자로도 설립할 수 있다.[192] 2015년 발표된 「7차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중국 전 지역에서 시행)」이 비학제형 직업훈련기관의 투자를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높아진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지도목록에서는 비학제형 직업훈련기관의 설립을 단순히 장려류로만 분류하고 있을 뿐 독자나 합자 가능 여부에 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 데 반해, 상하이 시험구 개방조치에서는 비학제형 직업기능 교육의 외자 독자 진출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하이 시험구 개방조치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상하이 교육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교육분야에 있어 개방을 시험하고 있는 만큼 비학제 교육서비스 기업의 독자 진출이 가능한 상태이며, 시험구에 기관(기업)을 등록하게 되면 교육사업 자체는 상하이 내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193]

또한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 · 외 합작 시, 학교 경영자에 대한 자격[194]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외국인투자산업목록(2015년)에서 언

191)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상하이, 톈진, 광둥, 푸젠 자유무역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92)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2014년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없었던 비학제형 직업기능 교육의 독자 허용이 추가되었다.

193) 상하이 교육전문가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194) a. 의무교육 및 군사, 경찰, 정치, 당교 등 특수 분야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b. 외국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학교, 종교 교직원은 중국 경내에 합작학교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학교기관은 종교교육 및 종교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음.
c. 보통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취학 전 교육은 투자 제한류에 해당하며 반드시 중국 측이 주도해야 함(교장, 주요 행정책임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중국 경내에

급된 조건과 일치한다. 기존에는 중 · 외 합자 교육훈련기관 설립 시, 먼저 상무위원회의 결재를 받고 합자회사 설립절차에 따라서 교육부나 인사부의 승인이 필요하였고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부에, 직업기술 훈련기관은 인사부의 승인을 통해 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험구 내에서는 사전 심사제도를 거치지 않고 중 · 외 합작 교육훈련기관을 자유롭

표 4-9. 상하이 시험구의 교육서비스 분야 주요 개방조치

발표시기	발표 문건명	주요 내용
2013년 9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 중외합작 경영성 교육기관, 중외합작 경영성 직업기술훈련 기관 설립 허용
2013년 10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 · 외 합작 경영성 훈련기관관리 임시방법」	- 총체방안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합작훈련기관은 학제교육, 취학 전 교육, 특수 영역의 교육 불가 - 설립조건 : ⓐ 중외합작 측은 반드시 교육훈련 투자 및 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함. ⓑ 선진적인 교육훈련 관리경험, 관리모델, 서비스 모델이 제공 가능하거나, 국제적 수준의 훈련과정, 교사자질, 교학시설, 설비 등이 제공 가능해야 함. - 기업 등록 시 '훈련'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있으나, '학원', '학교', '대학'이라는 단어 사용 불가
2014년 6월	「2014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 경영성 교육훈련기관, 직업기능훈련기관 반드시 합작 투자 - 비경영성 취학 전 교육, 중등직업교육,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등 교육기관 및 비경영성 교육훈련기관, 직업 기능훈련기관은 모두 합작만 허용(분점 설립 불가) - 의무교육, 군사, 경찰 등 특수영역의 교육기관 투자 금지 - 경영성 취학전 교육 · 중등직업교육 · 고등학교 ·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투자 제한
2015년 4월	「2015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 중국국민을 주대상으로 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합작 허용 - 비학제 직업기술교육은 독자 가능

자료: 国务院(2013c), 「中国(上海)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http://www.gov.cn/jrzg/2013-09/27/content_2496302.htm(검색일: 2015. 7. 8);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2013b),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合作经营性培训机构管理暂行办法」, http://www.china-shftz.gov.cn/PublicInformation.aspx?GID=6ed9ebc5-7d7d-4108-a1e0-666135d04eef&CID=953a259a-1544-4d72-be6a-264677089690&MenuType=(검색일: 2015. 7. 8); 国务院(2015c),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5/content_2856650.htm(검색일: 2015. 7. 8);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4. 7. 1), 『凤凰网』, http://news.ifeng.com/a/20140701/40958904_0.shtml(검색일: 2015. 6. 22).

거주해야 함. 이사회,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인원은 전체 인원의 1/2 이상이어야 함). 교육 계획과 과정 교재는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지켜져야 함.

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교육훈련경영 관련 법규의 복잡한 심사와 비준 절차는 해외기업(기관)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였는데, 시험구에서는 이와 같이 심사제도의 간소화를 추진하여 해외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해외 교육훈련기업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현지 파트너 기관이 이를 대행하거나 저작권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협력하여 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대형교육기관이 직접 진출하는 방식이다. 주로 영어 관련 훈련, 취학 전 교육훈련과 같은 일부 영역으로의 진출이 많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이러한 분야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추진 배경

교육분야에서 개방조치의 촉진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배경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첫째, 직업교육 · 훈련 개방은 선진 교육기술(커리큘럼) 및 운영시스템 도입과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의 대형교육기관 유치를 주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양질의 노동력 제고를 위해 직업교육 규모를 확대하고 개혁을 시도하면서 직업교육을 강화해왔다. 또한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매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개인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교육서비스가 필요해졌고, 기존의 전통 교육시스템만으로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생기면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둘째, 공익성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경영성' 훈련기관의 설립을 허용

한 것은 시험구에서 교육서비스 분야 개방을 시험적으로 확대한 것임과 동시에, 그동안 회색지대에 놓여 운영되어온 기업들을 양성화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영리성 교육기관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이 우회적인 형태로 진출 ·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투자 · 세금 유실,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들이 불거졌다. 중국정부는 최근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하이 시험구에서 경영성 직업기술 훈련기관 설립 관련 개방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3) 평가

상하이 시험구 내 교육서비스 개방조치는 영리추구가 가능한 훈련기관을 허용하고, 학제가 없는 직업기능 교육을 독자로 허용한 점은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으나, 시험구에 진출하는 외자기업들에 추가적인 강한 조치가 없다면 외자기업에 끼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시험구 개방분야에 교육을 추가하며 개방실험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서비스 개방보다는 '규범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여겨진다. 시험적인 개방을 통해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개선시켜 자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시험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험구에 진출한 교육서비스 기업은 아직은 없다. 시험구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공간적 범위 및 위치의 제약성, 관련 내용의 모호성으로 기업들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 시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에 위치한 상하이 시험구를 진출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진출기업들은 관련 정책의 공유 및 이해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국인 사업자들도 시험구

정책에 관한 정보 검색 및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유동적인 사항도 많아 관련문의를 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채널보다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5)]

그러나 향후 시장의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른 개방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개방도도 점차 제고될 것이라 전망된다. 특히 상하이 시험구에서 이뤄지는 비학제 직업기능 분야 교육의 독자를 허가한 점을 그 시작점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상기해야 할 것은 개방도가 커야지만 외국기관(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교육'이라는 영역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외자기업(기관) 입장에서는 합작을 통한 진출도 최선이 될 수 있다.

그림 4-3.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교육시장 개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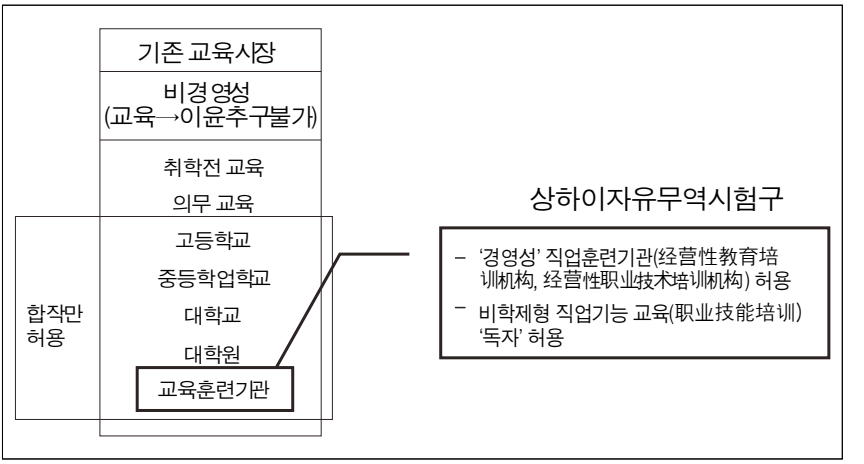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195) 상하이 정부관계자 인터뷰(2015. 9. 18, 상하이).

마. 관광

1) 주요 내용

중국정부는 2013년 9월 발표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에서 시험구 내 중 · 외 합자여행사 설립을 허용하고, 아웃바운드 관광 업무(대만 제외)를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196]

이어 관광 주무부서인 국가여유국에서 2014년 3월 14일 시험구 내 관광업 개혁 심화와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동 의견은 총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다. 그중에서 핵심은 국가 여유국의 중 · 외 합자여행사, 중 · 외 합작여행사 및 외자여행사의 심사와 비준 권한을 상하이 여유국으로 이양한 것이며, 이 밖에도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던 중 · 외 합자여행사가 시험구로

표 4-10.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의 관광 관련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1	중국의 「여유법(旅游法)」과 「여행사조례(旅行社条例)」 규정에 따라 상하이 내 중 · 외 합자여행사, 중 · 외 합작여행사 및 외자여행사의 심사와 비준을 상하이시 여유국에서 처리
2	중 · 외 합자여행사가 시험구로 등록이전을 해도 아웃바운드 업무 경영허가 취득에 관한 기한을 기업 최초설립 시점부터 적용
3	외상투자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중 · 외 합자여행사가 되고 시험구로 등록이전을 하면, 아웃바운드 업무 경영허가 취득에 관한 기한을 중 · 외 합자여행사 설립 시점으로 적용
4	국가여유국이 시험구에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중 · 외 합자여행사, 신청 후 20일(업무일 기준) 이내 비준 처리
5	시험구 내 중 · 외 합자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대만지역 이외) 관리는 상하이 시정부의 방침에 따라 상하이 여유국에서 실시

자료: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2014), 「国家旅游局关于旅游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意见」, http://www.china-shftz.gov.cn/PublicInformation.aspx?GID=82876689-a554-4869-9f0b-9cdc88ac68a3&CID=953a259a-1544-4d72-be6a-264677089690&MenuType=1&navType=0(검색일: 2015. 5. 20).

196) 「国务院印发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2013. 9. 27), 『中国政府网』, http://finance.sina.com.cn/china/20130927/141016872038.shtml(검색일: 2015. 7. 20).

등록이전을 할 경우에 아웃바운드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영허가 취득 기한을 기업 최초설립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4년 6월 29일에는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에서 「중 · 외 합자여행사 설립과 아웃바운드 관광업무 심사 비준에 대한 고지(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中外合资旅行社设立及出境游业务审批告知单, 이하 '고지')」를 발표했다.[197] 고지에서는 중 · 외 합자여행사 설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명시되었다. 중 · 외 합자여행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영업장소와 영업시설(2회선 이상의 전화와 팩스, 복사기 등 오피스 용품과 관광업무 처리를 위한 PC), 최소 3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 최소 경영 관리인원, 가이드 등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 추진배경

중국은 관광업 전반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웃바운드 관광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는 그간 중국인들의 해외 출국을 엄격히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여행사들도 아직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다.[198]

중국정부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불법 혹은 편법으로 이뤄진 외환 밀반출 시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해외 출국을 제한해왔다.[199] 하지만 WTO 가입 이후 개방 확대와 더불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인적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통제가 점차 어려워졌고, 자국 외환보유고가 충분

197) 中华人民共和国(上海)自由贸易实验区企业联盟管理委员会(2014. 6. 29),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中外合资旅行社设立及出境游业务审批告知单」, http://www.930-china.com/news/show.php?itemid=435(검색일: 2015. 7. 20).

198) 중국관광연구원 李创新 박사 인터뷰(2015. 9. 15, 베이징).

199) 푸단대학 관광학과 郭英之 교수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해졌으며, 외환 이동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개방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200]

한편 상하이 시험구가 중 · 외 합자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무 취급 기준을 완화한 것은 국제적으로 우수한 여행사를 유치하여 상하이의 관광 서비스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풀이된다.[201]

3) 평가

상하이 시험구에서 아웃바운드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큰 수준의 변화는 느끼기 어렵다. 우선 관광업 분야는 전체 서비스 분야 가운데 개방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202] 실제로 중국의 DDA 수정 양허안에서는 여행알선대행(여행사)업 외에 관광업에 포함되는 호텔업이나 레스토랑에 대해서 대부분 개방했다.

한 · 중 FTA에서는 한국 여행사에 아웃바운드 업무 자격을 주는 방안을 협정문 제17장 22조에 포함했다. 양국은 FTA 정식 발효 전 실무 부처(문화관광체육부, 중국여행국)에서 조기 시행을 위해 노력 중이다.[203] 하지만 조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서 아웃바운드 관광업무 취득 조건에 부합한다고 반드시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한편 중국은 상하이 시험구 설립 이후에도 중 · 외 합자일 경우에만 아

---

200) 푸단대학 관광학과 郭英之 교수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201) 「解读上海自贸区旅游开放政策:外资旅行社首先要练"内功"」(2014. 11. 28), 『Goldpalm』, http://www.goldpalm.com.cn/news/Detail/5CFB9ABA-CAF1-4804-8EE3-086D8F8DEF2B;jsessionid=A021E06637ACCE96D3AF42468AD4141D(검색일: 2015. 7. 20).

202) 푸단대학 관광학과 郭英之 교수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203) 모두투어 관계자 인터뷰(2015. 9. 22, 베이징).

웃바운드 업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취약한 중국 여행사들의 해외 네트워크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국정부는 시험구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로 아웃바운드 관광업무에 대한 자격 부여 권한을 이양했다. 지방정부는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해외 여행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관광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추가 개방 확대를 통해 향후 관광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활용사례

가) 상하이 시험구 설립 이전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 이전 3개 중외합자여행사가 아웃바운드 업무 자격을 취득하였다. 우선 중뤼투이여행(中旅途易旅游有限公司)[204]사는 전 세계 180개국에서 여행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독일의 투이(TUI)사와 중국여행사총사(中国旅行社总社, CTS)와의 합작여행사이다. 중국여행사총사는 국무원 국유자산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국유기업이며 관광과 부동산, 물류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205] 중뤼투이여행사의 총 지분구조는 투이 측이 75%, 중국여행사총사가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206] 투이는 글로벌 여행업무 취급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 이후 9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였고 2011년 국무원의 비준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아웃바운드 관광업무를 취급하는 중외합자여행사로 비준을 받았다.

미국의 금융 및 여행 서비스 전문업체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2002년

---

204) TUI(途易) China Travel 홈페이지, http://www.tui.cn/mice/about(검색일: 2015. 7. 21).

205) Baidu百科, http://baike.baidu.com/view/1827172.htm(검색일: 2015. 7. 29).

206) TUI(途易) China Travel 홈페이지, http://www.tui.cn/en/AboutUs/Facts-Figures(검색일: 2015. 7. 22).

중국국제여행사(中国国际旅行社, CITS)와 합자를 통해 궈뤼윈퉁여행사(国旅运通旅行社有限公司)[207]를 설립했다. 합자기업은 중국국제여행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아메리칸익스프레스(运通)가 49%의 지분을 갖는다. 중외합자사 궈뤼윈퉁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각각 궈뤼윈퉁여행사(国旅运通旅行社有限公司), 궈뤼윈퉁항공서비스(国旅运通航空服务有限公司), 궈뤼윈퉁화난항공서비스(国旅运通华南航空服务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궈뤼윈퉁은 비즈니스 여행을 전문으로 하며, 항공 티켓, 호텔 예약 등 여행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궈뤼윈퉁도 2011년 국무원 비준을 통해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업무 취급 자격을 부여받았다.

일본 최대 여행사 JTB는 2000년 중국의 중신여행사(中信旅遊总公司)와의 합자를 통해 중국에 진출하였다. 중국 측 파트너인 중신여행사는 중신그룹(CITIC) 산하 자회사로 중국 최초의 비즈니스 관광 전문 여행사이다. 합작업체인 JTB신지위안국제여행사(JTB新纪元国际旅行社有限公司, 이하 'JTB신지위안')[208]는 2010년 중국에서 아웃바운드 여행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요이(悠逸)' 브랜드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여행 서비스라는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다. JTB신지위안은 국내여행,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관광, MICE, 비즈니스 투어 등 다양한 여행서비스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014년에는 오랜 여행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

207) 国旅运通商务旅行 홈페이지, http://www.citsamericanexpress.com/About.asp(검색일: 2015. 7. 21).

208) JTB 新纪元国际旅行社 홈페이지, http://www.ncit.com.cn(검색일: 2015. 7. 21).

나) 상하이 시험구 설립 이후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시작으로 광저우, 톈진, 푸젠 자유무역구 등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개방조치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몇몇 외자업체들은 자유무역구 내 법인 설립을 통해 아웃바운드 업무 취급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후 2014년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 이후 MSC 크루즈 여행사[209]가 중외합자기업으로는 최초로 아웃바운드 자격을 취득하였다. MSC 크루즈는 세계 2위 화물운송업체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그룹 산하의 크루즈 선사[210]로 2014년 말 기준 전 세계 45개 국가에 진출하였으며, 연간 1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211]

MSC 크루즈는 2009년 상강그룹(上港集团) 산하의 상하이국제여객센터(上海国际客运中心有限公司)와 등록 자본 500만 위안 규모로 합자 여행사를 설립하였다. 상하이국제여객센터는 중국에서 가장 큰 항만회사로 2014년 287억 위안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212] 합자 기업명은 MSC 크루즈 여행사(중국명: 디중하이 크루즈 여행사(地中海油轮旅行社))로 항공, 여객선, 호텔 예약 및 기타 관광상품을 취급한다.

한편 크루즈 관광업체가 상하이에 진출한 이유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크루즈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크루즈 관광업체들은 2002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상하이는 중국에서 크루즈 관광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2014년에는 크루즈 기항 수가 전년대비

---

209) 地中海油轮旅行社 홈페이지, http://www.msccruises.com.cn/cn_zh/About-MSC-Cruises/The-Company.aspx(검색일: 2015. 7. 21).

210) MSC크루즈사 소개, http://www.msccruises.co.kr/msc(검색일: 2015. 7. 20).

211) 地中海油轮旅行社 홈페이지, http://www.msccruises.com.cn/cn_zh/About-MSC-Cruises/The-Company.aspx(검색일: 2015. 7. 21).

212) 上海市人民政府(2014. 4. 15),「(一)工业、运输、能源」,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4651/nw32098/nw32119/u21aw865490.html(검색일: 2015. 7. 21).

35.2% 증가한 269회를 기록했다.[213] 크루즈 이용객도 121만 명으로 전년대비 60.6% 증가하였다.

디중하이 크루즈 여행사는 2013년 상하이 시범구에 등록 이전 신청을 하였으며, 2014년에는 상하이 시범구에서 중외합자기업으로는 최초로 아웃바운드 자격을 획득하였다. 디중하이 크루즈 여행사는 상하이 진출 이후 매년 100% 가까운 성장속도를 거듭하고 있다.[214]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주요 도시는 72시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MSC 크루즈 여행사는 기항지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상하이에 있는 2대 여객선 입항시설의 개선작업을 실시하고,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 가능한 면세 쇼핑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215]

표 4-11. 아웃바운드 업무자격 취득 중 · 외 합자여행사 현황(2015년 9월 기준)

	자유무역구 설립 이전			자유무역구 설립 이후
합자회사명	중뤼투이여행사 (中旅途易旅游有限公司)	궈뤼윈퉁여행사 (国旅运通旅行社有限公司)	JTB신지위안국제여행사 (JTB新纪元国际旅行社有限公司)	디중하이 크루즈 여행사 (地中海油轮旅行社)
파트너사	TUI(독일) - 중국여행사총사(CTS)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미국) - 중국국제여행사(CITS)	JTB(일본) - 중신여행사(CITIC)	MSC(이탈리아) - 상하이국제여객센터
비준시기	2010년	2010년	2010년	2014년
설립지역	베이징	베이징	-	상하이
특징	-	비즈니스 여행 전문	비즈니스, MICE 여행 전문	크루즈 관광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213) 朱彬姣, 颜晨广(2015),「上海邮轮船供业的发展及问题研究」,『港口航运』, 第2期, p. 59.

214)「自贸区内首家合资旅行社 花落地中海邮轮旅行社」(2014. 4. 15),『证券时报网』, http://stock.stcn.com/common/finalpage/edNews/2014/20140415/450884011226.shtml(검색일: 2015. 6. 10).

215)「自贸区内首家合资旅行社 花落地中海邮轮旅行社」(2014. 4. 15),『证券时报网』, http://stock.stcn.com/common/finalpage/edNews/2014/20140415/450884011226.shtml(검색일: 2015. 6. 10).

바. 콘텐츠[216]

1) 주요 내용

상하이 시험구에서 문화산업 분야는 크게 콘텐츠(공연업 및 오락시설 운영)와 게임(콘솔게임기 생산 및 판매) 분야의 개방조치가 이뤄졌다. 2014년 4월 발표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개방 프로젝트 실시 세칙(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 이하 '세칙')」에는 외자기업의 콘솔게임기 생산 및 판매와 외국자본의 독자적인 공연기획사(外资演出经纪机构), 공연장 설립 등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었다.[217]

표 4-12. 중국 게임기 시장 규제 추이

시기	주요 내용
2000년 6월	「전자 게임 경영장소 전문 관리 의견 통지(关于开展电子游戏经营场所专项治理意见的通知)」 실시에 따라 새로운 전자 게임 경영장소 허가 불가 및 중국 내 전자 게임 장비, 부품 생산 및 판매 금지 실시
2013년 9월	상하이 시험구 정식 개소 후 게임 장비 생산 및 판매, 공연기획, 오락장소, 부가가치통신망(增值电信), 국제운수관리, 국제해운선박관리, 신용조사(资信调查) 등 23개 서비스업 개방조치 실시
2014년 1월	중국 국무원이 정식으로 외자기업이 게임 장비의 생산 및 판매 허가(문화 주무부처에서 내용 심사한 게임 장비에 限)
2014년 4월	상하이 시험구 내 외자게임기업의 게임기 생산과 판매에 관한 세부 규칙 발표(「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개방 프로젝트 실시 세칙(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

자료: 易观智库(2014), 「游戏机 "解禁" 后 中国TV游戏的蓝图与挑战」,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CCYQFjAAahUKEwjysKGd_5DGAhXOerwKHUw8AJg&url=http%3A%2F%2Fenfodesk.com%2FSMinisite%2Fnewinfo%2Fmeetingdown-id-116.html&ei=P2Z-VbKVBs718QXM-IDACQ&usg=AFQjCNHmXFhIXN-FcsvdB4zdwP8bdNt6lQ&sig2=3_-5Gy-CvqrAzHM46JPmww(검색일: 2015. 6. 11); 上海市人民政府(2014. 4. 21), 「市政府办公厅印发市文广影视局等制订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32419/nw32510/nw32512/u26aw40125.html(검색일: 2015. 8. 8).

216) 콘텐츠 분야 중 상하이 시험구에서 개방을 확대한 콘솔게임과 오락장소, 공연기획 분야만을 대상으로 함.

217) 「上海自贸区将允许设立外商独资娱乐场所」(2014. 4. 21), 『人民网』, http://politics.people.com.cn/n/2014/0421/c1001-24923312.html(검색일: 2015. 10. 11).

세칙에 따르면 우선 콘솔게임기는 문화부 주관부처의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상하이 시험구에서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 이는 2000년 이후 약 13년 만에 규제가 없어진 사례다. 해당 기업은 상하이 시험구 내 공상부문의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이후, 판매 심의 신청을 하면 20일(업무일) 이내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콘솔게임기(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었을 뿐 콘텐츠(소프트웨어) 유통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어 세칙에 따르면 상하이 시험구에서는 외자 공연기획사가 100% 독자 지분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시험구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외자 공연기획사에 한해 영업성 공연(상업공연) 허가증 신청이 가능해졌다. 상업공연의 경우 자유무역구 안에서 이뤄질 경우 해당 관리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며, 상하이시(자유무역구 외)에서 공연을 진행할 경우 상하이시 문화방송영상관리국(文广影视局)에서 허용여부를 심의한다.

또한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시험구 내 공연장 등의 오락장소(娱乐场所) 설립도 가능해졌다.[218] 시험구에서 영업허가를 취득한 외자기업에 한해 오락경영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상하이 시험구에 등록한 업체들은 보세구 정책 등 관련 우대정책 혜택이 제공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상하이 둥팡후이원 국제문화서비스무역(上海东方汇文国际文化服务贸易有限公司)에 따르면 외자기업이 자유무역구에 법인을 설립하면 ① 자유무역구 해관정책 ② 자유무역구 외화정책 ③ 자유무역구 금융정책 ④ 자유무역구 재정정책 ⑤ 기타 특별지원자금 정책을 적용받게 된다.[219] 이 경우 설비 수입에 관한 세금 면제,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등에 대해서 혜택이 부여된다.

218) 오락장소는 노래와 춤을 추는 오락장, PC방, 기타 오락장 등으로 구분됨.

219)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산업 총괄 기업 관계자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한편 상하이 시험구는 개방조치가 이뤄진 게임기 생산 및 판매 종사, 외자 공연기획사, 공연장, 오락장소 경영활동 상황에 대해 상하이 문화시장 경영주체 관리 시스템에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220]

표 4-13.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개방 프로젝트 실시 세칙: 문화산업

분야	주요 내용
공연기획사	- 외상독자 공연기획사 설립 허용, 상하이시 전역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 자유무역구 내 영업성 공연을 할 경우,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에 신청 필요 - 상하이시 내에서 영업성 공연을 할 경우, 상하이시 문화방송영상관리국(文广影视局)에 신청 필요
오락장소(공연장 포함)	- 자유무역구 내 영업허가를 취득한 외상투자기업은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에 '오락경영허가증(娱乐经营许可证)' 신청 가능

자료: 上海市人民政府(2014. 4. 21),「市政府办公厅印发市文广影视局等制订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32419/nw32510/nw32512/u26aw40125.html(검색일: 2015. 8. 8).

2) 추진배경

중국은 체제 유지 및 사회 안정을 위해 사상이나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관 업무는 선전부(宣传部)에서 담당하고 있다.[221]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다양한 콘텐츠가 유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중국 공연 분야는 전통극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술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조성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또한 산업화, 시장화가 부족하며,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이른바 80허우(80後), 90허우(90後)들은

220) 上海市人民政府(2014. 4. 21),「市政府办公厅印发市文广影视局等制订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32419/nw32510/nw32512/u26aw40125.html(검색일: 2015. 8. 8).

221) 베이징대학 예술학원 관계자 인터뷰(2015. 9. 14, 베이징).

해외경험도 많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습득하면서 문화상품 소비수요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양적 발전과 더불어 질적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시험구를 통한 개방이 아직까지 문화산업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222]

특히 시험구에서 개방이 확대된 공연업 분야는 아직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 외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는 소득수준이 문화소비를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연업 분야 개방은 중국이 아직 경쟁력이 부족한 전문인력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시켜 산업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중국정부는 극장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향후 공연업 규모 확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223] 결국 다양한 외자 기업이 들어와서 공연의 수준을 올리고, 공연문화를 개선하겠지만 아직까지 전국 단위로 시장이 확대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 평가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에 이르러서야 문화콘텐츠 분야를 산업화하였으며, 자국산업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빠르게 규모가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문화산업 전반의 개방도도 높지 않다.

이는 DDA 수정 양허안과 최근 중국이 체결한 FTA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예컨대 가장 최근에 타결된 한 · 중 FTA에서 공연기획사 분야에서 진일보한 개방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외상투자

222) 중국 문화부 산하 국유기업(四海一家) 공연기획 담당자 면담(2015. 9. 14, 베이징).

223) 베이징대학 예술학원 관계자 인터뷰(2015. 9. 14, 베이징).

가이드에서도 개방이 허용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유리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자유무역구에서는 독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 중 FTA에서의 조항이 더 진일보된 개방조치라 판단하기도 어렵다.

한편 공연을 포함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으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적극적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국 시장에서 성공사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지화 추진으로 현지에 맞는 콘텐츠 제작과 시스템화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임 분야는 콘솔게임기 생산에 대한 규제를 없애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진출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폐쇄적으로 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이미 게임시장의 주도권이 클라이언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활용사례

상하이 시험구에서 콘솔게임기 관련 규제가 해제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관련 외자기업의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 오랜 기간 유통이 금지된 탓에 중국 콘솔게임 분야가 온라인 게임 등으로 대체되어 현 단계에서는 시장규모는 작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224]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4년 5월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스퉁(百事通, BesTV)과 합자한 바이쟈허(百家合)를 통해 게임 콘텐츠 유통을 할 예정이다.[225] 이어 소니는 상하이의

224) 「游戏机解禁“姗姗来迟” 索尼微软逆袭中国」(2015. 8. 1), 『新浪财经』, http://finance.sina.com.cn/360desktop/roll/20150801/002522847948.shtml(검색일: 2015. 12. 1).

문화기업 둥팡밍주(东方明珠)와 합자 회사 설립을 통해 자유무역구에 진출했다.[226] 소니는 자사의 콘솔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lay Station)을 중국에서 생산 및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상하이 시험구 설립 이후 2015년 8월까지 CJ E&M, PMC(이상 한국), Media Asia, 네덜란더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Nederlander Ent, 이하 '네덜란더 엔터') 등 5개의 외국계 문화기업이 진출했다.[227] 투자규모는 총 4억 달러 규모이며, 분야별로는 상하이 시험구에서 개방된 공연기획과 오락시설이 모두 포함되었다.[228]

한국의 CJ E&M은 2010년 SMG 등과 자본 협력을 통해 아주연창(亚洲联创)을 설립하면서 처음 중국 문화시장에 진출하였다. CJ E&M은 아주연창 플랫폼을 통해 '맘마미아', '캣츠' 등 브로드웨이 뮤지컬 수입 외에도 한국 창작극 '김종욱 찾기' 등 5개 콘텐츠를 현지화 작업을 거쳐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상연하였다.

CJ E&M은 2012년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 이후 공연분야 개방이 이뤄지면서 단독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하이 전역에서 공연 기획이 가능해졌다. CJ E&M은 중국 문화산업의 상업화가 아직 초기 단계이나 5년 내 큰 성장을 예상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동부 연해 대도시는 이미 소득수준이 1만 달러를 넘고 있어 문화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망했다.[229]

---

225) 「微软独资游戏机工厂落户上海自贸区：3天拿到营业执照」(2014. 5. 24), 『Techweb』, http://www.techweb.com.cn/it/2014-05-24/2040054.shtml(검색일: 2015. 10. 8).

226) 「索尼落户上海自贸区, 将发售 PS4」(2014. 5. 27), 『TechNode』, http://cn.technode.com/post/2014-05-27/sony-ps4-shanghai(검색일: 2015. 10. 9).

227) 상하이 자유무역구 문화산업 총괄 기업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228) 상하이 자유무역구 문화산업 총괄 기업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229) CJ E&M 관계자 인터뷰(2015. 9. 18, 상하이).

네덜란더 엔터는 미국 브로드웨이(Broadway)에서 1912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연기획사 중 하나이다. 네덜란더 엔터는 2005년 9월 중국 문화부가 외국자본의 공연산업 투자를 허용하면서 중국 진출을 준비했다. 이어 2006년 베이징의 타임 뉴센츄리 엔터테인먼트와 합작을 통해 진출했다. 네덜란더 엔터는 2014년 말 기준 베이징, 상하이, 난징, 쑤저우, 항저우, 닝보, 시안, 우한, 푸저우 등에서 뮤지컬 공연사업을 진행 중이다.[230]

또한 네덜란더 엔터는 상하이 시험구에 처음 설립된 외국계 공연기획사이다. 향후 티켓 판매, 관리, 경영, 홍보, 마케팅, 광고 등 전체 현장 공연업 관련 업무를 취급할 예정이다. 또한 네덜란더 엔터는 중국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0~2,500석 규모의 전용극장 4~5개를 운영하며, 뉴욕, 런던과 더불어 상하이를 세계 공연시장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231]

그 밖에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로 유명한 PMC 프로덕션은 2014년부터 상하이에서 장기공연을 하고 있으며, 최근 상하이 시험구에 법인을 등록하였다.

---

230) 倪德伦中国业务概览, http://www.nederlanderworld.com/nwecn_cn.aspx(검색일: 2015. 8. 12).

231) 「自贸区舞台引来百老汇巨头」(2014. 10. 30), 『文汇报』, http://whb.news365.com.cn/yw/201410/t20141030_1393055.html(검색일: 2015. 8. 12).

제5장 결론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총평
2. 시사점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총평

가.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에 대한 평가

상하이에서 가장 먼저 추진된 자유무역시험구는 국내 · 외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경제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232]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세계경제에서의 주도적 지위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TPP 등에 대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의 해관총서가 관할하는 보세구에서는 타 부처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새로운 개혁, 개방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방 보호주의를 타파하고 국내 지자체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단지나 시범구와는 차별화되는 국가급 특구가 조성될 필요도 존재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범한 상하이 시험구가 조성을 시작한 지도 2015년 10월로 2년이 넘었다. 당초 상하이 시험구가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의 첨병으로 활약하면서 파격적인 개방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현재까지 그 개방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리커창 총리의 주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진척도나 개방수준에 대해서는 총리 자신도 “네거티브 리스트가 아직도 길다”고 비판할 정도이다.[233]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6개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과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를 비교했을 때도 시험구의 개방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32)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관계자 인터뷰(2015. 9. 9, 베이징) 내용.

233) “Li who will not be obeyed; Shanghai’s Free Trade Zone”(2014. 10. 11), *The Economist*.

이를 위해 먼저 연구대상인 중국의 현 개방수준과 개방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비교대상인 18개 업종 중 본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분야는 6개이며, 법률, 문화(영화, 방송, 녹음), 금융(보험, 은행)이 포함된다. 이 중 녹음을 제외한 5개 분야의 STRI가 작게는 0.429(영화)에서 크게는 방송(0.784)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제한이 존재한다. 이는 다시 말해 해당 분야의 개방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표 3-1 참고). 또한 杨长湧(2015)의 분석에 포함된 법률, 금융, 교육, 문화, 의료 중 법률서비스 시장이 유일하게 우선적인 개방대상이고, 나머지 4개 분야는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는 인정하면서도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234]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률서비스 시장은 개방도가 낮으면서 우선적인 개방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기타 4개 분야는 낮은 개방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해 신중한 개방대상으로 논의된다.

그렇다면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행되는 개방조치에는 이들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개방이 시행되고 있는가? 상하이 시험구 조성 초기 발표된 「총체방안」에서는 6대 확대개방 조치대상으로 금융, 해상운송,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가 명시되었으며,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금융, 법률, 문화, 의료, 교육과 함께 관광도 포함되었다. 따라서 상하이 시험구는 개방확대 대상을 선정할 때 중국 서비스시장의 대외개방 현황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하이 시험구에서 진행된 분야별 개방조치를 분석한 결과, 파격적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률서비스의 개방조치는 외국 법률사무소가 기대하는 수준, 즉 중국 측과의 동업 또는 합작, 중국 변호사

234) 杨长湧(2015), 「我国扩大服务业对外开放的战略思路研究」, 『国际贸易』, 第4期, p. 63.

의 직접고용 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의료서비스는 외국인 독자의 의 · 병원 설립을 일시 허용했다가 다시 제한함으로써 과거로 회귀한 상황이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민감한 분야인 영화, 방송, 온라인 게임 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 게임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도 낮은 콘솔게임이나 고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지역적 제약이 있어 전국적인 영향력은 낮은 공연 분야만을 개방하는 등 개방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그 범주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상하이 시험구에서의 조치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겠으나, 외국 금융회사의 진입 관점에서 볼 때는 기존에 이미 개방된 분야에 한해 그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 서비스 분야 개방의 지체 원인

그렇다면 상하이 시험구에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이 예상보다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상하이 시험구의 본질은 개방보다는 개혁의 성격이 더 강하다. 상하이 시험구의 조성목표와 중점업무 중에는 정부기능의 전환이 가장 먼저 제시되며, 현지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시험구의 핵심을 정부 직능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시험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방정책도 개방을 통한 외자유입이 최종목적이 아니라 내부제도개혁의 기제로 삼겠다는 의도가 더 강하다.

둘째, 지방정부 주도의 개혁개방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상하이 시험구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라는 명칭에서도 확인되듯이 중국 전역으로의 확대를 염두에 둔 개혁개방의 국가급 시험대이며, 중앙정부는 상하이시 정부에 상당 부분의 재량권을 위임함으로써 시험구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하이 시험구가 기획하는 개혁개방조치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심의와 비준 및 관계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이 순탄하지는 않다. 실제로 금융분야 개방의 경우, 시험구 조성 초기부터 국내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금융 감독관리기관 간의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예상에 못 미치는 개혁개방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상하이시 정부의 업무처리 스타일도 서비스 개방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 측 전문가는 상하이는 최초의 PFTZ로서 서비스 무역 개방을 중심으로 하나, 혁신적인 조치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상하이 시정부의 업무 특징은 관련 문건 발표가 없으면 섣불리 시행(試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당초 중국정부가 PFTZ에 기대했던 '선행선시(先行先試)'의 실험정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한다.[235] 상하이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상하이발전연구중심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정부 관계자는 "시행에 앞서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기 위해 자주 베이징을 방문해 로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36] 이는 무모한 도전보다는 공인된 조치를 선호하는 상하이시 정부의 신중성을 방증한다.[237]

그러나 상하이 시험구의 서비스 분야 개방속도나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하이 시험구 자체적인 특징보다는 중국 서비스업의 보수성 때문이다. 첫째, 국유대형기관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체제가

235)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관계자 인터뷰(2015. 9. 9, 베이징) 내용.

236) 상하이시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 간담회(2015. 9. 1, 상하이) 내용.

237) 현지 인터뷰에서는 상하이 시험구의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예전보다 적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서비스시장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적극성이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새로운 개방시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을 들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이데올로기나 건국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상적 경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교육, 문화콘텐츠를 들 수 있다. 셋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 또한 대외개방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의료가 있다.

다. 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한 전망

시진핑 주석이 발의한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최근 국내외 최대 화두로 부상하면서 기존에 리커창 총리가 발의한 자유무역시험구가 추진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지의 중국학자는 일대일로와 자유무역시험구 모두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서 동일한 비중을 두고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라고 낙관한다.[238)]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대외개방정책의 핵심으로서, 과거 개혁개방이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연해지역 중심의,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개방이었다면, 일대일로는 육지로 개방의 방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일대일로의 개방은 외자유입보다는 국내요소의 해외진출, 국내 과잉부분의 해외유출(수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면 자유무역시험구의 역할은 개방보다는 (내부)개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외관상으로만 개방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중국은 현재 기술, 경영, 생산요소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를 위해 제도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개혁은 2~3년 내에 이루어

238) 푸단대 관계자 인터뷰(2015. 8. 26, 상하이) 내용.

지는 것이 아니며, 집권 6~7년 이후 전국적으로 파급될 장기적인 사업이다. 또한 시험구로 지정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험구 모델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것이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우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자유무역시험구 추진과 관련하여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즉 일대일로 구상이 투자와 기초시설 건설을 위주로 한 경제협력이라고 할 때 회원국과의 새로운 협력 규칙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WTO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유무역시험구가 새로운 규칙 수립에 시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자유무역시험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239)]

이처럼 자유무역시험구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이견이 없으나 지역 확대 및 대외개방 추진속도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이 많은 편이다. 현재 최소 15개 지역이 3차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기 위해 신청 중이고 부성장급이 중앙정부를 찾아와 로비를 할 정도로 경쟁적이다. 또한 장쑤성의 경우 롄윈강(連雲港)과 쑤저우(蘇州)가 별도로 신청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한데, 이와 같은 경쟁적인 신청은 지자체 실적을 올리기 위한 요인이 크며,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적 요인을 배제할 경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무역시험구를 확대 운영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높지 않다.

대외개방 추진속도에 있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부처간 이익이 충돌하고, 설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서비스 개방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해도 지방정부가 관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

239) 상하이재경대 관계자 인터뷰(2015. 8. 27, 상하이) 내용.

정부가 관리할 때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험구의 본질, 핵심이 '국내제도 개선'에 있으므로 향후에도 서비스 분야 개방은 온건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15년 10월 TPP가 전격 타결됨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당초 상하이 시험구의 조성배경 중에는 TPP 타결에 대비한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이었으며, 조성기간을 3년으로 잡았던 것도 TPP가 2016년까지 타결될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TPP 타결이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빨리 이루어짐에 따라 새롭게 변화할 글로벌 경제협력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서비스시장의 변화요구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상하이 시험구 등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도되는 대외개방도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DRC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도 "TPP 타결이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도입 등 중국의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된다.[240]

2. 시사점

가. 정부에 대한 시사점

1) 한 · 중 FTA 후속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 · 중 FTA 후속협상에서는 상하이 시험구의 조치를 참고하되, 분야별

240) KIEP 북경사무소(2015. 10. 26), 「TPP 타결에 대한 중국 내 평가와 대응」,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p. 11.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중국은 상하이 시험구가 중국 국내에서 가장 개방수준이 높은 지역이 될 것이

표 5-1.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의료, 법률, 교육 분야 애로사항

분야	애로사항	주요 내용(사례)
의료	지분제한	독자병원 설립 불가(외국 측 투자액 2,000만 위안 이상, 중국 측 지분비율 30% 이상 규정)
	중국 측 동업자와의 충돌	병원부지는 중국 측이 정하였는데, 상하이 위생국으로부터 싼값에 구입한 변두리에 잡아서, 홍보와 고객 유치가 매우 어려워짐. 중국 측 파트너가 지방정부와의 인맥으로 얽혀 있어,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 다소 어려움.
	간호사 고용	외국 간호사는 중국 내에서 간호업무 금지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허가증 지역별 발급	타 지역 출장진료시 해당 지역의 허가증을 신청해 발급
	부패	외자의료기관 설립허가를 위해 정부 관계자에게 고액의 뇌물 전달
	병원설립 업무처리 지연	신축 병원시설에 대한 소방, 환경, 위생 등 제반 검토절차의 의도적 지체
	까다로운 설립 요건	부대시설, 기본설비, 의료시설 전반의 인테리어 등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규정 중국인 의료인력 비율 규정
	한국인 중국의대 졸업자의 의사면허 취득 어려움	중국 의학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 유학생의 중국 의사면허증 취득이 어려워 중국 내 의료행위에 제약
법률	FTA 성과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	한 · 중 FTA 법률분야 협상내용은 상하이 시험구 정책과 차이가 없는데 마치 법률분야 성과가 있는 것처럼 오도
	제휴에 따른 비용부담	중국 로펌과 제휴해 중국 로펌 혹은 중국인 변호사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따른 비용 부담 발생
	대표처 인허가에 많은 시간 소요	외국법률사무소 대표처 설립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인허가에 많은 시간 소요
	지방별로 대표처 대표 수에 대한 규정 차이	대표처의 대표자 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지역마다 다르게 해석, 적용해 소규모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
	한국인의 중국 사법고시 응시 허용*	홍콩 영주권자에게는 중국법률 자격시험 기회를 부여하나 외국인은 응시 불가
	대표처의 자격제한, 업무제한	대표처 대표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고, 수행 가능한 업무가 제한됨.
교육	외자 교육서비스기구 설립불가	교육서비스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공상국에 법인등록 후 교육국으로부터 교육서비스 제공 관련 허가증을 받아야 하나, 2003년 이후부터 외국인에게 이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음.

주: *은 건의사항임.

자료: 상하이 우리들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7, 상하이) 내용; 한수궁 성형외과 관계자 인터뷰(2012. 12. 7, 상하이) 내용; 위스덤 치과 관계자 인터뷰(2015. 5. 26, 광저우) 내용; 베이징케어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5, 베이징) 내용; KIEP 내부자료(2012); 법무법인 지평 상하이대표처 관계자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내용; 법무법인 율촌 베이징대표처 관계자 인터뷰(2012. 12. 6, 베이징) 내용; 법무법인 다청 관계자 인터뷰(2012. 12. 6, 베이징) 내용; 외교통상부(2011), 『외국의 통상환경』, p. 231; 대한상공회의소(2010), 『중국 서비스산업 규제조사사업 보고서』, pp. 18~22; 상하이 한솔브레인스쿨 관계자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내용; 백제어학원 관계자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내용.

라고 밝혀 왔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6대 서비스 분야의 개방조치는 중국의 타 지역 또는 중국의 기체결 FTA 수준, 또는 한·중 FTA 협정문 내용에 비해 특별히 개방도가 높지 않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밝히는 대로 상하이 시험구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도일 것이라고 단정지음으로써 우리의 협상폭을 스스로 좁힐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표 5-1]과 같이 현지조사 및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최근까지 중국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꾸준히 조사하여 이러한 애로사항을 후속협상에 반영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중국 서비스 분야 진출지원에 대한 시사점

첫째,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시험구 시행조치가 중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정책변동이 잦으므로, 시험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적 분석하여 국내기업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인 교육분야 종사자에 따르면, 시험구 정책 변동이 잦고 인터넷상으로는 구할 수 없는 정보가 많아, 시험구 진출에 관심 있는 중국기업들도 시험구 관계자를 찾아가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기진출 기업들마저도 시험구에서 이런 정책을 왜 추진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따라서 KOTRA 무역관 등을 통해 시험구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 전달해주고, 自贸区邮报에서 출판한 「自贸区打通关」과 같이 분야별로 시험구 관계자 면담 내용을 알려주는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조치도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분석도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례로 국무원은 2014년 12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복제가능한 개혁시범

사업경험의 확대실시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를 공포하였다. 이 통지에서는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행된 개혁조치 중 투자관리, 무역편리화, 금융, 서비스업 개방, 사중사후 감독관리 등에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조치를 선정하고, 사안별로 공간적 범위와 시한을 지정하였다.[241)]

「통지」에서 서비스업 개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융자리스회사가 주영업업무와 관련된 상업 팩토링(factoring)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신용(资信) 조사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주식제 외자 투자성 회사와 융자리스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등록자본 제한을 두지 않고, 내 · 외자 기업이 콘솔게임기를 생산,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가 있다. 이상의 개방조치는 상무부 주관하에 2015년 6월 30일까지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또한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제반행정업무를 단일창구에서 처리하여 행정효율이 높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계좌(自由贸易帐户)를 통해 역외 위안화 환전과 해외 자금조달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등 한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이 다양하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시험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부문별로 개방 속도와 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개방이 확대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서비스업 발전은 13 · 5 시기에도 중국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2015년 11월 발표된 「13 · 5 규획제정에 관한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

241) 国务院(2014b), 「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검색일: 2015. 11. 11).

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에서는 새로운 산업시스템 구축을 13차 5개년 규획기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적인 서비스업 발전의 가속화, 시장진입 규제완화, 서비스업의 고품질 · 고효율 발전 촉진, 생산형 서비스업의 전문화, 가치사슬의 첨단화 발전 추진, 생활형 서비스업의 세분화 · 고품질화 전환, 제조업을 생산형에서 생산서비스형으로 전환, 관광업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242]

이 「건의」에서 주목할 점은 서비스업 대외개방에 대해 '순서대로 대외개방을 확대(有序扩大服务业对外开放)'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은행, 보험, 증권, 양로 등 시장진입을 확대할 분야를 나열함으로써 모든 서비스 분야가 동시에 전면 개방되는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금융의 경우 '쌍방향' 개방을 언급한 것(扩大金融业双向开放)은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동시에 장려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를 통해 중국이 향후에도 전면개방보다는 업종별로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개방할 계획임을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 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할 때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과 같이 업종별로 개방수준에 차이를 두었다. 이는 서비스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통해 분야별로 개방의 경중과 완급을 조절해 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의 杨长湧(2015)은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모든 분야를 전면 개방하기보다는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개방도가 낮으면서도 대외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은 비(非)민감 분야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언한다.[243] 또한 정치성이나 이데올로기, 핵심기초시

242)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1. 4), 人民日报海外版, 第01版.

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확대에 신중해야 하며, 특히 기초교육, 뉴스미디어, 여론조사는 가장 민감한 분야로 분류하고 엄격한 제한조치를 제안한다.[244]

표 5-2. 중국 서비스업 개방확대의 우선순위

	생산형 서비스업		생활형 서비스업		특징
	주요 업종	주요 세부업종	주요 업종	주요 세부업종	
우선개방	비즈니스서비스	감사	가사서비스	육아보육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 대부분 개방도 낮은 편
		법률	양로서비스		
	전자상거래				
	하이테크서비스	R&D 설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현대 물류	택배			
개방심화	비즈니스서비스	회계	상업, 무역, 물류	소매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 개방도 높은 편
	교통운송	철도화물운송			
		해상운송			
		도로화물운송			
	현대 물류	유통(分销)			
	하이테크서비스	정보기술서비스			
	공정컨설팅				
	설계컨설팅	건축설계			
적절한 개방	금융		교육서비스		중요하나 민감한 분야
	통신		문화서비스		
	교통운송	항공운송	건강서비스	의료	

자료: 杨长湧(2015),「我国扩大服务业对外开放的战略思路研究」,『国际贸易』, 第4期, p. 63.

243) 杨长湧(2015),「我国扩大服务业对外开放的战略思路研究」,『国际贸易』, 第4期, p. 61.
244) 杨长湧(2015),「我国扩大服务业对外开放的战略思路研究」,『国际贸易』, 第4期, p. 62.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본 연구의 대상인 6대 분야 중 중국이 향후 서비스업 개방확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둘 분야는 금융, 법률서비스 분야 등이며, 문화콘텐츠와 교육, 의료분야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생산형 서비스업 육성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주민소득 증대에 따른 서비스 소비증가와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형 서비스업 육성으로 중점업종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가사, 양로, 소매 서비스시장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셋째, 중국시장 진출기업과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관련 DB를 구축하는 이른바 '멘토링 시스템(mentoring system)'을 운영한다.

3) 주요 서비스 부문별 중점방안

① 금융서비스: 한 · 중 FTA의 개방확대 추진과 한 · 중 협력사업 다원화

2014년 말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산업이나 휴대폰 품목의 점유율은 10%대이나, 중국 진출 한국 금융산업의 자산규모(1,442억 위안)는 중국 금융산업 자산규모(186조 5,491억 위안)의 0.077%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 진출 외국 금융자산은 3조 728억 위안으로 우리의 약 21배에 달할 만큼 활발하게 운용되면서 중국 금융업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245] 글로벌 금융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은 우리 금융기관이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 중 FTA 후속협상에서 금융분야의 개방확대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금융분야에 있어 설립형태를 제한하거나 영업범위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 전반적인 개방도는 한국보다 낮다.

245) 제주한중금융협력포럼(2015. 11. 19) 참가안내 브로슈어.

표 5-3. 중국 금융서비스 분야 DDA 양허안 및 주요 FTA와의 비교

	DDA 양허안	한 · 중 FTA	중 · 뉴 FTA	중 · 스위스 FTA
보험	- M1: 재보험, 국제해운 · 항공 · 운송보험, 보험중개업만 허용 - 설립형태 제한 ○손해보험: 지사 또는 외국인 100% 지분 자회사 가능 ○생명보험: 외국인지분율 50% 합작투자 가능 ○보험중개서비스: 외국인 100% 지분 자회사 가능 ○국내지점(internal branching): 보험회사 허용 - 영업범위 제한 ○외국손해보험업자: 외국인과 중국인에게 손해보험의 모든 범위 서비스 제공 가능 ○외국보험업자: 외국인과 중국인에게 건강보험, 개별보험, 단체보험, 연금보험 제공 허용, 재보험 허용 - 면허 제한: 경제적 수요심사 또는 수량제한은 없으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1. WTO 회원국 보험사로 30년 이상 업력 보유 2. 중국에 2년 이상 대표사무소 운영 3. 총자산요건: 50억 달러, 보험중개는 2억 달러 이상 - NT: 외국보험기관은 법으로 지정한 보험 사업은 불가	DDA+ - 설립형태 제한 ○국내지점: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업의 국내지점 허용	DDA- - 영업범위 제한 ○외국보험업자: 제공 가능한 보험 중 개별보험은 제외됨	DDA+ - 설립형태 제한 ○국내지점: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업의 국내지점 허용 ▶ 국내지점 (internal branching) DDA에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JV, 100% 지분허용 한 · 중, 중 · 스위스에서는 중개업의 국내지점 허용
은행	- M1: 자문/기타금융부수서비스, 금융정보제공/교환/금융자료처리서비스만 양허 - 지역 제한: 외국환 및 인민폐 영업 모두 제한 없음 - 고객 제한: 외국환영업은 고객에 대해 제한 없음, 인민폐영업은 중국기업과 중국 고객 허용 - 설립 요건: ○중국 내 자회사 설립: 신청 이전년도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 ○중국 내 지점 설립: 신청 이전년도 총자산 200억 달러 이상 ○중국 내 중외합작은행 또는 중외합작금융회사 설립: 신청 이전년도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 ○인민폐영업: 중국 내 3년 이상 영업 및 2년 연속 흑자 - NT: prudential measures 확인	DDA- -설립 요건: ○중외합작금융회사 설립은 제외	DDA 동일	DDA- -설립 요건: ○중외합작금융회사 설립은 제외 ▶한 · 중 동일

표 5-3. 계속

	DDA 양허안	한 · 중 FTA	중 · 뉴 FTA	중 · 스위스 FTA
증권	- M1: 외국증권사는 B주 시장에 직접 참여 가능 - 외국증권사의 중국 내 대표사무소는 모든 중국 증권거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음 - 외국서비스제공자의 외국인지분율 49%의 합작투자 가능 - 외국증권사 외국인지분율이 1/3을 초과하지 않는 소수지분만 허용하는 합작투자 가능	DDA+ - M1: 한국 서비스제공자가 중국의 관련 법과 규제를 충족하는 경우 중국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 한국증권사 외국인지분율이 49%을 초과하지 않는 소수지분만 허용하는 합작투자 가능(지분율 상한 완화) - 일부 조건을 충족한 합작증권회사의 경우 중개업, 자기자본거래, 자산관리 운영을 점진적으로 허용	DDA- - 외국서비스제공자의 외국인지분율 33%의 합작투자 가능(지분율 상한 강화)	DDA+ - M1: 서비스제공자가 중국의 관련 법과 규제를 충족하는 경우 중국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 증권사 외국인지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소수지분만 허용하는 합작투자 가능(지분율 상한 완화) - 일부 조건을 충족한 합작증권회사의 경우 중개업, 자기자본거래, 자산관리 운영을 점진적으로 허용 ▶한 · 중 동일

주: DDA 수정양허안을 기준으로 개방수준이 DDA 수준이면 DDA와 동일, DDA 양허보다 높으면 DDA+, DDA 양허보다 낮으면 DDA-로 표시함.
자료: 본문 내용 및 KIEP 내부자료(2015) 정리.

상하이 시험구에서 2015년 10월 발표된 금융 '신40조'에서는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및 지역의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시험구에 합자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 지분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246] 따라서 중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도 향후 금융분야 후속협상에서 이를 활용해 한국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46) 中国人民银行, 商务部,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 外汇局, 上海市人民政府(2015. 10. 29), 「中国人民银行 商务部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 外汇局 上海市人民政府关于印发《进一步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金融开放创新试点 加快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方案》的通知」,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2970998/index.html(검색일: 2015. 11. 10).

그러나 설사 한 · 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한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중국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된다고 해도 국유금융기관의 독과점 구도가 유지되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도 치열한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한국계 금융기관이 지금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과를 단기간에 거두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증대하는 한편, 한 · 중 금융협력사업을 다원화하여 금융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한 · 중 공동 사모펀드 설립 추진, 한 · 중 산업단지 공동설립 추진, 중국 금융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계발, 한 · 중 공동으로 금융상품 설계 및 교차판매 방안 논의, 중국 내 금융리스회사 등에 대한 전략적 지분투자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247)]

② 의료서비스: 한 · 중 협력사업 강화

중국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이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합자 설립 시 2,000만 위안의 자본금 조항 외에 지분비율 제한 조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각국의 DDA 양허안을 비교해 보면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 비해서도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외국인 독자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자국의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고 있어 단시일 내에 전면적인 완화를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 · 중 FTA 후속협상에서 상하이 시험구 및 기타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되었던 독자투자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중국의 수요를 고려한 한 · 중 협력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47) 제주한중금융협력포럼(2015. 11. 19) 참가안내 브로슈어.

표 5-4. 중국 의료서비스 분야 DDA 양허안 및 주요 FTA와의 비교

DDA 양허안	한 · 중 FTA	중 · 뉴 FTA	중 · 스위스 FTA
- 외국인 다수지분의 합작투자형태로 병원이나 전문병원 설립 가능 (단 수량제한) - M4: 자국에서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중국정부의 허가를 취득한 후에 서비스 제공 가능(기간은 6개월이며 1년 연장 가능) - NT: 합작투자 회사나 전문병원의 의사 대다수는 중국 국적 요건	DDA 동일	DDA 동일	DDA 동일

주: DDA 수정양허안을 기준으로 개방수준이 DDA 수준이면 DDA와 동일, DDA 양허보다 높으면 DDA+, DDA 양허보다 낮으면 DDA-로 표시함.
자료: 본문 내용 및 KIEP 내부자료(2015) 정리.

2장에서 분석했듯이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미국, 한국 등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의료자원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248]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건강산업을 미래 혁신산업으로 보고, 원력진료, 원격수술, 원격의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249] 따라서 원격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③ 법률서비스: 개방 확대 요구 및 법률사무소 협력 시범사업 추진

중국의 법률서비스 분야는 외국과의 교류증가로 인해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1992년 처음으로 외국 법률사무소가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 대표처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지역적 제한이 사라졌다. 그러나 외국 변호사는 여전히 중국 법률과 관련된 업무 취급이 불가하며, 외국 법률사무소에서 중국

248) 「朴대통령 따라 중국간 병원 · 제약사 '흐뭇'한 성과」(2015. 9. 4), 『뉴스1』, http://news1.kr/articles/?2407648(검색일: 2015. 9. 5).

249) 「朴대통령 방문 계기, 中 원격의료 시장 진출 본격화」(2015. 9. 4),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0413273118716(검색일: 2015. 9. 5).

인 변호사 고용이 금지되어 있어 직접진출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상하이 시험구에서는 한국 법률사무소가 공동 운영(joint operation) 형태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한국 법률사무소는 중국 법률사무소와 외국법 자문 교환이 가능해져서 상하이 시험구에서 이루어진 조치만을 놓고 볼 때는 한국보다 개방도가 높은 편이다.

중국은 현재 홍콩 · 마카오 법률사무소가 광둥성에서 중국 법률사무소와 '파트너십 연합경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게 허락하였다. 이는 중국과 홍콩 · 마카오 양측이 공동출자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상하이 시험구에서 허용된 개방조치보다 높은 수준이다.[250] 이 조치에 따라 일부 홍콩 법률사무소가 중국 내륙 법률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둥성 법률사무소와 파트너십을 맺고 진출하고 있다. 비록 홍콩 · 마카오는 중국의 일부로 한국과는 입장이 다르긴 하나, 우리 정부는 이 점을 활용하여 한 · 중 FTA 추가협상 시 한국에도 파트너십 연합경영을 허용하도록

표 5-5. 중국 법률서비스 분야 DDA 양허안 및 주요 FTA와의 비교

DDA 양허안	한 · 중 FTA	중 · 뉴 FTA	중 · 스위스 FTA
- 대표사무소 설립 허용, 영리추구활동 허용 - 대표사무소의 업무 범위 규정 - 변호사의 자격 제한(2년 이상의 경력 요건) - NT: 외국인변호사의 거주기간 제한(1년에 6개월 이상 거주 불가), 대표사무소의 중국인 변호사 고용 불가	DDA+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한국 로펌 대표사무소는(joint operation) 형태로 법률서비스 제공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한국 대표사무소는 중국 로펌과 외국법 자문사 교환 가능	DDA 동일	DDA 동일

주: DDA 수정양허안을 기준으로 개방수준이 DDA 수준이면 DDA와 동일, DDA 양허보다 높으면 DDA+, DDA 양허보다 낮으면 DDA-로 표시함.
자료: 본문 내용 및 KIEP 내부자료(2015) 정리.

250) 한 한국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상하이 시험구 수준의 개방은 큰 의미가 없으나, 파트너십 연합경영 수준의 개방은 활용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힘(법무법인 지평 상하이대표처 관계자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방요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이 이러한 개방을 광둥성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중국에 조성될 한 · 중 산업단지에서 협력사업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법률사무소의 중국 법률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 지식재산권 등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법률서비스 분야 및 선진 경영시스템 등 분야에서 한국 법률사무소가 가진 강점을 어필한다면 향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교육서비스: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해소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은 외국교육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사업 진출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은 주로 비학제 분야나 일부 자격증 교육훈련기관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며, 교육사업이 아닌 자문, 교육투자회사 등의 방식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이 중국 내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외합작 형식으로만 가능하나 다수의 지분 확보는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교육 분야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비스업 12 · 5 발전규획」에서 생산형, 생활형, 농촌, 해양 등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인 육성산업을 제시할 때도 교육 분야는 제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교육을 산업이나 시장 차원이 아닌 사업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의무교육, 특수교육 분야는 대외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며, 교육을 시장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현재 상하이 시험구에서 개방된 직업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정도가 개방의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의 개방수준을 비교할 때도 중국이 한국보다 개방도가 높으며 한·중 FTA에서도 기존보다 높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에 개방된 분야에서 중국 진출 및 운영상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교육업체의 최대 애로사항은 중국의 제도적 한계에 관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교육 분야에서 합작의 형태만으로 외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자기업은 합법적으로 독자, 합자 등의 형태로 진출이 불가능하다.

중국 진출 한국 교육기업의 경우, 처음에는 중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외국어교육, 전문자격증, 입시교육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영리 교육이 불가능하다 보니, '합작기업법', '외자기업법'을 통한 자문회사, 문화사업회사 등의 형태로 진출하였다. 또한 학교에 관한 법은 존재하지만 한국의 학원에 해당하는 법이 아직 미흡하여 진출 교육기업(학원)들이 의례적으로 벌금을 내고 있는 현실이다.

진출기업들의 전문인력 확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학원이 법적 테두리의 보호 및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 종사하는 강사들의 비자 문제도 운영에 크게 부담을 주고 있다. 비자 문제로 인한 금전적 부담과 고용

표 5-6. 중국 교육서비스 분야 DDA 양허안 및 주요 FTA와의 비교

DDA 양허안	한·중 FTA	중·뉴 FTA	중·스위스 FTA
- 외국인 다수지분의 합작학교 설립 가능 - M4: 중국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받거나 고용될 때 외국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가능 - NT M4: 학사 이상의 학력, 2년 이상 경력으로 전문가 직함이나 자격증이 필요	DDA 동일	DDA 동일	DDA 동일

주: DDA 수정양허안을 기준으로 개방수준이 DDA 수준이면 DDA와 동일, DDA 양허보다 높으면 DDA+, DDA 양허보다 낮으면 DDA-로 표시함.
자료: 본문 내용 및 KIEP 내부자료(2015) 정리.

불안정성으로 채용이 어려워지고 이에 운영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많아졌다. 이런 상황 아래, 진출한 교육기업은 관리감독의 부재, 투자 및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합작의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롭고, 교육국, 공상국 등 여러 정부부처의 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므로, 이러한 분야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⑤ 관광서비스: 아웃바운드 업무 자격 부여와 상호시장 활성화

2015년 타결된 한 · 중 FTA에서는 별도의 합의사항을 통해 한국 여행사에 아웃바운드 운영 사업 자격 부여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FTA가 아직 정식 발효되지 않았지만 양국 주무부처에서는 우선적으로 아웃바운드 취급 자격 부여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 · 중 FTA 협정문에서는 아웃바운드 업무 자격 부여 문제를 '협력사항'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향후 추가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이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해외 송금이 반드시 지정된 업체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등

표 5-7. 중국 관광(여행사) 서비스 분야 DDA 양허안 및 주요 FTA와의 비교

DDA 양허안	한 · 중 FTA	중 · 뉴 FTA	중 · 스위스 FTA
- NT: 합작투자 또는 외국인소유 여행알선대행업체는 중국인의 해외관광, 홍콩, 마카오, 대만 관광 취급 불가	DDA 동일 -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장려 - 한국 회사가 중국 관련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 관광 회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사업 운영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협정문 제17장, 22조)	DDA 동일	DDA 동일

주: DDA 수정양허안을 기준으로 개방수준이 DDA 수준이면 DDA와 동일, DDA 양허보다 높으면 DDA+, DDA 양허보다 낮으면 DDA-로 표시함.
자료: 본문 내용 및 KIEP 내부자료(2015) 정리.

의 불편이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여행사간 거래에서 미수거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웃바운드 관광에 있어 연관되는 외환거래와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에 대한 여행상품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 관광상품이 주로 서울, 제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상품구성이 단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의 다양성보다는 단순 가격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중소여행사를 중심으로 악성 가격경쟁이 촉발되어 패키지 상품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가격이 내려갔다.[251] 심지어 2015년 상반기 발생한 메르스 파동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베이징-서울 간 3박 4일 패키지 상품은 최하 500위안까지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였다.[252]

일부에서 지나친 가격 경쟁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에 대한 만족도도 낮다. 이에 209개 중국 전담여행사들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기로 했다.[253] 중국도 관광시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2013년 「여유법(旅游法, 관광법)」을 제정하였다. 「여유법」에서도 관광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초저가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하거나 지방별로 법 해석을 달리하여 실제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양국이 공조하여 아웃바운드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51) 모두투어 관계자 인터뷰(2015. 9. 22, 베이징).

252) 모두투어 관계자 인터뷰(2015. 9. 22, 베이징).

253)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 품질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서」(2015. 10. 23),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642&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22&pSearchType=01&pSearchWord=(검색일: 2015. 10. 31).

⑥ 콘텐츠 서비스: 규제완화와 교류 활성화

중국은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강하다. 중국정부는 상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분야에 있어 창작물 비중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기업과의 제작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도시 인프라 건설에 있어 극장, 공연장 등의 문화 인프라 비중을 높이는 추세이다. 반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개방수준은 높지 않다. 이는 아직까지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254] 또한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사실상 외국자본 진출이 쉽지는 않다. 대체로 외자기업은 투자 시에 지분제한을 받고 있으며, TV 등 미디어 분야에는 제작 협력만 가능하며, 전반적으로 한국의 개방도가 높다.

상하이 등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되는 조치도 결국 공연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연업은 중국에서 상업화된 문화로 정착되기 시작한 역사가 짧고, 시장규모도 아직 크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 콘텐츠 제작을 비롯하여 공연업 전반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방을 확대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 · 중 FTA 문화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의 DDA 수정 양허안보다 개방폭이 확대되어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기업의 합작 진출 내용이 협정문에 포함되었으나 이 또한 상하이 시험구에서 진행하는 수준으로 이뤄졌고, 여전히 콘텐츠 제작에는 제약을 받는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빠르게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고, 개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제작 등 영역에서의 변화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

254) 세계 최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40.4로 미국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78.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박정수, 최봉현(2010),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pp. 133~134).

따라서 후속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도 개방폭 확대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은 소비되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모바일의 확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서비스 공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사전 규제로 인해서 적시에 서비스가 불가능한 문제, 여전히 자본 투자에 있어서 경영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후 한 · 중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한 · 중 문화산업 포럼' 및 '한 · 중 문화산업 교류회' 등 정례화된 대화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개방폭 확대보다는 비정형화된 사업 환경의 투명성 제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제3국 진출 등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5-8. 중국 콘텐츠 서비스(공연) 분야 DDA 양허안 및 주요 FTA와의 비교

DDA 양허안	한 · 중 FTA	중 · 뉴 FTA	중 · 스위스 FTA
미양허	DDA+ - 공연중개기관이나 공연장법인회사를 합작투자회사 형태로 설립 가능(외국인지분율 49% 이하) - 공연중개기관은 상업적 공연 참여 가능 - 공연장법인회사는 상업적 공연 개최 가능	DDA 동일	DDA 동일

주: DDA 수정양허안을 기준으로 개방수준이 DDA 수준이면 DDA와 동일, DDA 양허보다 높으면 DDA+, DDA 양허보다 낮으면 DDA-로 표시함.
자료: 본문 내용 및 KIEP 내부자료(2015) 정리.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상하이 시험구를 위시한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대외개방 확대전략

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서비스시장 전반의 체질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대두된다.

1) 상하이 시험구의 활용방안

상하이 시험구 조성 이후 신규 등록한 기업 수는 1만 개를 넘는다고 하나, 대부분은 무역 관련 중국계 기업이며, 본 연구의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외국계 기업의 진출사례는 현재까지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상하이 시험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상하이 시험구를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국기업과의 교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험구에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경외투자 서비스플랫폼(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境外投资服务平台)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중국기업과의 교류가 가능하다.

실제로 상하이 시험구 조성 이후 2년간 등록된 경외투자기업 수는 607개, 중국 측 투자총액도 184억 3,900만 달러에 달했다(누계 기준). 특히 2015년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9월간 등록된 경외투자사업 수가 385건, 중국 측 투자총액은 135억 5,500만 달러에 달해 시험구가 소재한 푸둥신구 전체 경외투자액의 98%를 차지했다. 이는 시험구 조성 이전인 2013년 말까지 푸둥신구의 경외투자사업 수는 누계로 572건, 중국 측 투자총액도 55억 5,600만 달러(누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할 때 급격한 증가이다.[255]

255)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2015b), 「上海自贸区对外投资爆发式增长」(10월 27일), http://www.china-shftz.gov.cn/NewsDetail.aspx?NID=e0bbd8af-2743-4d3d-8dda-1f787ddbecc7&CID=f672f518-99a3-4789-8964-1335104906b4&MenuType=2&navType=0(검색일: 2015. 11. 10).

여기에는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행되는 간소화된 투자등록 절차와 자유무역계좌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둘째, 상하이 시험구를 통해 중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적격경내개인투자자(QDII 2)의 해외투자가 허용되는 시범운영 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 중에 상하이 시험구가 포함되어 있다. 시험구에서 QDII 2가 시행된다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해외 금융상품, 부동산, 실물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시험구에서 개인의 연간 환전 한도액이 현재의 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확대된다면 이들 자본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자금원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선진적인 경영제도 도입을 어필해 정부지원을 유도한다. 중국정부는 시험구에 진출한 외자기업을 국내 시스템 개선, 개혁을 위한 시험대상으로 활용하는 면도 있으므로, 이를 어필할 경우 특수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일례로 의료분야의 아르테메드 그룹은 독자 진출이지만 중국계 투자회사, 와이가오차오의료보건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중국의료보험 적용 등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책적 시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협력주체간의 관계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현지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상하이 시험구에 유치된 외국기업은 각 분야에서 국제적인 지명도나 선진기술을 보유했거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므로, 시험구 진출을 추진할 때 자사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시험구에 어필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의료분야의 경우 중국정부가 비영리 의료기관 확대에 관심이 많으므로 영리사업에 비영리사업을 조금 추가해 진출한다면 진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256)]

넷째, 기업 설립의 편의를 활용한다. 상하이 시험구는 등록지가 반드시 영업장소여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므로, 설립절차의 편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표 5-9]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외국기업은 총 1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관부처도 공상행정관리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등 다양하고, 통상적으로 설립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상하이 시험구에서는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지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행정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2주 이내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시험구에서는 심의비준제가 아니고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제(備案制)를 적용하기 때문에 구비서류 역시 간소하다. 즉, 기존에는 투자자의 회계감

표 5-9. 중국의 외자 현지법인 설립절차

단계	업무	주관부처
1	기업명 사전신청	공상행정관리국
2	프로젝트 인허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	설립 신청(투자허가 신청)	대외경제무역위원회
4	통계등기	통계국
5	설립등기 영업허가증(영업집조) 신청	공상행정관리국
6	인감제작	공안국
7	기업번호 등기(기업코드 신청)	기술감독국
8	외환등기	외환관리국
9	은행계좌 개설	은행
10	세무등기	세무국
11	세관등기	세관
12	재정등기	재정국
13	취업허가증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자료: KOTRA(2015. 8), 진출형태별 절차,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NationPDF/101046/101046_410_5080591.pdf(검색일: 2015. 11. 10).

256) 중국 푸단대학교 공공위생학원 교수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내용.

사 보고서, 타당성 연구보고서 등이 필수였으나, 시험구에서는 주체자격증명(主體資格證明)으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상하이 이외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특히 광둥은 선전경제특구 조성 당시에도 도전정신이 강해 다양한 개혁을 시도한 바 있고, 이미 홍콩, 마카오와의 CEPA를 통해 서비스 부문에서 다양한 개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유무역시험구에서도 향후 광둥에서 시도되는 조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시진핑 주석 역시 주석 임명 후 첫 번째 방문지로 광둥성을 택함으로써 광둥성 개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2)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 협력 전략

첫째, 중국 민영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대외개방전략은 조세혜택, 부지제공 등 인센티브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제도혁신을 통해 국내외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는 지금까지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외투기업에 대한 유형, 무형의 진입장벽이 점차 철폐된다는 의미에서 유리한 요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유기업에 밀려 위축되어 있던 중국 민영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도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막강한 경쟁자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리한 요인일 수도 있다.

중국 서비스 분야의 대외개방은 국유기업의 독점, 이익집단의 존재 등 국내 환경 특징으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비스시장의 질을 높이고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중국 입장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개혁과 개방이 불가피하다. 중국 서비스시장의 거대성을 감안할 때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 하더라도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중국정부는 전면개방에 앞서 자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자국 민영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건전한 경쟁 환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을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방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국내기업 파트너를 찾는 것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둘째, 중국 측 수요를 고려한 부문별, 지역별 접근과 새로운 시장 창출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교육서비스의 경우 교육정보화와 직업교육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영의료기관의 성장을 목표로 하며, 법률서비스는 법률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와 금융에서는 해외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13 · 5 기간에도 유지될 전망이므로, 기업 차원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중국 지역시장의 수요를 발굴해 진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외국인투자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므로,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신흥업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계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수준이 지체된 중국의 교육, 의료, 법률 등의 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중국정부의 최종목표는 상하이 시험구를 통해 개혁개방조치를 시험해 본 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인 제도정비는 기업의 설립, 경영에 자율성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육 분

야 등의 사례에서 확인된 이른바 '회색지대'에 있던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우회적 진출을 지양하고 제도권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를 통해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한 · 중 FTA 후속협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시행한 지 2년에 불과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 만큼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시로 정책이 변화하여 연구결과가 모든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도 연구의 한계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선택한 6개 분야 이외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와 상하이 이외 3개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연구는 후속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2월 25일)

김명아. 2014.「중국 5개 금융종합개혁시험구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금융개혁 정책 운용현황과 시사점」.『중국금융시장포커스』, 겨울호. 자본시장연구원.

노수연, 정지현, 강준구, 오종혁, 김홍원, 이한나. 2014.『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2010.『중국 서비스산업 규제조사사업 보고서』.

박성철. 2014.「Global Healthcare Frontier 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컨퍼런스 발표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월 4일)

박정수, 최봉현. 2010.『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법무부. 2015.「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외국법자문사법」개정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2015.「한 · 중 FTA 정식서명, 중장기 미래 협력의 제도적 틀 마련」. 보도자료. (6월 1일)

성한경, 강준구, 배승빈. 2007.『한 · 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건용, 정기택. 2002.『WTO ODA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전략 연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한순. 2011.「중국교육의 시장화와 사립학교의 성장」.『동북아문화연구』, 제26집.

오기형. 2012.「한중 FTA서비스시장-법률시장 중심으로」. KIEP 세미나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 따른 영향과 대책' 발표자료. (10월 19일).

외교통상부. 2011. 『외국의 통상환경』.
이강국. 2015.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북스타.
이정미, 김미란, 김은영, 체재은, 최원목, 유예리. 2012. 「한-중 FTA 교육서비스 분야 협상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치훈. 2015. 「2014년 중국 금융시장 평가와 2015년 전망」.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1월 2일)
임병익. 2015. 「최근 중국금융환경 변화와 한중금융협력방향」. 대외정책포럼 발표자료. (5월 14일)
자본시장연구원. 2014. 「중국 자산운용업 현황 및 전망」.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겨울호.
_____. 2015a. 「중국 보험산업 동향 및 전망」.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봄호.
제주한중금융협력포럼(2015. 11. 19) 참가안내 브로슈어.
_____. 2015b. 「중국 증권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봄호.
최경은. 2014. 「중국 여유법 시행 이후 관광 동향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4-09.
최송자. 2005. 「중국의 법률서비스시장개방 및 한국의 문제점」. 『한국동북아논총』, 제37집.
최승록. 2008. 「한국 로펌의 중국 법률서비스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대한 한·중 공동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의료서비스 중국진출 현황분석 및 맞춤형 진출 전략 연구」.
한국은행. 2012. 「중국 서비스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KIEP 내부자료. 2012.
_____. 2015.
KIEP 북경사무소. 2015. 「TPP 타결에 대한 중국 내 평가와 대응」.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월 26일)

[영문, 일문자료]

"Li who will not be obeyed; Shanghai's Free Trade Zone." 2014. *The Economist*. (10월 11일)

Riccardi, Lorenzo. 2015. *Investing in China through Free Trade Zones*.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World Economic Forum. 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중문자료]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2014.『2014中国卫生和计划生育统计年鉴』.

国家统计局. 2014.『中国统计年鉴2014』.

成刚. 2013.「我国民办教育产业战略研究」.『复旦教育论坛』, 第11卷 第2期.

裴长洪 等. 2015.『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试验思路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我国律师数突破25万 律师业加速两极分化」. 2014.『上海法治报』. B01. (6월 24일)

杨建锋. 2014.「上海自贸区法律服务业的开放与监管创新」.『WTO与国际经贸治理』(2014年 第12期).

杨长湧. 2015.「我国扩大服务业对外开放的战略思路研究」.『国际贸易』, 第4期.

袁志刚. 2013.『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新战略研究』. 格致出版社.

李钢, 聂平香, 李西林. 2015.「新时期我国扩大服务业开放的战略与实施路径」.『中国经贸』, 第3期.

朱彬姣, 颜晨广. 2015.「上海邮轮船供业的发展及问题研究」.『港口航运』, 第2期.

陈绍福. 2012.「中国民营医院发展回顾与2012年展望」.『中国民营医院发展报告(1984-2012)』.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5. 人民日报海外版, 第01版. (11월 4일)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2015.『2015中国保险市场年报』.

中国出版工作者协会游戏出版物工作工作委员会. 2015. 「2014年中国游戏产业报告」.
肖林. 2015.『国家试验 :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制度设计』. 格致出版社, 上海人民出版社.
Yuanta. 2015. 「中国旅游需求看俏」. 『产业初次报告』. (6월 23일).
iResearch. 2015. 「中国在线旅游度假行业研究报告」.

[국문 온라인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TOUR.GO). 국가별관광통계. http://www.tour.go.kr(검색일: 2015. 7. 20).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 품질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서」. 2015.『문화체육관광부』. (10월 23일).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4642&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22&pSearchType=01&pSearchWord=(검색일: 2015. 10. 31).
「朴대통령 방문 계기, 中 원격의료 시장 진출 본격화」. 2015.『아시아경제』. (9월 4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0413273118716 (검색일: 2015. 9. 5).
「朴대통령 따라 중국간 병원 · 제약사 '흐뭇'한 성과」. 2015.『뉴스1』. (9월 4일). http://news1.kr/articles/?2407648(검색일: 2015. 9. 5).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이대로 좋은가」. 2015.『대한변협신문』. (4월 6일).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511(검색일: 2015. 6. 22).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 · 중 FTA 협정문」. http://www.fta.go.kr/cn/doc/1(검색일: 2015. 7. 8).
「'세계 최대 로펌' 美 베이커 앤 맥킨지 매출액이…미국계 '베이커 앤 맥킨지' 세계 최대 로펌으로」. 2014.『법률신문』. (8월 18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6628(검색일: 2015. 10. 16).

「日미쓰이스미토모銀, 상하이 자유무역계좌 개설」. 2015. 『매일경제』. (2월 16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57353(검색일: 2015. 11. 10).

「中 다청-美 덴톤스 통합…세계 최대규모 로펌으로」. 2015. 『한국경제』. (2월 4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20340251 (검색일: 2015. 6. 22).

「中,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내 외국 금융사도 CD 발행 허용」. 2015. 『이데일리』. (6월 8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21&newsid=03030726609399752&DCD=A00802&OutLnkChk=Y(검색일: 2015. 8. 19).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board/view.kto?id=423699&isNotice=true&instanceId=294&rnum=0 (검색일: 2015. 7. 2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5. 12. 6).

「한 · 중 FTA 이르면 연내 발효… 법률시장 개방은 1단계만」. 2015. 『법률신문』. (6월 2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427(검색일: 2015. 10. 15).

한 · 중 FTA 협정문 제17장 22조. http://www.fta.go.kr/cn/doc/1(검색일: 2015. 10. 13).

KOTRA. 2015. 8. 진출형태별 절차.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NationPDF/101046/101046_410_5080591.pdf(검색일: 2015. 11. 10).

KOTRA 글로벌윈도우(2015. 5. 14). 「상하이자유무역구 시범기간 중간점검」.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8503&ARTICLE_SE=20307(검색일: 2015. 11. 10).

KOTRA상하이 KBC. 2009.「中, 금융위기가 낳은 황금알 온라인 교육시장」. (8. 10). http://www.globalwindow.org/GW/china/trade/info/overseamarket-detail.html?&MENU_CD=M10115&SCH_TYPE=SCH_CN&MODE=L&SCH_CMMDY_CATE_CD=00000&SCH_TRADE_CD=1039126&ARTICLE_ID=2106435&UPPER_MENU_CD=M10114&NM_KO=&BBS_ID=10&NM_EN=&SCH_VALUE=%EA%B5%90%EC%9C%A1%EA%B8%B0%EA%B4%80+%EC%A7%84%EC%B6%9C&MENU_STEP=3&Page=1&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BKCODE=&RowCountPerPage=10&RowCountPerPage=10&ARTICLE_SE=&SCH_END_DT=(검색일: 2015. 7. 7).

MSC크루즈사 소개. http://www.msccruises.co.kr/msc(검색일: 2015. 7. 20).

[영문 온라인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A Look at Global Travel Trends." 2014. *The New York Times.* (3월 26일). http://www.nytimes.com/2014/03/30/travel/a-look-at-global-travel-trends.html?_r=0(검색일: 2015. 7. 25).

Baker&Mckenzie(베이커 앤 맥킨지) 홈페이지(미국 본사). http://www.bakermckenzie.com/aboutus(검색일: 2015. 9. 9).

"Baker boss dodgers merger in China move." 2015. *Lawyers Weekly.* (4월 20일).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1&ved=0CBwQFjAA&url=http%3A%2F%2Fwww.lawyersweekly.com.au%2Fnews%2F16404-bakers-boss-spruiks-joint-operation-over-mergers&ei=FA2JVfq2Novq8AW2yaLQAg&usg=AFQjCNHF92Vy-PnYBDXFkZAN12LyxG-rHw&sig2=_rk7_WvkysaGaciOtDtrPA&bvm=bv.96339352,d.dGc&cad=rjt(검색일: 2015. 6. 19).

CEIC Database(검색일: 2015. 6. 5; 6. 16; 6. 20; 7. 20; 7. 29; 10. 1; 10. 29; 11. 22).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2015), Country Profile: China Mainland. https://worldcompetitiveness.imd.org/countryprofile/CN(검색일: 2015. 11. 11).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TRI(검색일: 2015. 10. 26).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검색일: 2015. 7. 9).

"Unpacking Baker & McKenzie's Joint Shanghai Operation." 2015. *Big Law Business*. (4월 22일). https://bol.bna.com/unpacking-baker-mckenzies-joint-shanghai-operation(검색일: 2015. 6. 19).

World Economic Forum. 2015.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5." http://www3.weforum.org/docs/TT15/WEF_TTCR_Chapter1.1_2015.pdf(검색일: 2015. 7. 24).

WTO DDA 양허안. http://i-tip.wto.org/services/(S(idqwttybsrky3yjkxpbnxhj2))/SearchResultGats.aspx(검색일: 2015. 7. 8).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http://apps.who.int/nha/database(검색일: 2015. 7. 9).

[중문 온라인자료]

WTCF. 2014. 「中国公民出境(城市)旅游消费市场调查报告」. http://en.wtcf.travel/download/report201409cn.pdf(검색일: 2015. 7. 20).

「2006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2009.『新华社』. (3월 16일). http://www.gov.cn/test/2009-03/16/content_1260216.htm(검색일: 2015. 12. 21).

「2007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2009.『新华社』. (3월 16일). http://www.gov.cn/test/2009-03/16/content_1260188.htm(검색일: 2015. 12. 21).

「2008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2009.『新华社』. (3월 16일). http://www.gov.cn/

test/2009-03/16/content_1260198.htm(검색일: 2015. 12. 21).
「2009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2009.『新华社』. (3월 16일). http://www.gov.cn/test/2009-03/16/content_1260221.htm(검색일: 2015. 12. 21).
「2010年中国演出市场收入达108亿元」. 2011.『财经网』. (1월 21일). http://www.caijing.com.cn/2011-01-21/110624920.html(검색일: 2015. 12. 1).
「2012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2012.『新华社』. (3월 15일). http://www.gov.cn/test/2012-03/15/content_2067314.htm(검색일: 2015. 12. 21).
「2013年国务院政府工作报告」. 2013.『新华社』. (3월 19일). http://www.gov.cn/test/2013-03/19/content_2357136.htm(검색일: 2015. 12. 21).
「2014中国教育市场发展报告」. 2014.『中搜资讯』. (12월 4일). http://zixun.zhongsou.com/faster/24/05614300836c532bb0de16c6c5c14655.html(검색일: 2015. 6. 5).
2015年我国民办教育行业布局分析. 2015. 中国报告大厅. (6월 16일). http://www.chinabgao.com/k/mbjyxy/17512.html(검색일: 2015. 6. 15).
「2015年政府工作报告」. 2015.『人民网』. (3월 5일). http://www.people.com.cn/n/2015/0305/c347407-26643598.html(검색일: 2015. 12. 21).
「5家粤港合伙联营律所其中4家落户深圳前海」. 2015.『新华网』. (5월 26일). http://news.xinhuanet.com/gangao/2015-05/26/c_127844142.htm(검색일: 2015. 10. 15).
科学技术部. 2012.「关于印发现代服务业科技发展十二五专项规划的通知」. http://www.most.gov.cn/fggw/zfwj/zfwj2012/201202/t20120222_92619.htm(검색일: 2015. 11. 10).
工业和信息化部. 2012.「《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十二五"发展规划》印发」.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1293907/n11368223/14542600.html(검색일: 2015. 11. 10).

广东省司法厅. 2015. 「广东省司法厅关于香港特别行政区和澳门特别行政区律师事务所与内地律师事务所在广东省实行合伙联营的试行办法」. http://www.gd.gov.cn/govpub/bmguifan/201408/t20140814_201480.htm (검색일: 2015. 6. 7).

教育部. 2000. 「教育网站与教育网校暂行管理办法」.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7062/201401/162898.html(검색일: 2015. 7. 8).

_____. 2010a. 「2009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1485/201008/xxgk_93763.html(검색일: 2015. 6. 16).

_____. 2010b.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838/201008/93704.html(검색일: 2015. 11. 3).

_____. 2011. 「2010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203/xxgk_132634.html (검색일: 2015. 6. 16).

_____. 2012a. 「2011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208/141305.html(검색일: 2015. 6. 16).

_____. 2012b. 「国家教育事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0/201207/139702.html(검색일: 2015. 11. 3).

_____. 2012c. 「教育信息化十年发展规划(2011-2020年)」. http://www.edu.cn/html/info/10plan/ghfb.shtml(검색일: 2015. 11. 3).

_____. 2013. 「2012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

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308/155798.html(검색일: 2015. 6. 16).

_____. 2014a. 「2013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3/201407/171144.html(검색일: 2015. 6. 16).

_____. 2014b. 「现代职业教育体系建设规划(2014-2020年)」.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630/201406/170737.html(검색일: 2015. 11. 3).

_____. 2015. 「2014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jyb_xwfb/gzdt_gzdt/s5987/201507/t20150730_196698.html(검색일: 2015. 7. 30).

国家旅游局. 2010. 「中国旅游业"十二五"发展规划纲要」. http://www.chinahotelba.org/uploads/%E4%B8%AD%E5%9B%BD%E6%97%85%E6%B8%B8%E4%B8%9A%E5%8D%81%E4%BA%8C%E4%BA%94%E5%8F%91%E5%B1%95%E8%A7%84%E5%88%92%E7%BA%B2%E8%A6%81.pdf(검색일: 2015. 11. 6).

国务院. 2001.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61860.htm(검색일: 2015. 7. 21).

_____. 2010. 「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 http://www.gov.cn/zwgk/2010-12/03/content_1759091.htm(검색일: 2015. 11. 5).

_____. 2012a. 「教育部 中央政法委员会关于实施卓越法律人才教育培养计划的若干意见」. http://education.news.cn/2012-04/25/c_123029528.htm(검색일: 2015. 11. 5).

_____. 2012b. 「国务院关于印发卫生事业发展"十二五"规划的通知」. http://www.gov.cn/zwgk/2012-10/19/content_2246908.htm(검색일: 2015. 11. 5).

_____. 2012c. 「国务院关于印发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的通知」. http://www.go

v. cn/zwgk/2012-12/12/content_2288778.htm(검색일: 2015. 11. 10).
_____. 2013a.「国务院关于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和国务院文件规定的行政审批或者准入特别管理措施的决定」.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4/content_2567151.htm(검색일: 2015. 7. 8).
_____. 2013b.「国务院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3-10/18/content_6067.htm(검색일: 2015. 11. 5).
_____. 2013c.「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http://www.gov.cn/jrzg/2013-09/27/content_2496302.htm(검색일: 2015. 7. 8).
_____. 2013d.「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办学条例」.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4/content_2692776.htm(검색일: 2015. 7. 7).
_____. 2014a.「关于加快发展现代职业教育的决定」.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moe_1778/201406/170691.html(검색일: 2015. 11. 3).
_____. 2014b.「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1/29/content_9437.htm(검색일: 2015. 11. 11).
_____. 2014c.「国务院关于加快科技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4/content_2775509.htm(검색일: 2015. 11. 10).
_____. 2014d.「国务院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业结构调整升级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8/06/content_8955.htm(검색일: 2015. 11. 10).
_____. 2015a.「国务院关于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的批复」.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5/21/content_9794.htm(검색일: 2015. 7. 27).

_____. 2015b.「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若干政策措施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6/15/content_9845.htm (검색일: 2015. 11. 5).

_____. 2015c.「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5/content_2856650.htm(검색일: 2015. 7. 8).

_____. 2015d.「全国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纲要(2015—2020年)」.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3/30/content_9560.htm(검색일: 2015. 7. 9).

_____. 2015e.「进一步深化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4/20/content_9631.htm(검색일: 2015. 11. 3).

「国务院印发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2013.『中国政府网』. (9월 27일). http://finance.sina.com.cn/china/20130927/141016872038.shtml(검색일: 2015. 7. 20).

国务院办公厅. 2010.「国务院办公厅转发发展改革委卫生部等部门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意见的通知」. http://www.gov.cn/zwgk/2010-12/03/content_1759091.htm(검색일: 2015. 6. 8).

_____. 2011.「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高技术服务业的指导意见」. http://www.gov.cn/zwgk/2011-12/16/content_2021875.htm(검색일: 2015. 11. 10).

_____. 2015.「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促进社会办医加快发展若干政策措施的通知」. http://www.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06/t20150615_1256629.htm(검색일: 2015. 6. 8).

国旅运通商务旅行 홈페이지. http://www.citsamericanexpress.com/About.asp (검색일: 2015. 7. 21).

「禁令解除：国内主机游戏就能复活?」. 2015.『腾讯科技』. (7월 29일). http://tech.qq.com/a/20150729/019050.htm(검색일: 2015. 10. 11).

倪德伦中国业务概览. http://www.nederlanderworld.com/nwecn_cn.aspx(검색일: 2015. 8. 12).

对外贸易经济合作部. 1997.「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http://www.chinalawedu.com/falvfagui/fg22598/26216.shtml(검색일: 2015. 11. 5).

文化部. 2012a.「国家"十二五"时期文化改革发展规划」. http://59.252.212.6/auto255/201205/t20120510_28451.html(검색일: 2014. 5. 24).

_____. 2012b.「"十二五"时期文化产业倍增计划」. http://59.252.212.6/auto255/201203/t20120301_28193.html(검색일: 2014. 5. 24).

「文化部宣布解禁游戏机 媒体认为对市场影响有限」. 2015.『观察者』. (7월 27일). http://www.guancha.cn/Industry/2015_07_27_328278.shtml(검색일: 2015. 12. 1).

「微软独资游戏机工厂落户上海自贸区：3天拿到营业执照」. 2014.『Techweb』. (5월 24일). http://www.techweb.com.cn/it/2014-05-24/2040054.shtml(검색일: 2015. 10. 8).

「民营资本竞相设立保险公司 销售牌照成香饽饽」. 2015.『中国网』. (11월 2일). http://finance.sina.com.cn/money/insurance/bxdt/20151102/090023649821.shtml(검색일: 2015. 11. 22).

北京民教信息科学研究院. 2014.「中国教育培训行业发展报告」. http://www.cnein.ac.cn/html/special/jyhyfzbg/?pc_hash=0ofrH1#004(검색일: 2015. 6. 15).

北大法宝. http://www.pkulaw.cn(검색일: 2015. 11. 11).

网易游戏.「从上海自贸区成立看大陆游戏机解禁」. http://play.163.com/special/news/freetradezone.html(검색일: 2015. 12. 1).

司法部. 2001.「关于执行《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的规定」.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3/content_62105.htm(검색일: 2015. 7. 21).

_____. 2014.「上海市司法局关于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探索密切中外律师事务所业务合作方式和机制试点工作方案」. http://www.moj.gov.cn/lsgzgzzds/content/2015-04/21/content_6052539.htm?node=278(검색일: 2015. 7. 8).

商务部. 2014a.「国家卫生计生委、商务部关于开展设立外资独资医院试点工作的通知」. http://www.mofcom.gov.cn/article/b/f/201408/20140800711993.shtml (검색일: 2015. 7. 21).

_____. 2014b.「中国服务贸易统计2014」. http://pan.baidu.com/s/1hqILJKw (검색일: 2015. 11. 6).

上海市商务委员会. 2013.「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3年)」. http://www.scofcom.gov.cn/wgtzgl/232023.htm (검색일: 2015. 7. 8).

「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转发市司法局制订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互派律师担任法律顾问的实施办法》,《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联营的实施办法》的通知」. 2014.『上海政府法制信息网』. (11월 18일). http://www.shanghailaw.gov.cn/fzbChinese/infodb/htmlfile/0000007632/0000007632.html(검색일: 2015. 6. 22).

「上海律协调查：揭秘外国律所违法执业」. 2014.『新浪财经』. (7월 23일). http://finance.sina.com.cn/g/20060607/02202629967.shtml(검색일: 2015. 6. 7).

上海市人民政府. 2014.「市政府办公厅印发市文广影视局等制订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 (4월 21일).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32419/nw32510/nw32512/u26aw40125.html (검색일: 2015. 8. 8).

_____. 2014.「(一)工业、运输、能源」. (4월 15일).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4651/nw32098/nw32119/u21aw865490.html(검색일:

2015. 7. 21).
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 2014.「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转发市司法局制订的《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互派律师担任法律顾问的实施办法》《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律师事务所联营的实施办法》的通知」. http://www.shui5.cn/article/67/75256.html(검색일: 2015. 6. 7)
上海市统计局 国家统计局上海调查总队. 2015.「2014年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월 28일). http://www.stats-sh.gov.cn/sjfb/201502/277392.html(검색일: 2015. 8. 19).
「上海自贸区公布扩区后体制框架 将设推进工作领导小组」. 2015.『看看新闻』. (4월 27일). http://www.kankanews.com/a/2015-04-27/0036698110.shtml(검색: 2015. 8. 19).
「上海自贸区金改新政出台 试点人民币资本项目可兑换」. 2015.『中国新闻网』. (10월 23일). http://news.sohu.com/20151023/n423993661.shtml(검색일: 2015. 10. 30).
「上海自贸区首家外资医院签约成功背后的故事」. 2014.『健康界』. (9월 29일). http://www.cn-healthcare.com/article/20140929/content-461021.html(검색일: 2015. 8. 8).
「上海自贸区法律服务对外开放的政策正式落地」. 2015.『上海律师』. (2015年 第01期). http://www.lawyers.org.cn/info/5d453ea5018d48d9aa63e3e07b0cf455(검색일: 2015. 6. 19).
「上海自贸区将允许设立外商独资娱乐场所」. 2014.『人民网』. (4월 21일). http://politics.people.com.cn/n/2014/0421/c1001-24923312.html(검색일: 2015. 10. 11).
「上海自贸区：出境游对外开放 市场竞争加剧」. 2013.『人民网』. (9월 29일). http://finance.people.com.cn/n/2013/0929/c1004-23073875.html(검색일: 2015.

6. 10).
「上海自贸区扩大服务业开放项目数量破千」. 2015.『新华网』. (9월 18일). http://www.sh.xinhuanet.com/2015-09/18/c_134637678.htm(검색일: 2015. 9. 20).
「上海自贸医疗服务业放行 首家外商独资医院将落户」. 2014.『新华网』. (7월 23일). http://www.cq.xinhuanet.com/2014-07/23/c_1111766973.htm(검색일: 2015. 8. 8).
「自贸区医疗服务实体项目落地取得进展」. 2015. 『人民网』. (4월 16일). http://sh.people.com.cn/n/2015/0416/c134768-24523645.html(검색일: 2015. 8. 8).
「上海自由贸易试验区进一步扩大开放措施」. 2014.『中研网』. (7월 2일). http://www.chinairn.com/news/20140702/085422158.shtml(검색일: 2015. 6. 22).
「索尼落户上海自贸区, 将发售 PS4」. 2014.『TechNode』. (5월 27일). http://cn.technode.com/post/2014-05-27/sony-ps4-shanghai(검색일: 2015. 10. 9).
「习近平:今后5年出境游将超5亿人次进口商品超10万亿美元」. 2014.『人民网』. (11월 9일). http://politics.people.com.cn/n/2014/1109/c1024-25999009.html(검색일: 2015. 6. 15).
「"十三五"服务业占比有望达55% 重点发展生活性服业」. 2015.『21世纪经济报道』. (10월 29일). http://www.askci.com/news/finance/2015/10/29/930410fe5.shtml(검색일: 2015. 11. 11).
「我国旅游产业对GDP综合贡献超过10%」. 2015. 『国家信息中心旅游规划研究中心』. (7월 7일). http://www.cnta.gov.cn/xxfb/wxzl/201507/t20150707_720396.shtml(검색일: 2015. 7. 24).
「两会授权发布：政府工作报告」. 2014. 『新华社』. (3월 14일).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3/14/c_119779247.htm(검색일: 2015. 12. 21).
易观智库. 2014.「游戏机"解禁"后 中国TV游戏的蓝图与挑战」.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d=rja&uact=8&ve

d=0CCYQFjAAahUKEwjysKGd_5DGAhXOerwKHUw8AJg&url=http%3A%2F%2Fenfodesk.com%2FSMinisite%2Fnewinfo%2Fmeetingdown-id-116.html&ei=P2Z-VbKVBs718QXM-IDACQ&usg=AFQjCNHmXFhIXN-FcsvdB4zdwP8bdNt6lQ&sig2=3_-5Gy-CvqrAzHM46JPmww(검색일: 2015. 6. 11).

盈科移民. 2014.「盈科荣登2014年中国规模最大律所(Asia Legal Business)」. http://www.ykkh.com.cn/Information/Dynamic/1664.html(검색일: 2015. 6. 8).

永远幸(토와코) 홈페이지. http://www.towako.com.cn(검색일: 2015. 10. 14).

「"五十一条+九细则"明确金改方向」. 2014. 『解放日报』. (10월 13일). http://newspaper.jfdaily.com/jfrb/html/2014-10/13/content_24490.htm(검색일: 2015. 10. 30).

「温家宝所作政府工作报告」. 2010.『新华社』. (3월 15일). http://www.gov.cn/2010lh/content_1555767.htm(검색일: 2015. 12. 21).

「温家宝在十一届人大四次会议上所作政府工作报告」. 2011.『新华社』. (3월 15일). http://www.gov.cn/2011lh/content_1825233.htm(검색일: 2015. 12. 21).

「游戏机解禁"姗姗来迟" 索尼微软逆袭中国」. 2015.『新浪财经』. (8월 1일). http://finance.sina.com.cn/360desktop/roll/20150801/002522847948.shtml(검색일: 2015. 12. 1).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 http://www.sdpc.gov.cn/zcfb/zcfbl/201503/W020150402620481787669.pdf(검색일: 2015. 10. 11).

卫生部. 1992.「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http://www.gov.cn/fwxx/bw/wsb/content_416839.htm(검색일: 2015. 11. 5).

_____. 1989.「关于开办外宾华侨医院诊所和外籍医生来华执业行医的几条规定」. http://www.chinalawedu.com/falvfagui/fg22598/30303.shtml(검색일: 2015. 11. 5).

_____. 2000.「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http://project.mofcom.

gov.cn/1800000121_23_68227_0_7.html(검색일: 2015. 11. 5).
银山资本(실버마운틴캐피탈) 홈페이지. http://www.silvermountain.com.cn(검색일: 2015. 10. 14).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 2014. 「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关于加快发展人力资源服务业的意见」. http://www.mohrss.gov.cn/gkml/xxgk/201501/t20150121_149768.htm(검색일: 2015. 11. 10).
「自贸区舞台引来百老汇巨头」. 2014. 『文汇报』. (10월 30일). http://whb.news365.com.cn/yw/201410/t20141030_1393055.html(검색일: 2015. 8. 12).
「自贸区内首家合资旅行社 花落地中海邮轮旅行社」. 2014. 『证券时报网』. (4월 15일). http://stock.stcn.com/common/finalpage/edNews/2014/20140415/450884011226.shtml(검색일: 2015. 6. 10).
「自贸区首家外资医院可刷医保卡 项目进入全面启动阶段」. 2015. 『和讯网』. (4월 15일). http://insurance.hexun.com/2015-04-15/174963894.html(검색일: 2015. 10. 14).
财政部. 2015. 「中央财政服务业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 http://bs.zhenghe.cn/xwzx/zxDetail.aspx?id=46964&MasterPageFile=UI(검색일: 2015. 11. 10).
「全市首家粤港合伙 联营律所在南沙挂牌」. 2015. 『南方日报』. (7월 22일). http://www.gzns.gov.cn/nsxx/mtkns/201507/t20150722_170364.htm(검색일: 2015. 10. 15).
中国共产党. 2015.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http://cpc.people.com.cn/n/2015/1103/c399243-27772351.html(검색일: 2015. 11. 5).
「中国内地公民出境旅游人数2014年首次突破1亿人次」. 2014. 『人民网』. (12월 3일). http://travel.people.com.cn/n/2014/1203/c41570-26141388.html(검색일:

2015. 7. 20).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 2013a.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独资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http://www.china-shftz.gov.cn/PublicInformation.aspx?GID=f685fecb-e3ed-4cb3-ac99-e3d7e5600d11&CID=953a259a-1544-4d72-be6a-264677089690&MenuType=(검색일: 2015. 7. 8).
_____. 2013b.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外合作经营性培训机构管理暂行办法」. http://www.china-shftz.gov.cn/PublicInformation.aspx?GID=6ed9ebc5-7d7d-4108-a1e0-666135d04eef&CID=953a259a-1544-4d72-be6a-264677089690&MenuType=(검색일: 2015. 7. 8).
_____. 2015a. 「上海自贸区"金改新 40条"印发」. (11월 3일). http://www.china-shftz.gov.cn/NewsDetail.aspx?NID=2ff4f755-2792-4b54-b41b-330f823d2325&CID=f672f518-99a3-4789-8964-1335104906b4&MenuType=2&navType=0(검색일: 2015. 11. 10).
_____. 2015b. 「上海自贸区对外投资爆发式增长」. (10월 27일). http://www.china-shftz.gov.cn/NewsDetail.aspx?NID=e0bbd8af-2743-4d3d-8dda-1f787ddbecc7&CID=f672f518-99a3-4789-8964-1335104906b4&MenuType=2&navType=0(검색일: 2015. 11. 10).
_____. 2015c.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全区概况」. http://www.china-shftz.gov.cn/Overview.aspx(검색일: 2015. 7. 27).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 http://www.china-shftz.gov.cn/InstitutionalFramework.aspx?MenuType=2&Type=5(검색일: 2015. 8. 19, 11. 10).
_____. 2014. 「国家旅游局关于旅游支持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意见」. http://www.china-shftz.gov.cn/PublicInformation.aspx?GID=82876689-a554-4869-9f0b-9cdc88ac68a3&CID=953a259a-1544-4d72-be6a-2646770889690&MenuType=1&navType=0(검색일: 2015. 5. 20).

_____. http://www.china-shftz.gov.cn/govInfoDir.aspx?GTID=237c0b98-9fdd-4ab3-9f6d-92aba33b9191&MenuType=2&subMenuID=2&tagIndex=2&govMainTagIndex=0&govSubTagIndex=0(검색일: 2015. 8. 19).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14. 『凤凰网』. (7월 1일). http://news.ifeng.com/a/20140701/40958904_0.shtml (검색일: 2015. 6. 22).

中国旅行社协会. 2014. 「外商投资旅行社在华发展研究」. (3월 4일). http://cats.org.cn/lilunyuandi/yewu/22118(검색일: 2015. 7. 29).

中国演出行业协会. 2013. 「2012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2%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색일: 2015. 12. 1).

_____. 2014. 「2013年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news/showDetail/65993(검색일: 2015. 12. 1).

_____. 2015. 「2014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4%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색일: 2015. 12. 1).

中国人民银行, 商务部,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 外汇局, 上海市人民政府. 2015. 「中国人民银行 商务部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 外汇局 上海市人民政府关于印发《进一步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金融开放创新试点 加快上海国际金融中心建设方案》的通知」. (10월 29일).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2970998/index.html(검색일: 2015. 11. 10).

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 2014. 「上海市首批金融机构启动自由贸易账户业务」. (6월 18일). http://shanghai.pbc.gov.cn/fzhshanghai/113583/115042/23364

90/index.html(검색일: 2015. 11. 10).
_____. 2015.「上海市金融机构分账核算单元通过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系统接入验收名单」. (8월 24일). http://shanghai.pbc.gov.cn/fzhshanghai/113583/115045/2939844/index.html(검색일: 2015. 11. 10).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2013.「百强旅游社」. http://www.cnta.gov.cn/was5/web/search?channelid=211111&searchword=%28INPUTDATE+%3D%272013-01-01%27%29(검색일: 2015. 7. 20).
_____. 2015.「今年上半年韩国访华游客人数继续增长」. (7월 15일). http://www.cnta.gov.cn/xxfb/hydt/201507/t20150715_742084.shtml(검색일: 2015. 7. 20).
中华人民共和国(上海)自由贸易实验区企业联盟管理委员会. 2014.「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中外合资旅行社设立及出境游业务审批告知单」. (6월 29일). http://www.930-china.com/news/show.php?itemid=435(검색일: 2015. 7. 20).
地中海油轮旅行社 홈페이지. http://www.msccruises.com.cn/cn_zh/About-MSC-Cruises/The-Company.aspx(검색일: 2015. 7. 21).
贝克·麦坚(베이커 앤 맥킨지) 홈페이지(중국 지사). http://www.bakermckenzie.com/zh-CHS/China(검색일: 2015. 9. 9).
「解读上海自贸区旅游开放政策:外资旅行社首先要练"内功"」. 2014.『Goldpalm』. (11월 28일). http://www.goldpalm.com.cn/news/Detail/5CFB9ABA-CAF1-4804-8EE3-086D8F8DEF2B;jsessionid=A021E06637ACCE96D3AF42468AD4141D(검색일: 2015. 7. 20).
「花旗汇丰先后在上海自贸区完成首单自由贸易账户业务」. 2015.『中国新闻网』. (2월 15일). http://finance.chinanews.com/cj/2015/02-15/7067325.shtml(검색일: 2015. 11. 10).
Baidu百科. http://baike.baidu.com/view/1827172.htm(검색일: 2015. 7. 29).

JTB 新纪元国际旅行社 홈페이지. http://www.ncit.com.cn(검색일: 2015. 7. 21).
TUI(途易) China Travel 홈페이지. http://www.tui.cn/mice/about(검색일: 2015. 7. 21).
_____. http://www.tui.cn/en/AboutUs/Facts-Figures(검색일: 2015. 7. 22).

[인터뷰 자료]

CJ E&M 관계자 인터뷰(2015. 9. 18, 상하이).
NH투자증권 관계자 인터뷰(2015. 8. 28, 상하이).
광둥성 · 장쑤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26~28, 광저우 · 난징)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관계자 인터뷰(2015. 9. 9, 베이징).
궁바이화(龚柏华) 푸단대 법학과 교수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모두투어 관계자 인터뷰(2015. 9. 22, 베이징).
미래에셋 관계자 인터뷰(2015. 8. 28, 상하이).
백제어학원 관계자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법무법인 다청 관계자 인터뷰(2012. 12. 6, 베이징).
법무법인 율촌 베이징대표처 관계자 인터뷰(2012. 12. 6, 베이징).
법무법인 지평 상하이대표처 관계자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베이징대학 예술학원 관계자 인터뷰(2015. 9. 14, 베이징).
베이징케어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5, 베이징).
상하이 A교육기업 관계자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상하이 교육전문가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상하이 시험구 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2015. 5. 29, 상하이)
상하이 우리들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7, 상하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산업 총괄 기업 관계자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행정서비스센터 관계자 인터뷰(2015. 9. 1, 상하이).
상하이 정부관계자 인터뷰(2015. 9. 18, 상하이).

상하이 한솔브레인스쿨 관계자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상하이시 금융서비스판공실 관계자 인터뷰(2015. 9. 1, 상하이).
상하이시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 간담회(2015. 9. 1, 상하이).
상하이재경대 관계자 인터뷰(2015. 8. 27, 상하이).
위스덤 치과 관계자 인터뷰(2015. 5. 26, 광저우).
중국관광연구원 李创新 박사 인터뷰(2015. 9. 15, 베이징).
중국 문화부 산하 국유기업(四海一家) 공연기획 담당자 인터뷰(2015. 9. 14, 베이징).
중국 푸단대학교 공공위생학원 교수 인터뷰(2015. 9. 15, 상하이).
토와코 관계자 인터뷰(2015. 9. 16, 상하이)
푸단대 관계자 인터뷰(2015. 8. 26, 상하이).
푸단대학 관광학과 郭英之 교수 인터뷰(2015. 9. 17, 상하이).
하나은행 관계자 인터뷰(2015. 8. 31, 상하이).
한수궁 성형외과 관계자 인터뷰(2012. 12. 7, 상하이).
현지 A법률사무소 관계자 인터뷰(2015. 9. 16, 상하이).
현지 A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7, 상하이).
현지 B병원 관계자 인터뷰(2015. 5. 29, 상하이).
현지 C병원 관계자 인터뷰(2015. 9. 16, 상하이).
현지 D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7, 상하이).
현지 E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5, 베이징).
KIEP 전문가 간담회(2015. 5.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ecutive Summary

Changes in Market-opening Strategy for China's Service Sectors and the Implications: with a Focus on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NO Suyeon, OH Jonghyuk, PAK Jinhee, and LEE Hanna

As China emphasizes the role of service sectors in achieving medium-to-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s the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Korea and China comes into effect in December 2015,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expect increased opportunities to enter the domestic service market of China. This study deems that the market-opening strategy for China's service sectors has been changing during the 12th Five-year Plan period (2011 to 2015).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case study of the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PFTZ), the study evaluates the level of market openness of China's service sectors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furthering Korea-China cooperation in the service sector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2, we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Chinese service industry and major related policies, and explain why a change in the strategy for opening the markets for China's service sectors is necessary. The importance of Chinese service sectors rose substantially during the 12th Five-year Plan period. The share of the tertiary industry in China's GDP surpassed that of the secondary industry for the first time in 2012, and steadily increased to reach 48.1% of GDP by 2014. Since 2011, the share of the tertiary industry in China's total workforce was first among the three industries; the same has been true of FDI since 2010. During the course

of the 12th Five-Year Plan,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so announced for the first time a development plan that focuses on the service sector. In 2014, the Chinese government emphasized the role of service sectors in the "Made in China, 2025(中国制造 2025)" development plan and announced a policy that specializes in nurturing the producer service industry. But the service sector still needs to be opened further in order for China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the global market.

In Chapter 3, we evaluate the level of market openness in China's service sector and analyze the changes in the market opening strategy, focusing on six industries in the service sector: finance, health, law, education, tourism, and culture. China's service industries have opened up substantially after joining the WTO in 2001, but no significant change was made in the DDA initial offer, revised in 2005. Similar trends can be seen in finance and cultural industries; some areas in health, law, education and tourism, however, show a higher level of openness than corresponding markets in Korea. A comparison of the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in 2015 revealed that China still shows a lower level of openness in all 18 sectors whe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an overall higher level of restrictiveness than Korea.

The Chinese government's market-opening strategy for its service sectors has taken a different turn since 2011. First, the basic framework for market-opening for service sectors changed from stimulating influx of capital and technology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to driving forward structural reforms in the domestic economy and easing the country's adaptation to global changes. Second, the target beneficiary group for the opening policy has expanded from foreign companies to China's privately-owned companies. Third,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apply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o-called "Points-Lines-Surfaces (点-线-面)" to open up specific industries in the service sector within a specific geographical area. Fourth, the government's attitude has shifted from perceiving the opening process as an obligation mandated by the WTO, to active pursuit

of opening procedures to prepare for the ag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epitomized by the TPP or the RCEP. Fifth, the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changes in the market-opening method, such as discontinuing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adopting a negative list, and encouraging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domestic companies.

In Chapter 4, we conduct an analysis using Shanghai PFTZ as the representative case of the market-opening strategy introduced in Chapter 3, and analyze the specific market-opening policies of six service industries that was implemented in the Shanghai PFTZ. As a result, we found out unconventional measures were generally avoided in Shanghai PFTZ until presently. In addition, the market-opening policy of legal service industry has not been effective enough, because openings as a result of the new policy were not as palpable as the foreign law firms expected; case in point,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Sino-foreign joint ventures and employment of Chinese lawyers. In the health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wholly-foreign-owned medical institutions was allowed in 2013, but the market-opening policy has been discontinued recently. Shanghai PFTZ also seems to be very cautious in the opening of the cultural service market, allowing only the sales of video game consoles (which has low market share in the game industry) and the establishment of wholly-foreign-invested entertainment artist agencies to provide services in Shanghai. Other cultural sectors such as film, broadcasting, and online games were excluded from market-opening. In the education service sector, it is encouraging that establishing both edu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for profit and wholly-foreign-owned vocational skills training institutions were allowed, but under the new policy no company has established a presence in the Shanghai PFTZ till now. Financial service sector is not an exception, and most of the market-opening policies are, as of yet, merely an expanded version for areas that have already been opened.

In Chapter 5, we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to expand cooperation with China in the service sectors. While the

essence of Shanghai PFTZ's is institutional reform rather than market openness, and while there certainly are limit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enforce the market opening policy aggressively; it is the conservative attitude of the Chinese government regarding market-opening for service sectors constituting the primary reason why the market openness of service sectors in Shanghai PFTZ is delayed. The PFTZ project and market-opening policy may be expanded throughout China in the future, bu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likely continue to be cautious regarding their pace and scop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utilize the market-opening policies of Shanghai PFTZ as well as collect information on 'bottleneck' problems which the Korean companies have experienced entering the service sectors in China during the course of post-FTA negotiations with China. The monitoring system also needs to be established to provide Korean service companies with guidance related to PFTZ policies. The opening of finance, law, housekeeping, and pension service markets might take place prior to all other service sectors, and Korea can cooperate with China in those sectors especially.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mentoring system enabling Korean service companies to exchange experiences in the Chinese service market.

With regard to Korean companies, we suggest that they use the Shanghai PFTZ as a platform and source of funding, to ask for exclusive benefits by appealing that they can provide advanced management knowhow to the Shanghai PFTZ, and use the simple incorporation procedure in Shanghai PFTZ. In addition, they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privately-owned Chinese companies and carve out new service markets, while considering local demand.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5년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 · 최장호 · 방호경 · 임소정 · 김준영 · 주셴핑 · 진화림 ·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 · 임태훈 · 서현덕 ·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 · 한민수 · 황운중 · 김수빈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 서봉규 · 임태훈 · 강은정 · 김영선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박순찬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성한경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 이주미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 김홍원 · 이승은 · 최지원

15-12 한 · 중 ·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새별

15-13 북 · 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웅 · 문성만 ·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 2014년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14-07 TPP 주요국 투자 ·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웅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 ·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 · 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4-23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 · 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 2013년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 · 김영귀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 · 양다영 · 강은정 · 박영준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 · 이준원 · 김봉근 · 전영준

13-04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송치영 · 김태준 · 문우식 · 유재원 · 채희율

13-05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 이창수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 · 강은정 · 편주현 · 안지연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이승래 · 김혁황 · 강준구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 · 선주연 · 김정곤 · 이주미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 · 김보민 · 이성희 · 김윤옥 · 홍이경 · 이민영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13-12 아 · 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임경수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 · 제성훈 · 강부균 · 최필수 · 김부용 · 김지연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 · 이혁구 · 전재욱

13-15 러시아 극동 ·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 · 엄구호 · 강명구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 정형곤 · 이유진 · 안병민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 · 나수엽 · 남수중 · 이상훈 · 이혁구 · 유호림 · 조현준 · 최의현 · 장영석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 · 정지현 · 나수엽 · 박현정 · 이효진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 · 박영호 · 권기수 · 정재완 · 이효진

13-20 중국의 채권 · 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 양다영 · 허 인

13-21 중국 권역별 · 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 · 정지현 · 노수연 · 김부용 · 박현정 · 임민경 · 오종혁 · 김홍원 · 박진희 · 이상희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 김유미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김준엽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웅 · 송영철 · 초충제 · 최윤정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 · 곽성일 · 박재은 · 손성현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 · 장종문 · 전혜린 · 김영기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임태균

노수연(盧琇姸)

중국 푸단대(復旦大) 경영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syno@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공저, 2013)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공저, 2014) 외

오종혁(吳鍾赫)

중국 칭화(淸華)대학교 학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ojh@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 서부지역의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공저, 2014)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공저, 2014) 외

박진희(朴眞嬉)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지역학(중국)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現, E-Mail jhpak@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공저, 2013)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공저, 2014) 외

이한나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중국지역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現, E-mail: leehn@kiep.go.kr)

연구보고서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5년 12월 24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이 일 형
발 행 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414-1114 FAX: 044-414-1122, 1199
인 쇄 오름(주) 전화 02-2273-7011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569-3 94320 정가 10,000원
978-89-322-1072-8(세트)

절취선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is 1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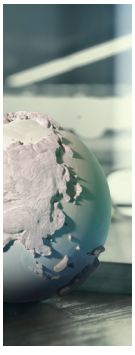

Changes in Market-opening Strategy for China's Service Sectors and the Implications: with a Focus on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NO Suyeon, OH Jonghyuk, PAK Jinhee, and LEE Hanna

중국이 중속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15년 발효됨에 따라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한 · 중 FTA 후속협상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상하이 시험구의 단기적 활용방안과 중국 서비스시장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ISBN 978-89-322-1569-3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